

주식회사
Keumkang L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1987년 2월 25일 발행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번호 제4173호

다.



규격번호 KSF 3504
허가번호 제4173호



보도

3253-4334-5 • 광주 507-1500
주 52-8935 • 전주 2-5000

1987. 2

현대 건축물의 필수 장비!



「중외 에어슈터」는 첨단 OA 시대를 리드하는 최신 설비!

■ 에어슈터란 각종 서류, 전표, 문서, 현금, X-Ray 필름 등을 보내고 싶은 층(層)의 방(房)까지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최신 설비로 고급 인력의 시간 절약은 물론 전사원의 업무 능력 향상의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특징

- 각종서류, 문서 등의 신속한 전달
- 사무자동화로 인건비, 관리유지비 절감
- 조작이 간편하며 극소면적 차지
- 기존 건물에도 시공 가능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경마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중외 에어슈터

빌딩 및 공장 건물 속의 작은 트럭!

■ 「중외 버티컬 콘베어」는 중량 30kg 이하의 운송 물품을 원하는 층, 방까지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운송해 드리는 운송장비입니다. 특히 병원의 각종약품, 은행, 오피스의 각종서적 및 장부류에서 공장에서의 각종 소형 운송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해주므로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특징

- 전자동 연속 작동으로 대량 운송 가능
- 사용, 취급이 간편함.
- 수직, 수평 이동이 가능함.
- 안전설제로 사고 방지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중외 버티컬 콘베어

현대인을 위한 건강 청소 중외 센츄럴 크리너!

■ 「센츄럴 크리너」란 종래의 습식 청소방식에서 말피, 선진국형인 건식 청소설비입니다. 건물이나 공장내에 산적해 있는 먼지나 오물을 자동으로 흡입식 공기 압력으로 완전 제거하는 최신 청소 장비입니다.

특징

-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 청소작업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중외 센츄럴 크리너

 **중외상사**
중외화재

서울·동작구 신대방동 698 (대표) 841-1212, (직통) 841-2721 ~ 3

綠色隨想

崔昌奎

연초에는 눈이 내렸다. 모두들 瑞雪이라고 했다. 오늘 저녁 TV에 제주도의 花信이 비쳤다. 이 화사한 화신은 곳 북상하리라. 어제 아침 안개 지옥한 공기에서 봄을 체감했다. 입춘이 지났으니 정녕 봄은 오리라. 봄이 와야할 서울거리엔 최류탄개스로 행인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녔고 눈물을 흘리면서 달렸다. 인간들이 제아무리 요동을 쳐도 봄은 반드시 온다. 대자연의 섭리는 어김없이 정확하고 인간들과 같이 거짓이 없다. 덜 녹은 산야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어린 양떼들이나 나물개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겠지. 작은 산에 올라 裸木의 숲 속에서 문득 綠色을 생각해 본다. 과연 지구상의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生存環境이 어디일까? 오직 "숲"이라고 느꼈다. 인간도 조류도 짐승도 곤충도 양서류도 같이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숲"뿐이라고 생각했다. 인간들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위에서 살 수 있어도 여타의 생명체들은 살 수가 없다. 그들은 초목과 물이 있는 곳에서만 살 수 있다. 초목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물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녹색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은 절대가 된다. 근지에 와서 외국에선 綠色浴이 유행한다고 한다. 인간이 반 나체로 녹색 숲을 거닐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한다. 또 녹색혁명이나 녹색물풍의 유행이니 떠들석 하고 있다. 서독에는 絲色黨이란 政黨마저도 있다고 한다. 葉綠素가 지니고 있는 효능이 무한하게 발견되는 모양이다. 녹색은 고대로부터 그 가치가 인정되어 왔고 역사상 문화가 발달했거나 발흥한 지방은 수림이 육이진 곳이 많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녹색은 오직 現物的인面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무언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발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푸른마음"이라고 하면 희망적이고 성장을 의미했고 쇠퇴나 노후라는 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에게도 "강원도감자바위"란 말이 있다. 하필 왜 강원도 사람들은 순진하고 인간미가 있는가? 이것은 절대로 바보라는 뜻이 아니고 달아빠지거나 까진 사람들이 아니고 자연인적인 순박하고 淸眞하다는 애칭인 것이다. 그러하다면 강원도가 타도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타도에 비해 나무가 많다는 점이 되겠다. 옛부터 藥山藥水란 말도 있고 知者好水 仁者好山이라고 했다. 知仁이다. 나무와 물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현대에 와서 우리는 관광이나 위락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관광지나 위락지가 거의가 나무와

물이 있는 곳이다. 나무와 물이 있는 곳을 우리는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한다. 그러하다면 현재 나무가 많은 곳을 나무를 모조리 벌채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여행을 하다가 나무가 울창한 마을을 보면 반드시 유서있는 인물을 배출한 부촌인 경우가 많고 나무가 없는 마을을 보면 대개가 인물도 역사도 없는 빈촌인 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나무가 무슨 신룡력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물리적으로는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다. 허나 우리는 직접 태양에너지를 흡수할 순 없다. 모든 식물(草木)이 태양에너지를 받고 성장해서 根·幹·枝·葉·花·實을 많은 생명체들이 섭취하고 또 그 생명체끼리에서도 약육강식 내지는 협조이용사육해서 섭취하기도 하지만 그 근원역할은 역시 식물인 것은 틀림없다. 이외에도 여름철의 녹음, 물과 토양에 대한 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면에서 문화를 일으키고 심리적으로 유순과 풍요를 느끼게도 한다. 거목 밑에 서면 정의와 숙연해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들은 상업주의란 괴물로서 나무를 깎아 먹는 악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의 터전을 파괴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언필칭 건설이요 개발이란 미명아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자연을 파괴했고 나무를 얼마나 벌채했던가. 생물의 생존장인 지구는 황폐해 가고 공해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소는 더욱 심해가고만 있다.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이 공해를 약물이나 장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하지가 못하다. 공해를 해결하는 것은 산림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허기야 공해의 원흉이 인간이고 기해자도 피해자도 인간이라는 묘한 입장이긴 하지만 모든 약물이 오물이, 공해가 될지언정 부패한 낙엽이나 퇴비는 공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해를 막는 방법으로는 오물이나 汚染廢棄物의 자원화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방법은 과학이 어느 정도 해결할런지는 의문이나 수목은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뿐인가 기후마저도 조절해 주고 풍수도 막아준다. 미국엔 베벌리힐, 웨스트우드, 마운틴케이트란 서부에서 가장 살기좋은 소도시들이 있다. 숲 속에 떠엄떠엄 있는 산동네들이다. 수림 사이에 가려져 건물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포장된 산비탈길은 고요에 감싸여 있다. 바로 지상낙원이다. 자연도 수림도 훼손시킴이 없이

대자연 속의 일부로서의 마을이다. 산과 구릉과 수목을 잘 보존하면서 꾸민 도시는 미국뿐만은 아니고 세계도처에 많다. 우린 잠실에 올림픽촌을 건설했다. 漢江兩岸을 정비했다. 북한산을 개발한다고 한다. 산지개발과 이용확대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서해안을 매립한다고 한다. 구릉지 초기개발을 한다고 한다. 우린 그동안 많은 농지가 공장으로, 공업단지로, 학교로, 위락시설로, 주택단지로침범 당했다. 협소한 국토에서 농경지가 잠식되어가는 한계에 와 있는 것만 같다. 매년 식목일에만 떠들석하다기도 호지부지 해버린다. 한강양안에 나무없는데 유람선은 무미건조한 유람이 될 것은 뻔한 일이고 올림픽촌도 철과 콘크리트 속에서 운동경기를 해야할 것인지? 산지를 개발한다면 그나마의 수림은 또 수난을 당해야 하겠지, 간척지매립은 "버"벗가미니가 더 중요한지 해송같은 수종의 식수는 안되는 건지, 북한산을 공인화해서 綠色은 유지될지, 근심스러운 일뿐이다. 전국도 녹화계획, 유류지 식수계획, 전 하천 정비계획, 전해안 정비계획, 전국민 1인 100株 식수계획 등 획기적인 계획들은 나올 수 없는 것인지? 물질적 풍요만이 능사만은 아닐 것 같다. 녹색은 생명의 색이요 생명의 근원이다. 미래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지구의 미래에선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캐나다, 인도네시아, 독일, 북구제국을 들고 있고 가장 불행한 나라를 일본, 영국, 서구제국을 꼽고 있다고 한다. 어떠한 기준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잘 살 수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나무가 많은 나라들이라는 데는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고 하겠다. 위장자들이나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고 본다. 불안하고, 혼란하고, 우울했던 겨울도 다 가고 19일은 대동강도 풀한다는 우수이다. 이 평에도 정녕 봄은 오려는지, 녹색이 그리워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녹색이 매달리기는 세태에서 독야청청한들 무엇하리요만 그래도 綠色의 莊園은 인간의 이상향임에 틀림 없는 것이다. 건축이란 결국은 인간의 생활환경을 창출해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녹색의 환경, 녹색의 생활은 녹색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 미물에서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공생할 수 있을 때만 인간은 영원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녹색의 도시, 녹색의 공기, 녹색의 공간, 들기만 해도 기분 좋고 호젓한 숲어들이다. 최창규 / 신진건축사사무소 대표



표지실명: 성심여자대학교 강당 (강석원작)
사 진: 정철용

건축사

차 례

1987년 2월호 (통권 215호)

발행인 안 가 태
편집장 출판사업부

편집위원회

- 위원장 안 장 원
- 부위원장 김 린
- 위원 강 태 석
- 위원 변 용
- 위원 김 기 석
- 위원 박 영 호
- 위원 김 정 동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우편번호 135
전화: 서울(02) 교 581-5711(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 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월 23일
U.D.C. 69/72(054-2): 0612(519)
인쇄: 평문정판사
인쇄인: 전윤규

Publisher: An, Kie-Tae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Committee

- Chairman: Ahn Chang Won
- Vice Chairman: Kim Lin
- Member: Kang, Tae-Suck
- Byun, Yong
- Kim, Ki-Seok
- Park, Young-Ho
- Kim, Chung-Dong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72(054-2):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 3論壇 최창규
- 6 이달의詩 박영기

회원작품

- 7 성심여자대학교 강당 강석원
- 10 고속도로 망향휴게소 김자호, 지 순, 이광만
- 12 강화토산품전시장 김지덕
- 14 동산빌딩 전상백, 김선양
- 16 평택 남서울크리닉 조중연
- 19 가족호텔 (판리동) 임용택
- 21 이화여대 법정대학관 김정식

- 24 '87년 이렇게 일한다 각위원회 위원장

特輯 / 座談會 · 工事監理業務

- 33 工事監理業務의 當爲性
- 45 設計監理 分離에 대한 小考 강기세

建築批評 ①

- 50 국립현대미술관 안영배

테마 에세이 / 건축은 무엇인가

- 47 건축이라는 예술(I) 안병의

建築紀行 ①

- 58 하회, 안동마을을 찾아서 김석철

研究報告

- 62 전시공간 연출 한도룡
- 66 건축과 조경 오상평

寄稿

- 70 건축법 및 동시행령 개정내용 해설 강길부
- 76 건축공사의 감리와 그 책임한계 이재욱
- 80 건축표준셈 개정내용(II) 안희상

84 신입회원

86 협회소식

90 '88년 건축사지 목차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581-5715-8
서부분소/사대문구연희동169-16/333-1873
남부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882-6744
북부분소/도봉구수유동191-13/903-3425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484-6387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5/604-7168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설동101-7/923-6213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446-5244
영등포분소/영등포구당산3781/634-2143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가1(부산테크노내)
(051) 23-3584~5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벌어동3가1-8/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323-11/1062)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124-5/(0331) 42-6490
7072
안양 분소/ 안양시안양동719-9/(031) 2-2638 2-0012
부천 분소/ 부천시원미동74-6/(032) 63-3144
성남 분소/ 성남시신동5512/(0342) 2-5445
외정부 분소/ 외정부사외정우동 182/(0351) 2-1083
송탄 분소/ 송탄시신장동21/(0333) 4-6153
고양 분소/ 고양군원당읍주교리36로16-16/034)63-8902
구리 분소/ 구리시수택동409-2/(0346) 63-8112
이천 분소/ 이천군이천읍종리216-8/(0336) 2-3396
광명 분소/ 광명시철산동464-7/682-2875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0361) 2-2442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5/(0371) 42-3257
강릉분소/강릉시상대동6/(0391) 2-2262
속초분소/속초시중앙동468-66/(0392) 2-5081
삼척분소/삼척시남양동55-43/(0397) 2-3106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영흥1리959-35/(03732) 2659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가116-158/
(0431) 2-2752
충주분소/충주시역전동673-1/(0441) 2-3082
제천분소/제천시외림동8-8/(0443) 2-6253
옥천분소/충북보은읍삼안리139-4/(0433) 2461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87-1/(042)
22-4088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160-14/(0417) 2-4551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0451) 2-2853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문리710-2/(0463) 2-221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 (대륙빌딩508)
(0652) 3-3881
이리분소/이리시남중동1가77-22/(0653) 52-3304
군산분소/군산시중앙로1가85/(0654) 2-4060
남원분소/남원시화정동106-2/(0671) 2-6002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구화정동783-23 (추선회관)
(062) 364-7567
목포분소/목포시교남동1/(0631) 2-7280
순천분소/순천시장천동51-3/(0661) 2-7892
여수분소/여수시관동435/(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가1285번지/
(053) 45-4904
포항분소/포항시죽도동96-70/(0562) 74-9713
경주분소/경주시노봉동9-1/(0561) 2-2680
구미분소/구미시인평동356-2/(0546) 52-7903
안동분소/안동시향안동125-19/(0571) 2-3641
김천분소/김천시남산동23-10/(0547) 2-2263
영주분소/영주시영주4동470-17/(0572) 2-4566
문경분소/문경시점촌동261-2/(0581) 2-27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2가1-16/
(0551) 2-4530~1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585-6/(0522) 74-8836
74-2555
진주분소/진주시본성동7-20/(0591) 2-6403 42-3434-5
창무분소/창무시서초동177-10/1/(0557) 2-2504 2-7420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25B-17L/(0594) 2-3155
밀양분소/밀양군밀양읍삼문동184-108/(0527) 52-3456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하동483-9/(0598) 2-3777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00-3/(0523) 4-2669
거제분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0558) 32-1086,
2-3372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가1동1289-6/(0641)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425-1/(0642) 62-3920

CONTENTS

February 1987 Vol 215

PLATFORMChoi, Chang-Kyu 3
POEM.....Kwak, Young-Keo 6

WORKS
Auditorium in Sacred Heart Woman CollegeKang, Suk-Won 7
Manghyang Highway Reststop Kim, Cha-Ho, Chi, Soon, Lee, Kwang-Man 10
Kangwha Local Products Exhibition CenterKim, Chi-Dok 12
Dongsan Building Jeon, Sang-Baek & Kim, Sun-Yang 14
Nam Seoul Clinic (Pyŏngtack)Joh, Joong-Yon 16
Neighborhood Facilities of Family Hotel Lim, Yong-Taek 18
Law-Politics Administration Building Ehwa Woman's Univ.Kim, Jung-Sik 21

TABLE TALK
The Naturality of Supervision Hold Architecture 33

CRITICISM ①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An, Young-Bae 50

ESSAY
Truth in ArchitecturalAn, Byung-Ui 47

TRAVELS
Hahoe Village in AndongKim, Suk-Chul 58

REPORT
Production of Display Space Han, Do-Ryong 62
Architecture and LandscapeOh, Sang-Pyung 66

FEATURE
Commentary of Architecture Law and Enforcement
Regulations Revised ContentsKang, Kil-Boo 70
Responsibilities in Building Construction Lee, Jae-Ok 76
Revised Contents of Estimating for Building ConstructionAn, Hee-Sang 80

NEWLY ADMITTED MEMBER 84
K.I.R.A NEWS 96
THE 1986'S ANNUAL CONTENTS 90

丁卯年の 파도가 몰려와서

곽영기

파도군단 몰려온다
일진, 이진, 삼진, 사진 ……

흰깃발에 새아침 끌고
동해파도 몰려온다.

수평선
붉게 물들이며
억척스레 몰려온다.

서해의 파도군단은
새아침을 탈환한다.

전군 출전 전군 옥쇄(玉碎)로
새아침을 탈환한다.

벼랑에
밀쳐 박히며
모래밭에 나뒹굴며.

남해의 파도군단은
북진을 시작한다.

조국의 번영을 위해
오륜기를 휘날리며

반도를
뒤덮을 기세
줄기차게 달려온다.

이렇게
丁卯年の
파도가 몰려와서

낮에는 햇무리 꿈
밤에는 달무리 꿈

사천만 무지개 역사
이 강산을 꽃피우리.



곽영기

1939년 10월20일생
강원도 횡성출생
시조문학으로 동단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원
강원 시조문학회장
현재 강릉대학 근무
시집 : 개나리(83년),
대관령(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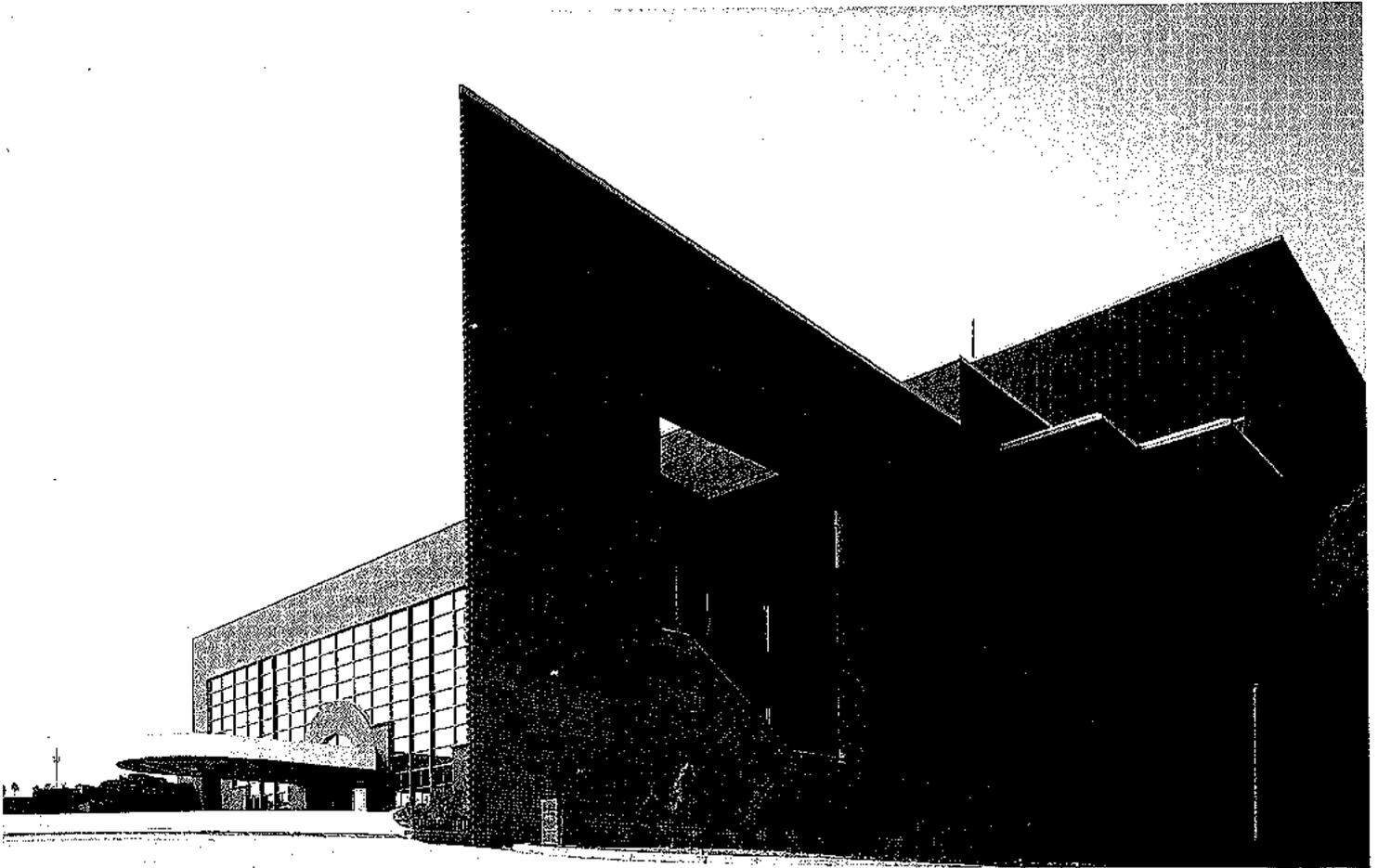


사진 : 정성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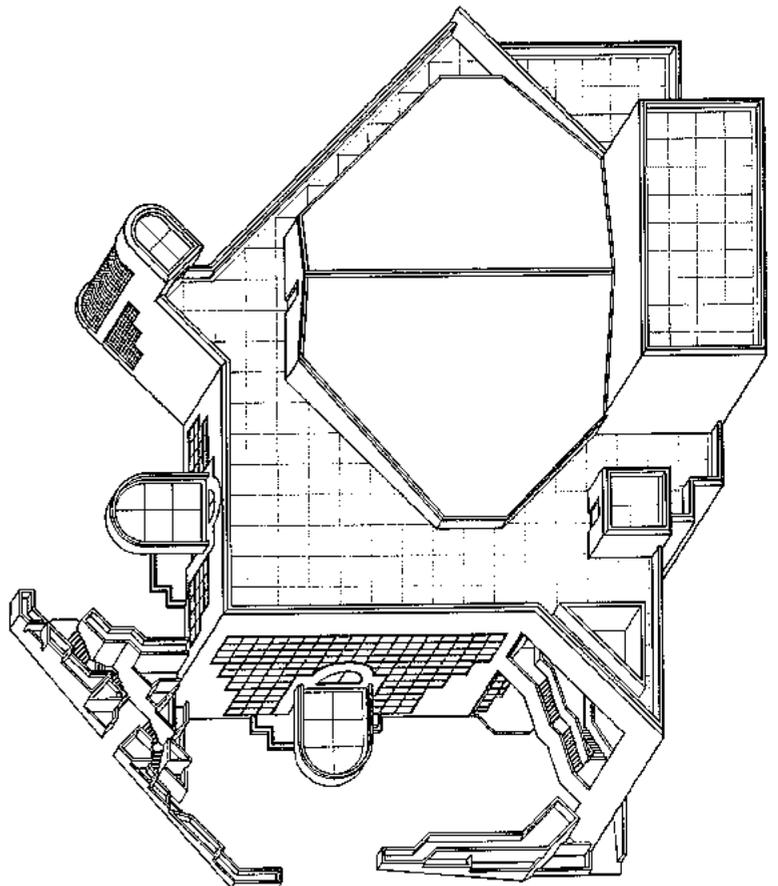
회원작품

성심여자대학교 강당

강석원 / 건축사사무소 구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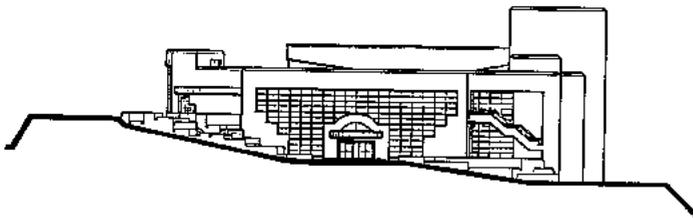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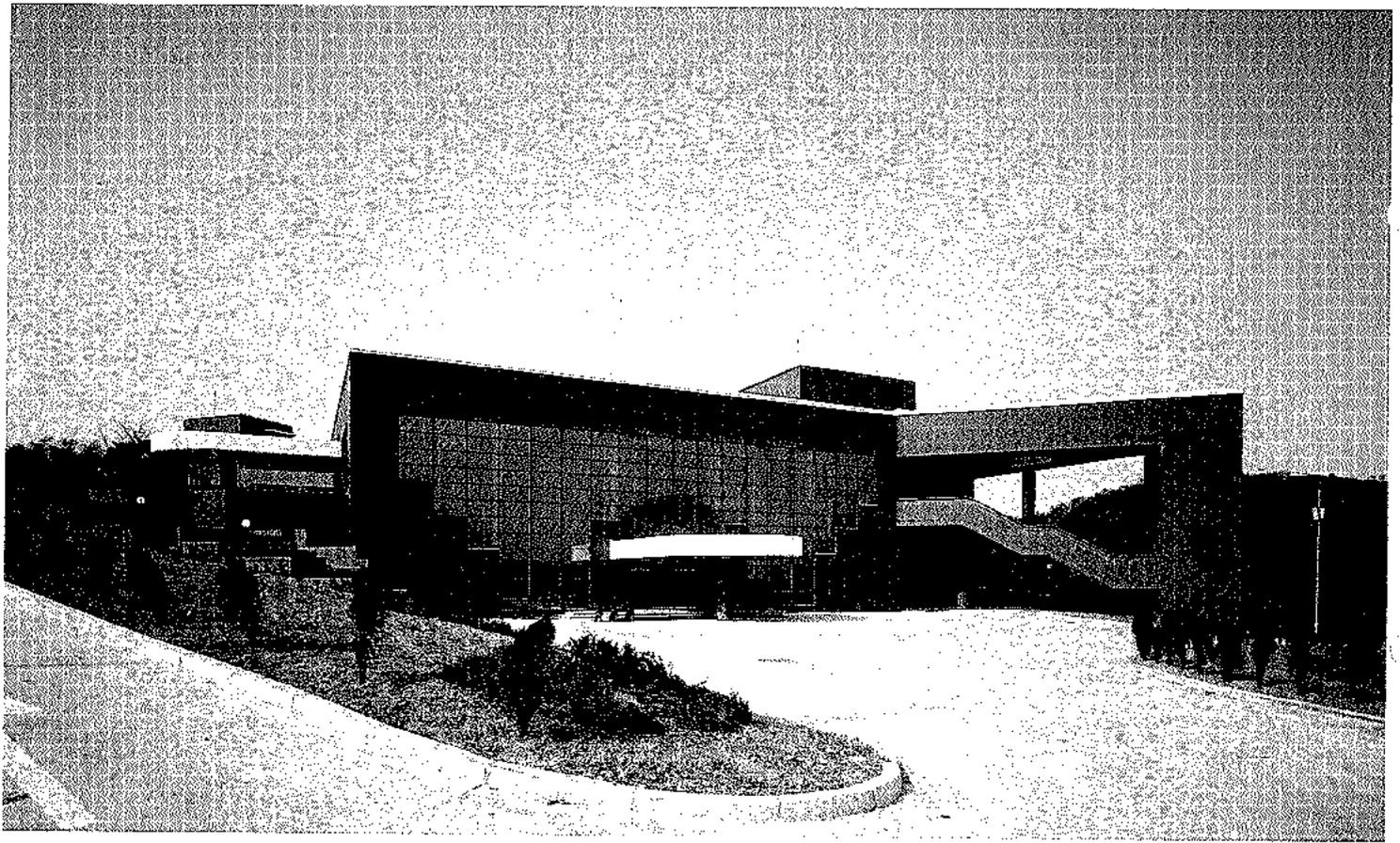
■ Auditorium in Sacred Heart Woman College
Designed by Kang, Suk-Won

■
 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대지면적 : 244,625㎡
 건축면적 : 2,513.49㎡
 연면적 : 4,417.29㎡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트러스조
 좌석수 : 1,500석
 외부마감 : 적벽돌치장쌓기
 건폐율 : 5.57%
 용적율 : 1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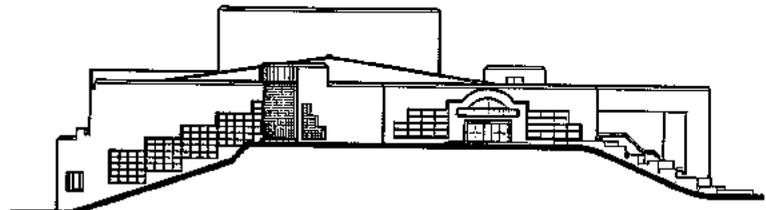


●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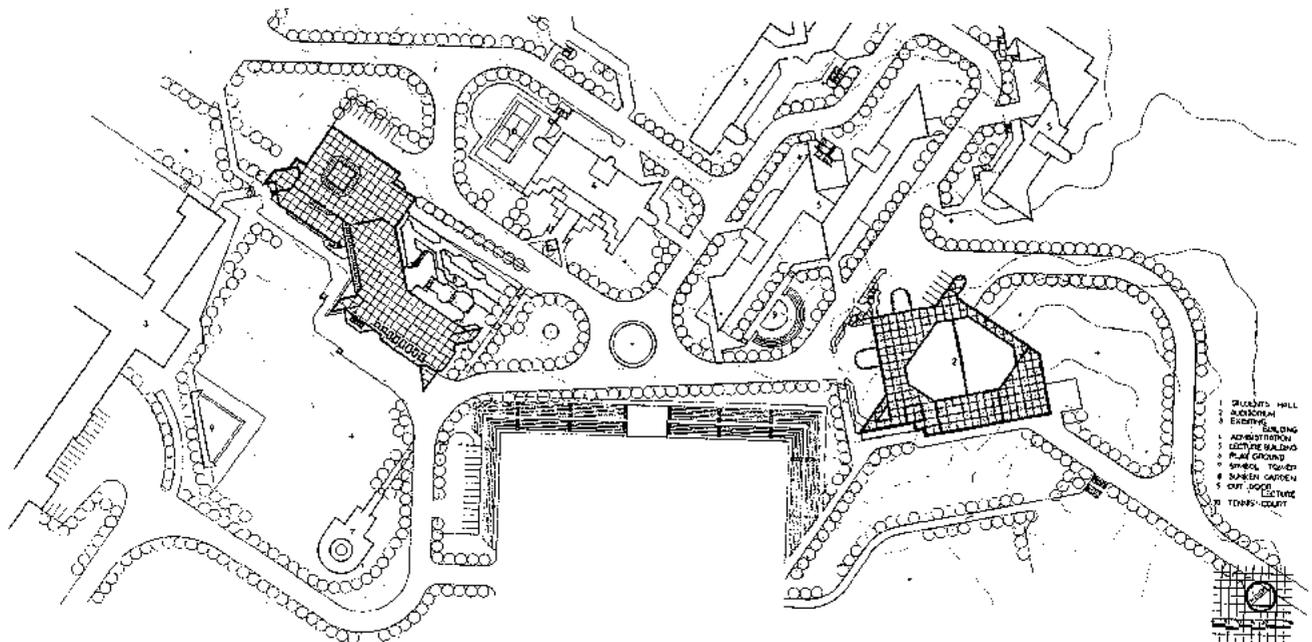
강석원/건축사사무소 구룡가/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42/741-3656



●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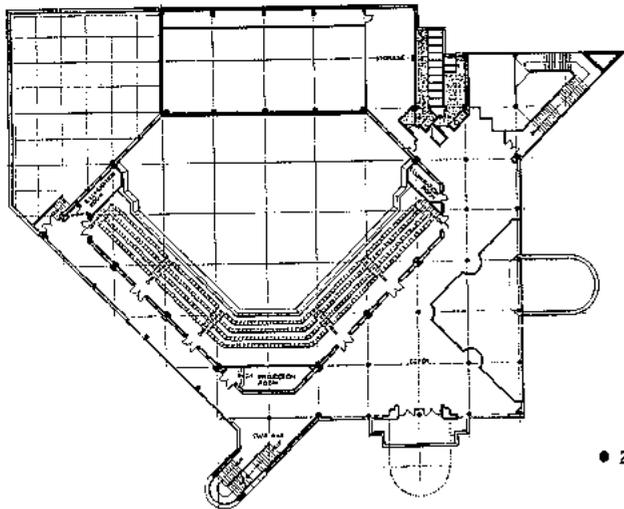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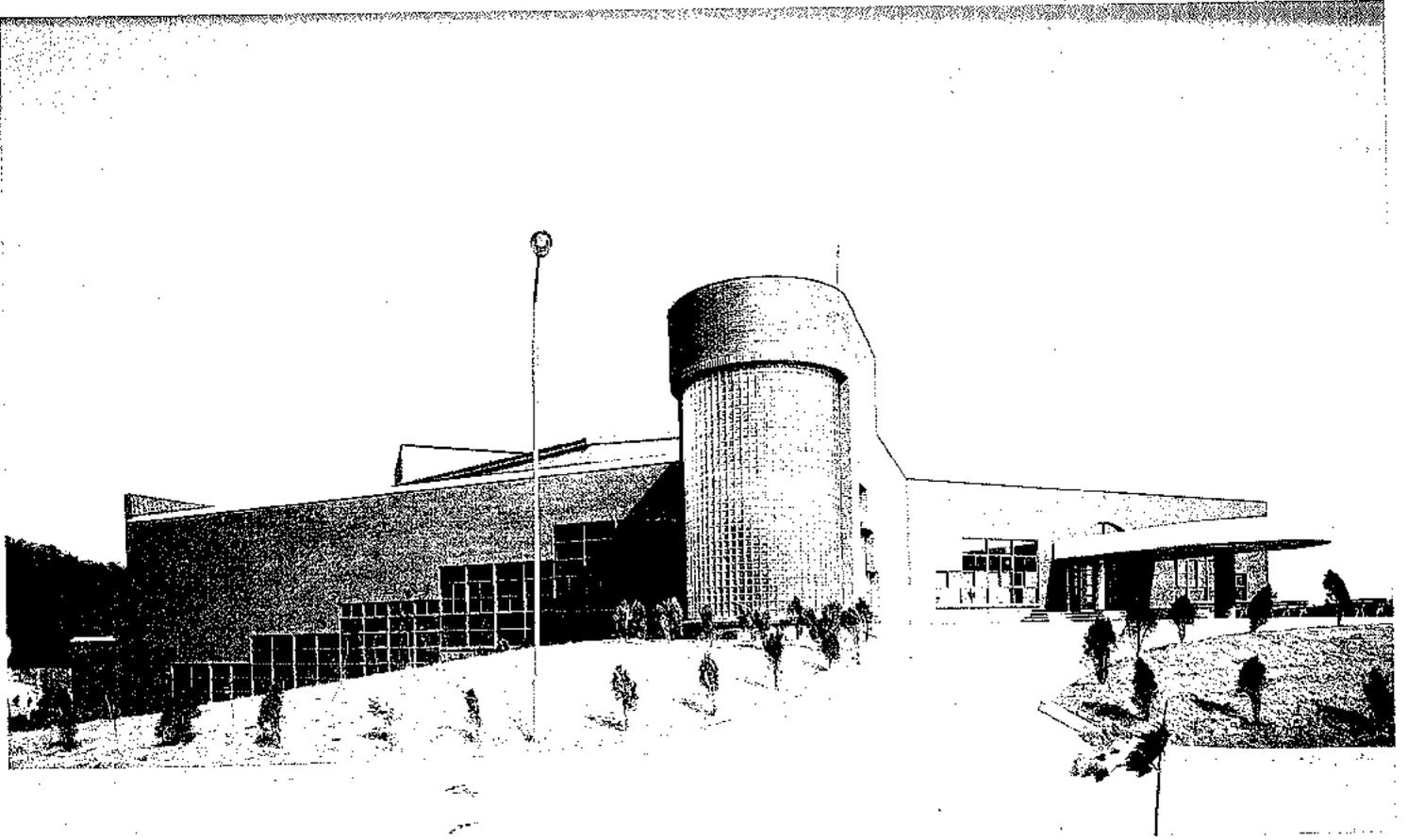


●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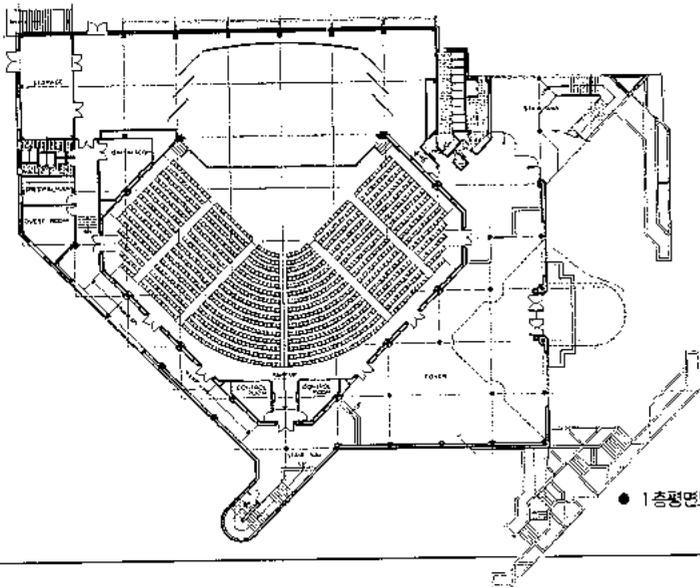


- STUDENT HALL
- ADMINISTRATION BUILDING
- EXERCISE GYMNASIUM
- PLAY GROUND
- SWIMMING POOL
- SUNBATH GARDEN
- OUT DOOR GYMNASIUM
- TERRACE-COU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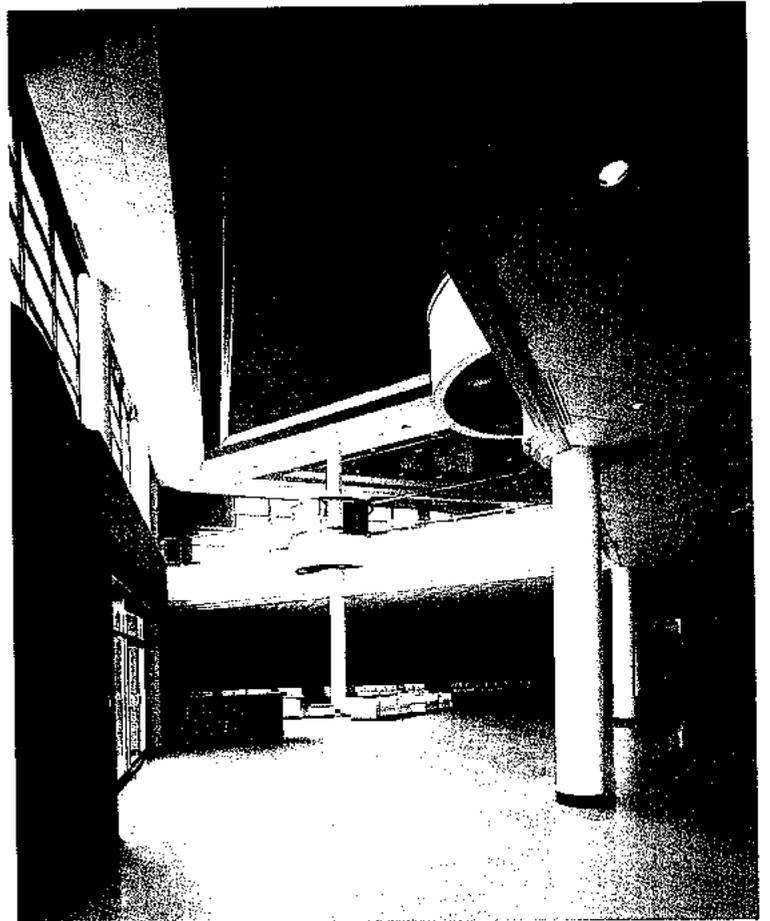
● 배치도



● 2층평면도



● 1층평면도





회원작품

고속도로 망향휴게소

김자호·지순·이광만 / (주)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 Manghyang Highway Reststop
Designed by Kim, Ja-Ho ·Jee, Soon·Lee, Kwang-Man

■
대지위치 : 충남 천원군 성거면 요방리
대지면적 : 8,059㎡
건축면적 : 2,817㎡
연면적 : 3,586㎡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볼트ایت리용 : 스틸볼트조)
마감재료 : (주요외장재 - 외장타일
볼트ایت리용 : 반투명렉산쉬트)



●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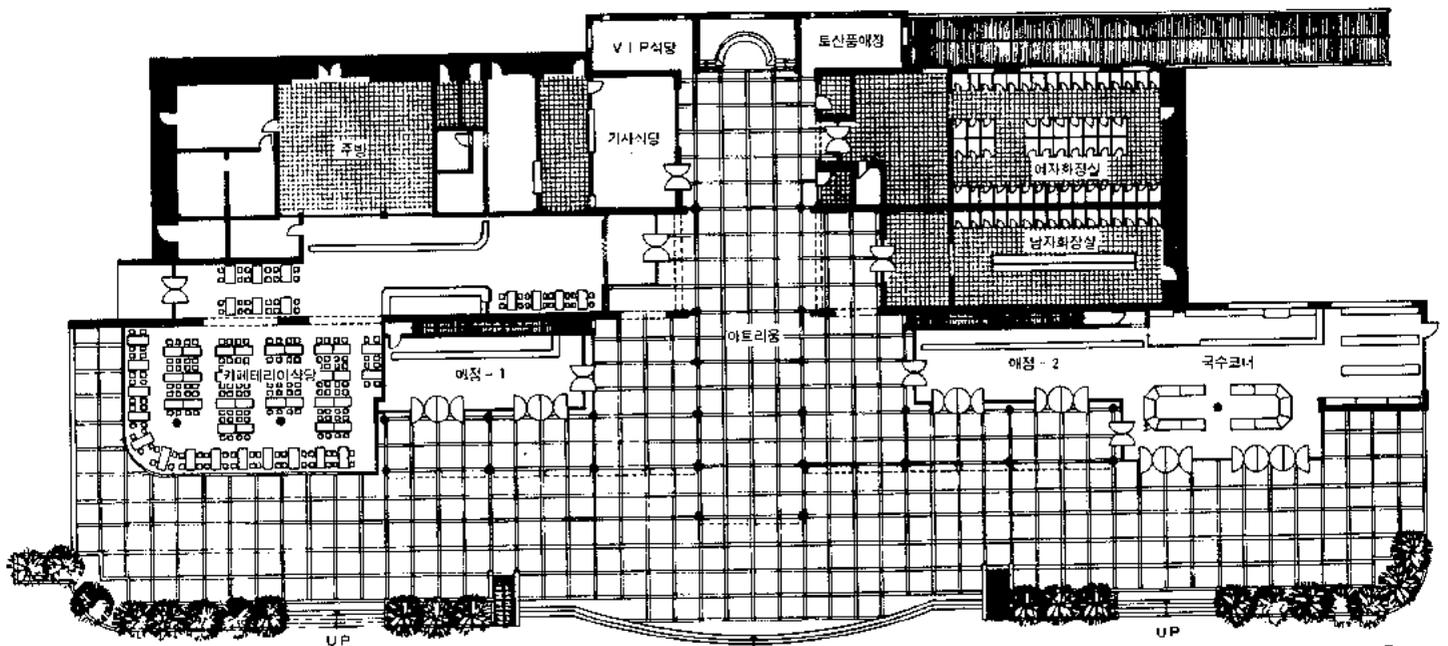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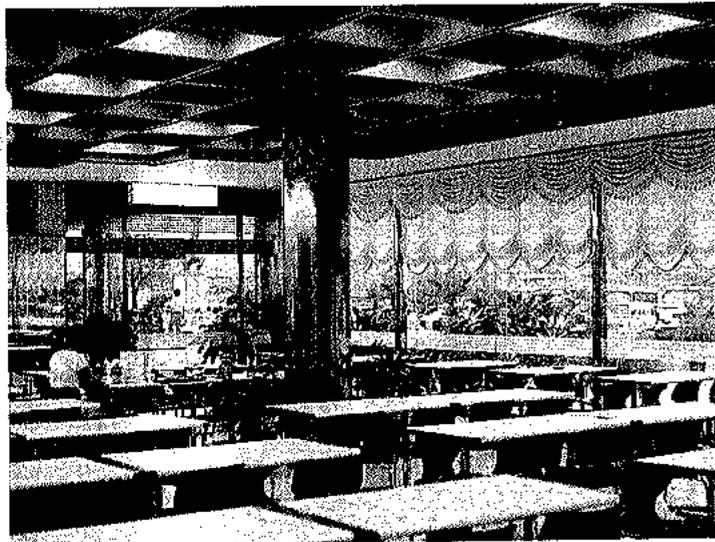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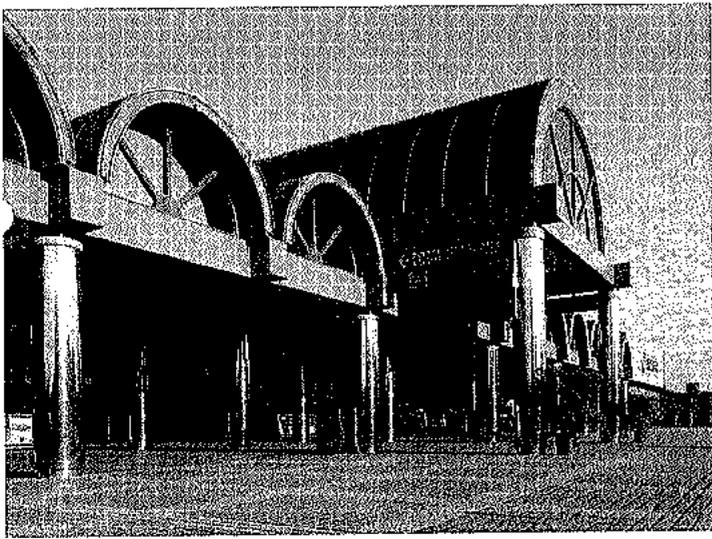


● 배면도



● 측면도

김자호·지순·이광만 / (주)간·삼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65-1/734-0161



●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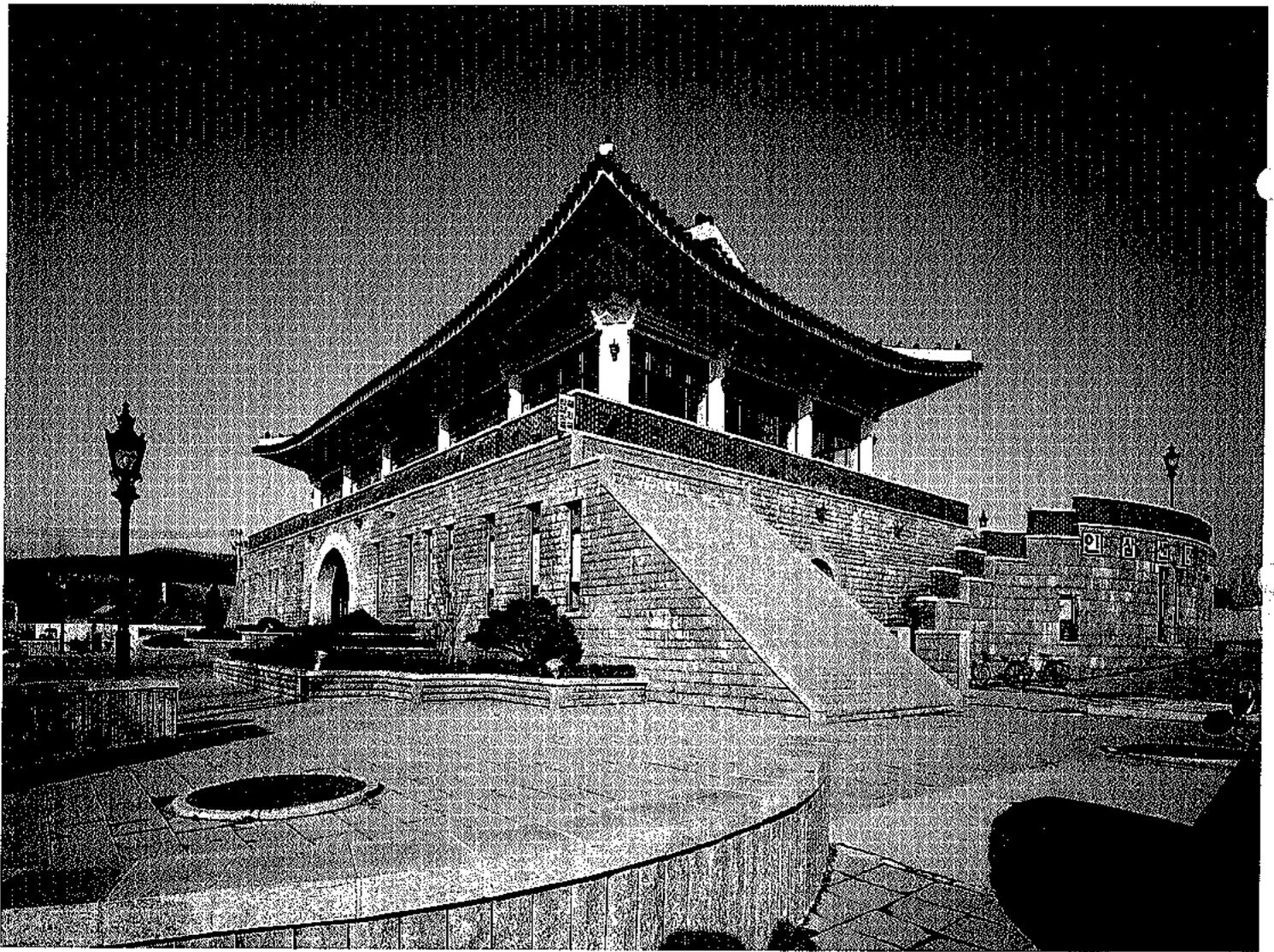


사진: 정정웅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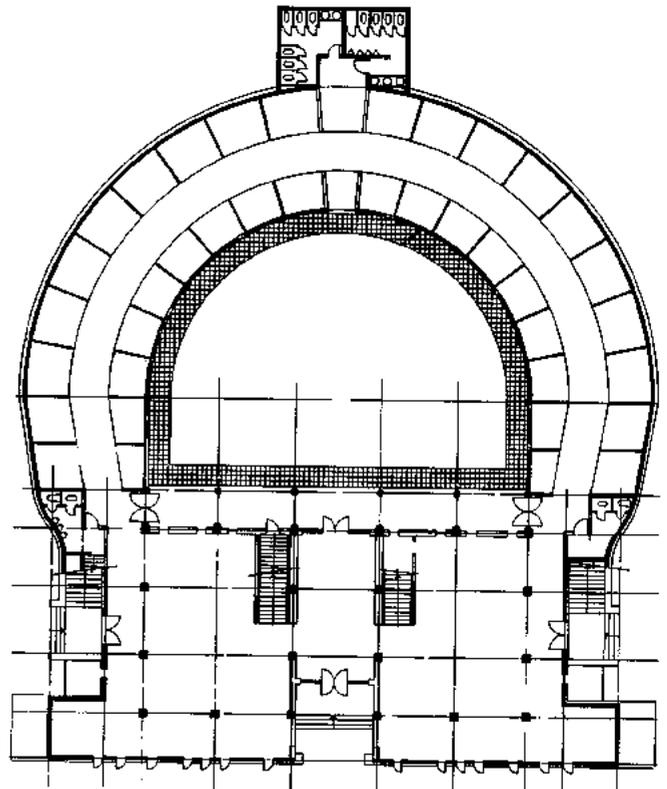
강화토산품전시관

김지덕 / 유신건축사사무소

■ Kang Wha Local Products Exhibition Center
Designed by Kim, Chi-Dok

■
 대지위치: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난산리
 대지면적: 4,990㎡
 건축면적: 989.53㎡
 연면적: 1,498.13㎡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전통양식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19.83%
 용적율: 26.34%
 주용도: 강화 토산품전시관(화문석,
 인삼판매점 및 5일장터와 전문음식점)

김지덕/유신 건축사사무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40/562-7549



●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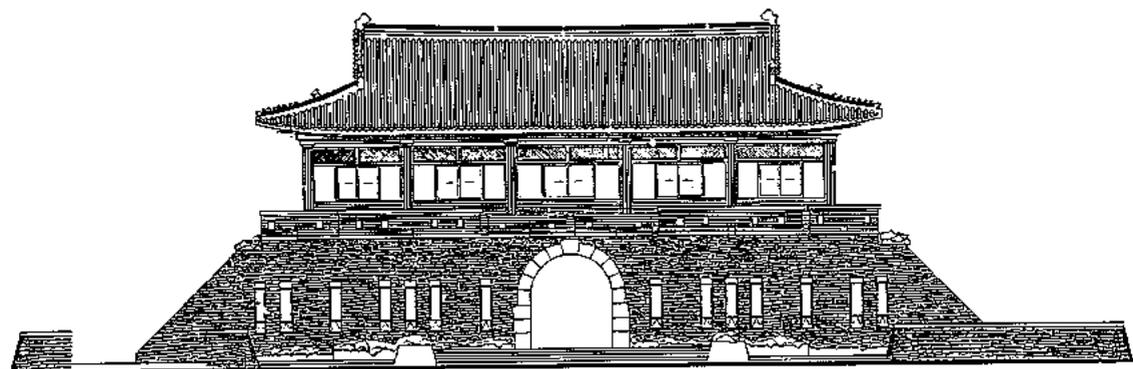
■ 설계개요

한국의 전통형식의 성곽 및 돈대형식을 변형 분산하여 배치를 하였으며 강화도의 문화유적을 유기적으로 변형 조합하여 매장의 특성 및 사용 용도로서의 동선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또한 돈대형식의 옥상 및 건물의 뒷부분에는 강화도 유일의 5일장터 공간을 마련하여 계속 보전 발전시키며 군민의 화합 및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주어 강화도의 현대유적지를 탄생시킨다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였다.



●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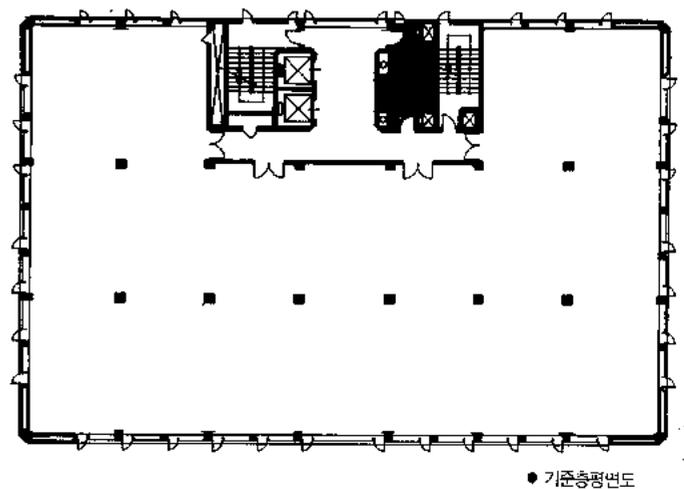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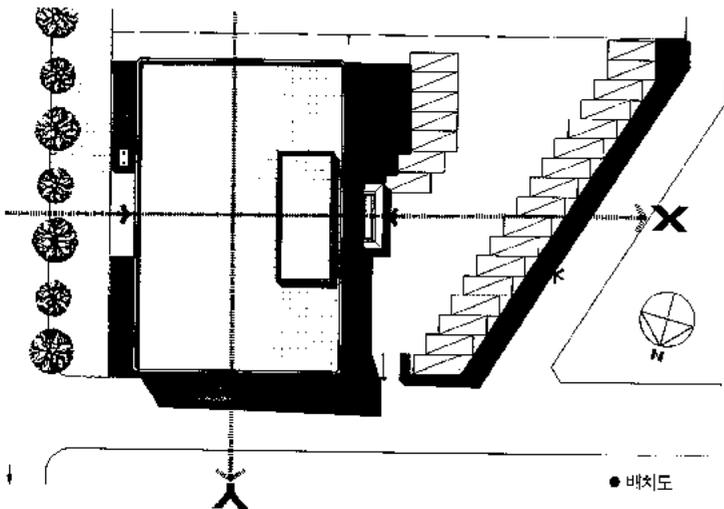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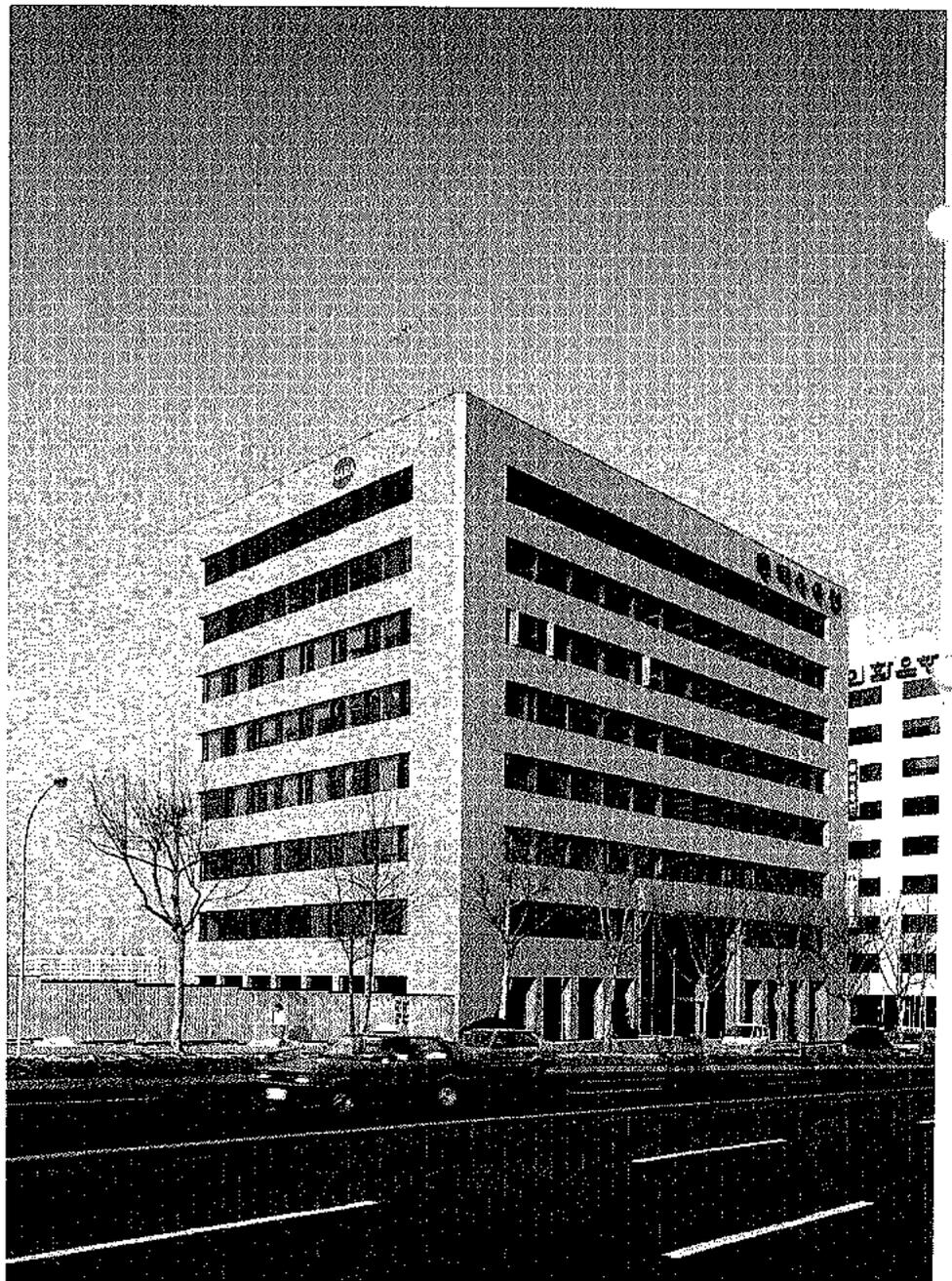
●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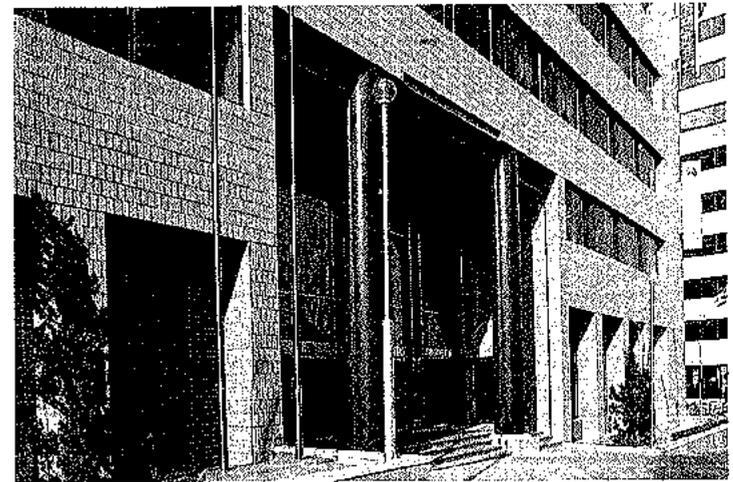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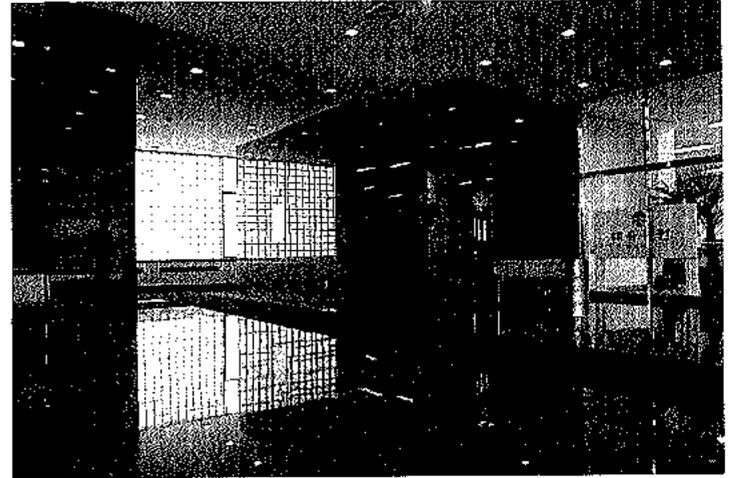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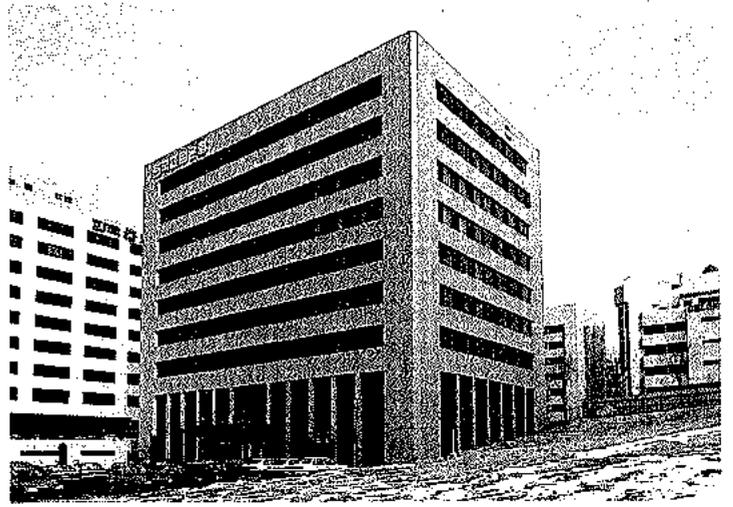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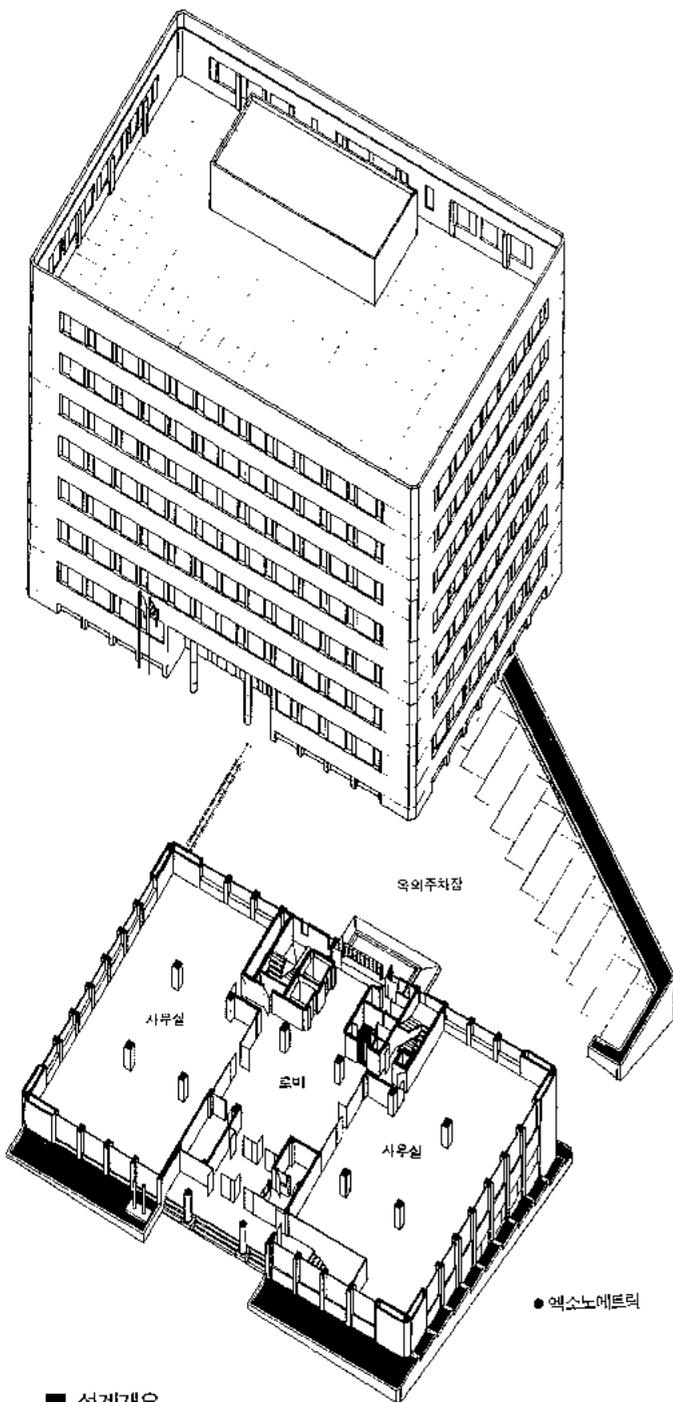
동산빌딩

전상백 · 김선양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 **Dongsan Building**
Designed by Jeon, Sang-Baek & Kim, Sun-Yang

-
-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잠원동
- 대지면적: 2,622㎡
- 건축면적: 1,011㎡
- 연면적: 9,934㎡
- 층수: 지하1층, 지상8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외부마감: 자기질 외장타일
- 내부마감: 바닥-홍석물갈기, 아스타일
- 벽-홍석물갈기, 광택스칠
- 천정: 암면텍스
- 설계담당: 정길용, 류봉렬, 유승일
- 건축주: 동산기업(이규학)
- 설비설계: 동신설비(정중소)
- 전기설비: 유일기공(이성현)
- 사공: 삼성종합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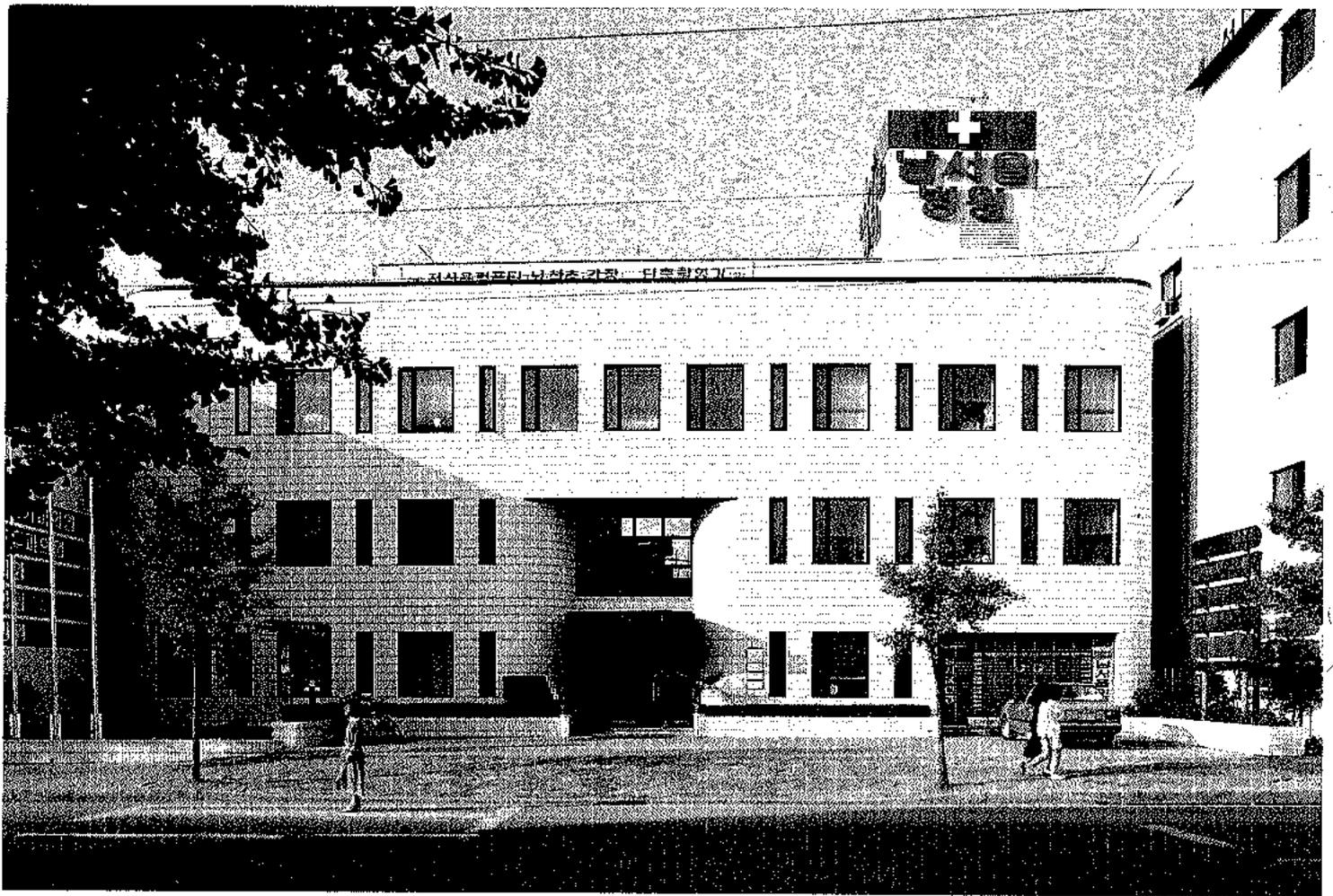


■ 설계개요

신사동 로타리에 인접한 본 대지는 3면이 도로(전면도로, 측면경사도로, 배면소방도로)에 접해 있으며 대지후면이 전면보다 약 8m 낮은 경사대지로 경사지인 본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로면에서 주위건물과 조화를 살릴 수 있을지가 계획의 Point이었다.

지상2층이 면한 전면도로에서 부터 지상1층 현관 및 옥외주차장과 지하1층의 옥내주차장까지를 모두 측면 경사도로가 해결토록 처리하여 Ramp Way 소요면적을 절약하였다.

Core를 중앙뒀면에 집약 배치하여 렌터블비(Rentable Ratio)를 높여 임대지의 경제성을 고려했으며, 도시경관을 위해 전면길이를 최대로 계획하였고, 주위 건물과의 Sky Line을 유지하기 위한 옥상처리(옥상유리에 Color 처리를 함)를 해 보았다. 이 Project는 건축주와 설계자(건축사와 상주감리자) 그리고 시공자와의 3자 협조체제가 아주 잘 이루어져 각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되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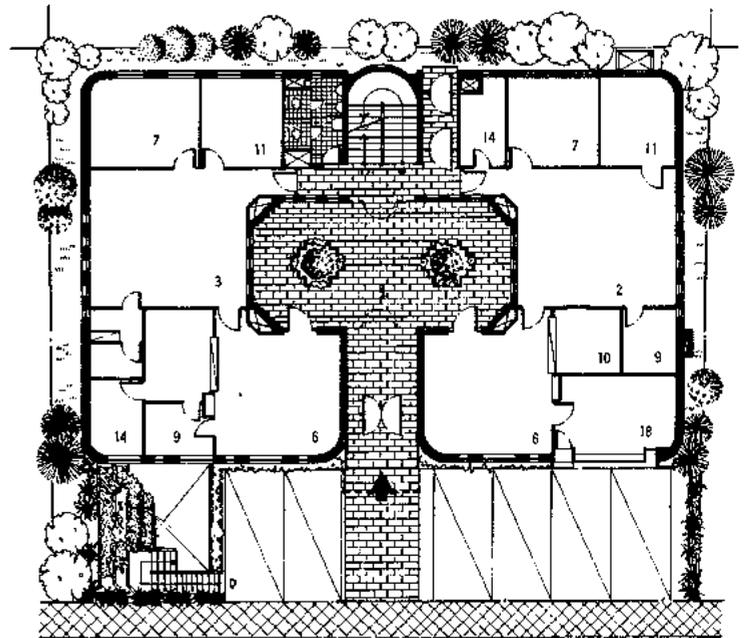
희망작품

평택남서울클리닉

조중연 / 종합건축사사무소 환

Nam Seoul Clinic
Designed by Joh, Joong-Y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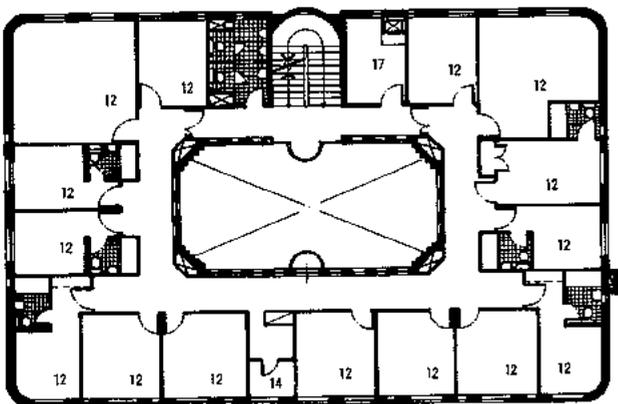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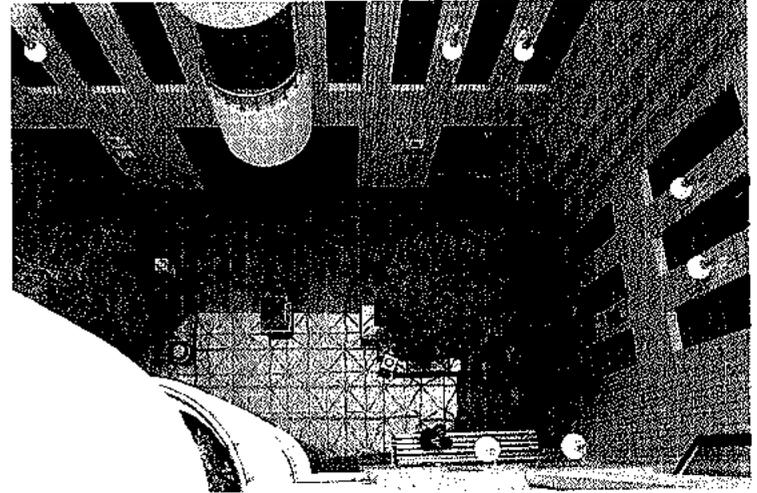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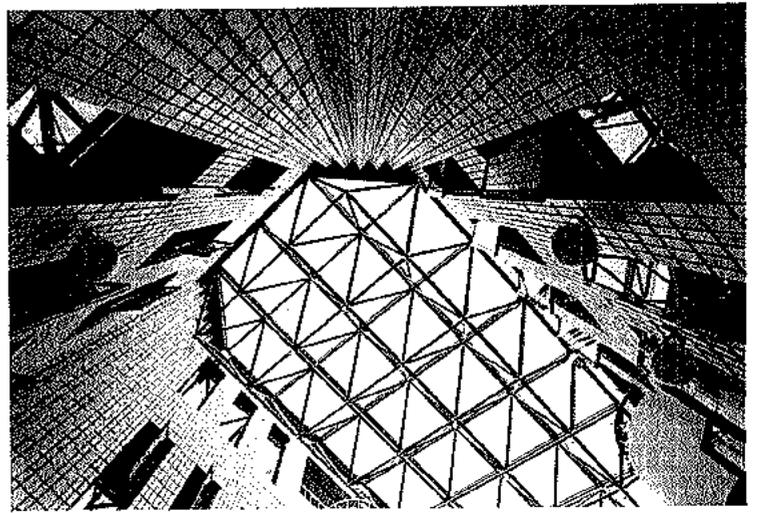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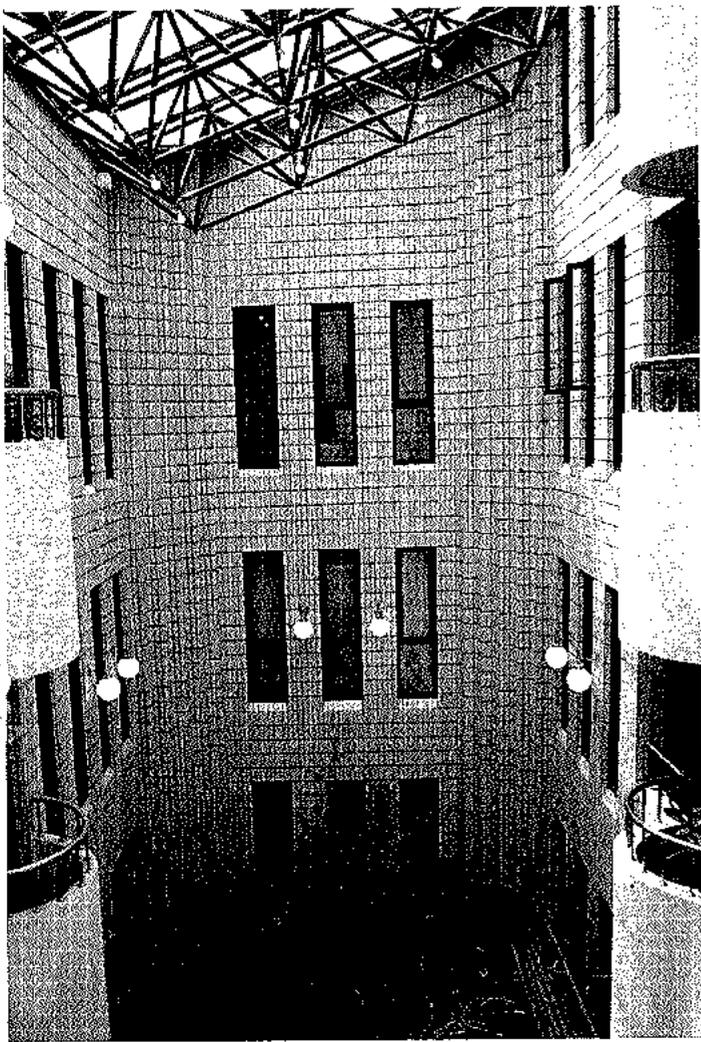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대지면적: 659.1㎡
 건축면적: 400.98㎡
 연면적: 1589.96㎡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자기질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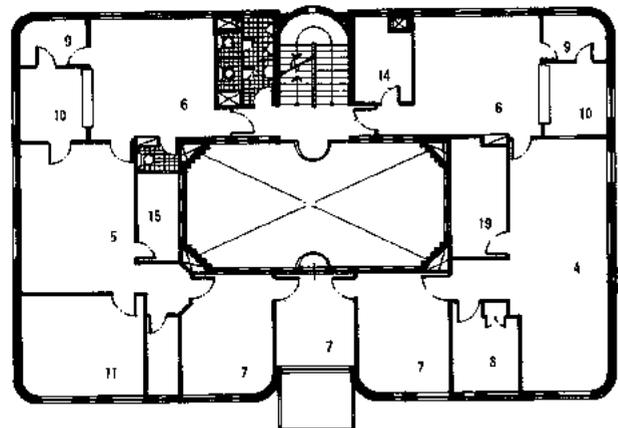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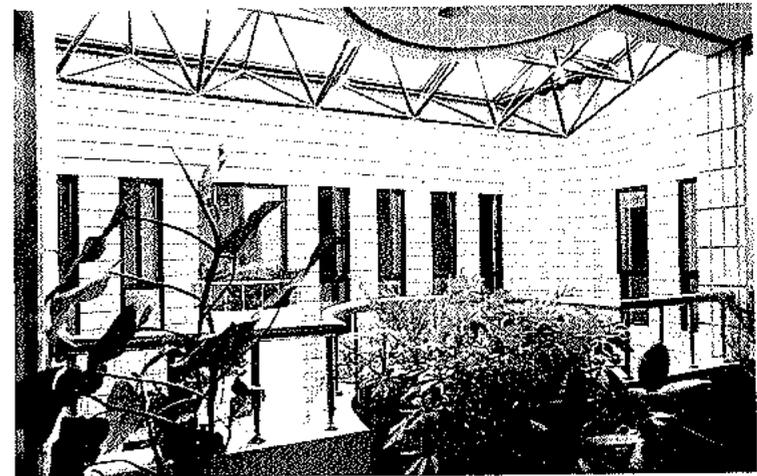
● 배치도 및 1층평면도



- | | |
|--------------|--------------|
| 1. 중실 | 11. 수술실 |
| 2. 안과진료실 | 12. 입원실 |
| 3. 이비인후과진료실 | 13. 청력검사실 |
| 4. 치과진료실 | 14. 참고 |
| 5. 피부비뇨기과진료실 | 15. 검사실 |
| 6. 대기실 | 16. 채노실 |
| 7. 의사실 | 17. 다목적실 |
| 8. 간호원실 | 18. 안경실 |
| 9. 주사실 | 19. X선 및 치공실 |
| 10. 약국 | |



● 3층평면도



●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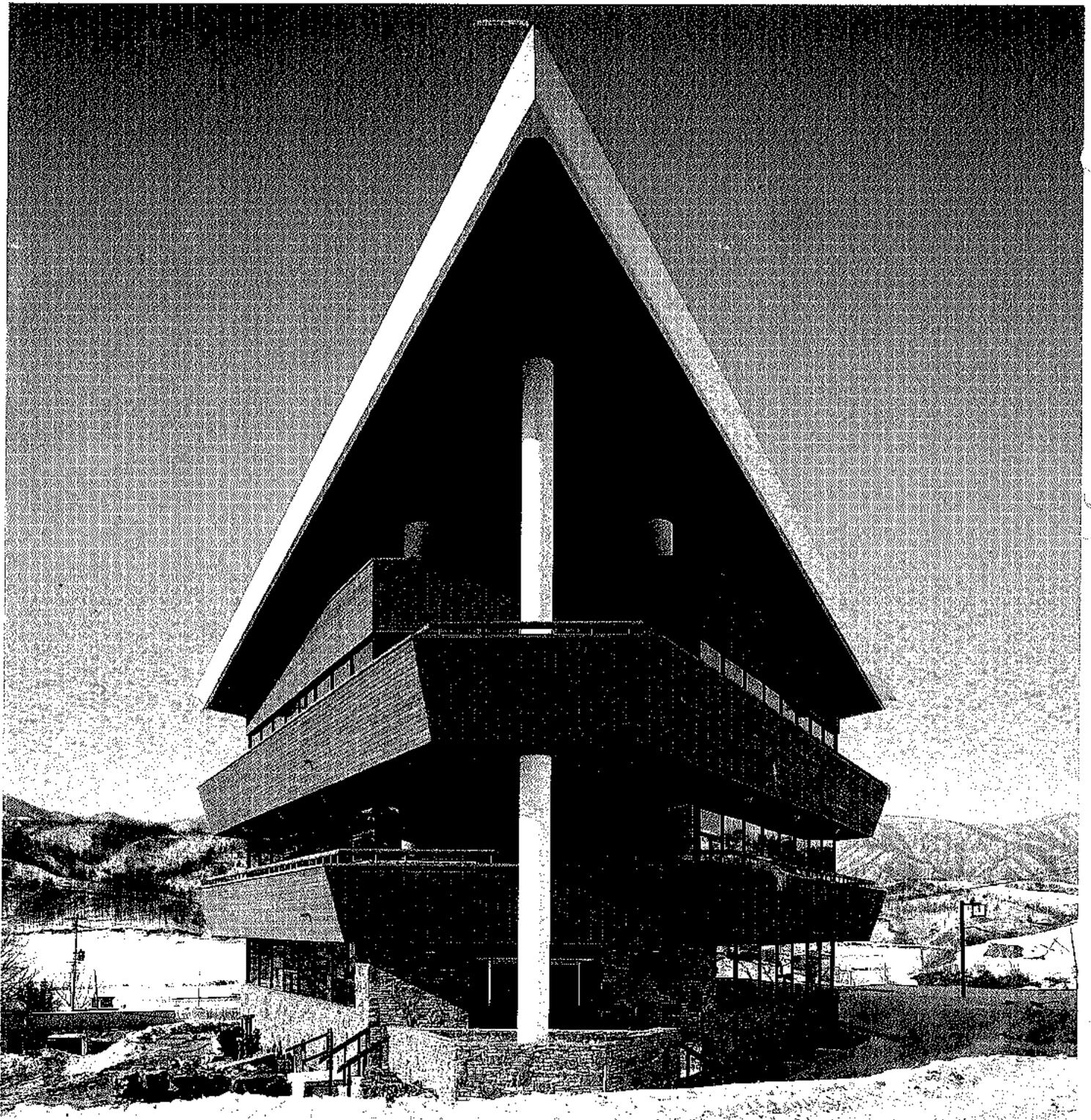


사진 : 정정웅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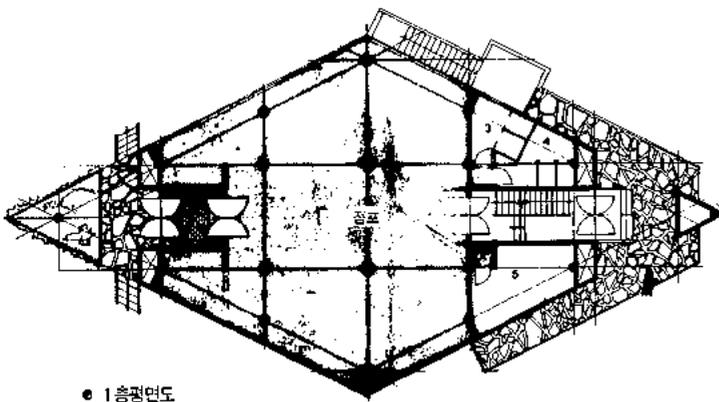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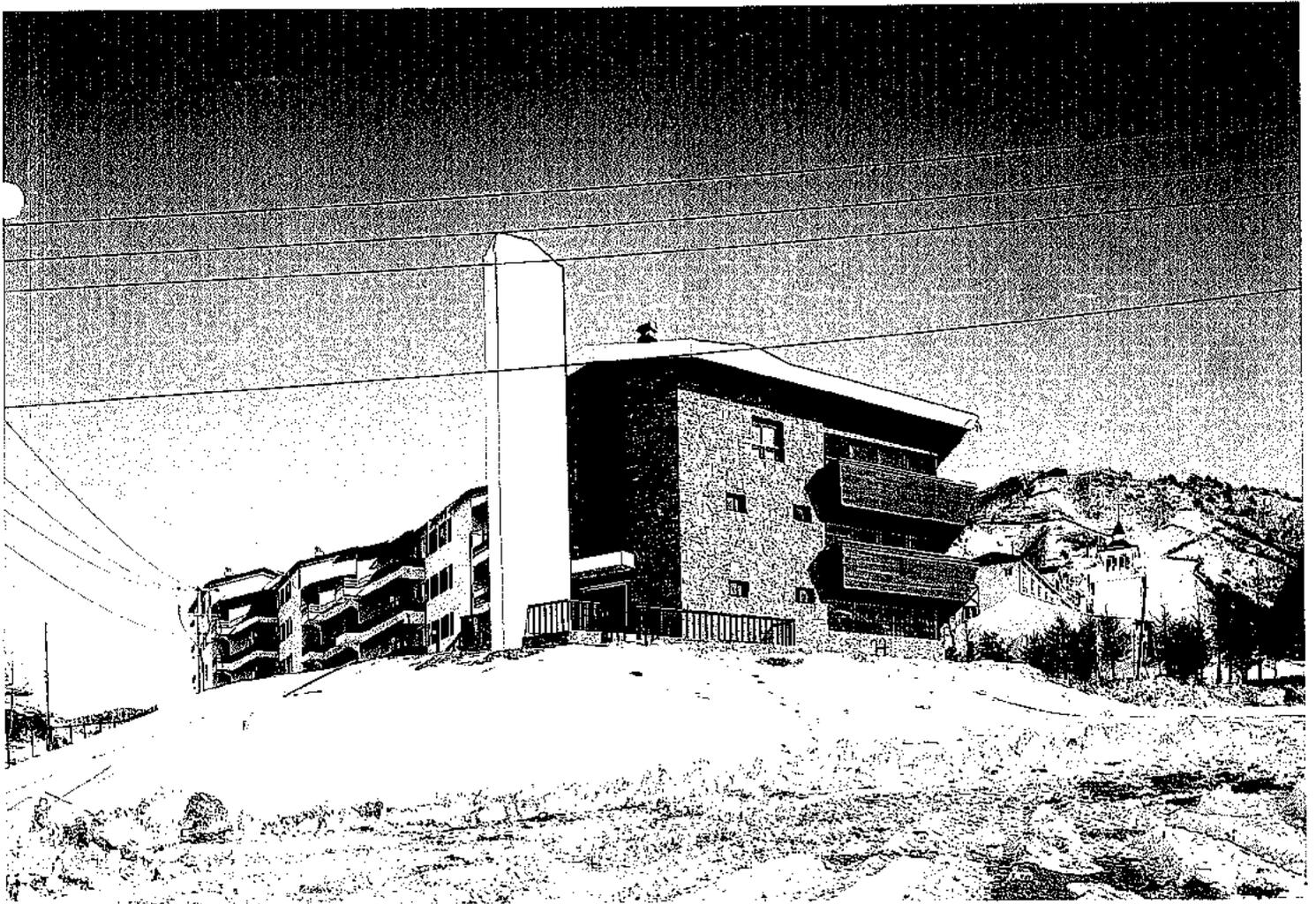
가족호텔 관리동

임용택 / 정원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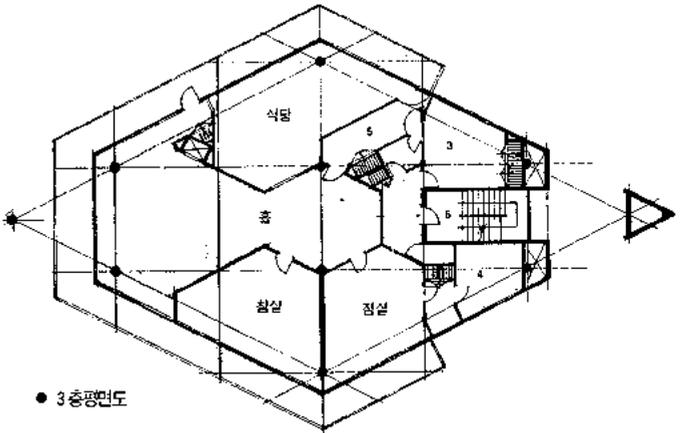
■ Neighborhood Facilities of Family Hotel
Designed by Lim, Yong-Taek

■
 대지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홀일리
 대지면적 : 12,450㎡
 건축면적 : 2,241㎡
 연면적 : 7,594㎡
 규모 :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전폐율 : 18%
 용적율 : 61%
 조경면적 : 4,980㎡
 외장재료 : 철판석 및 후로링
 지붕 : 아스팔트상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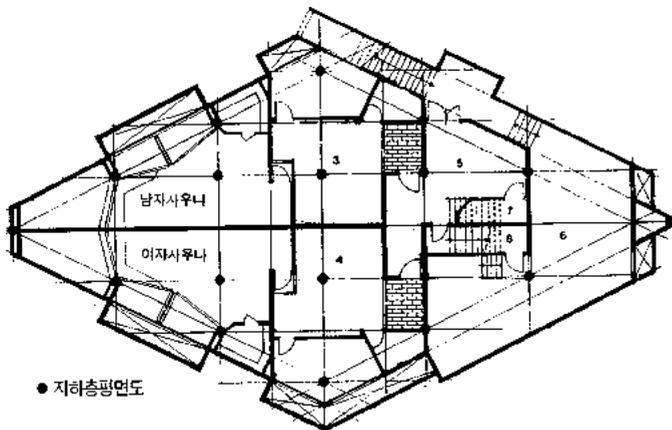
임용택/정원 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시 미포구
서교동 372-2/333-1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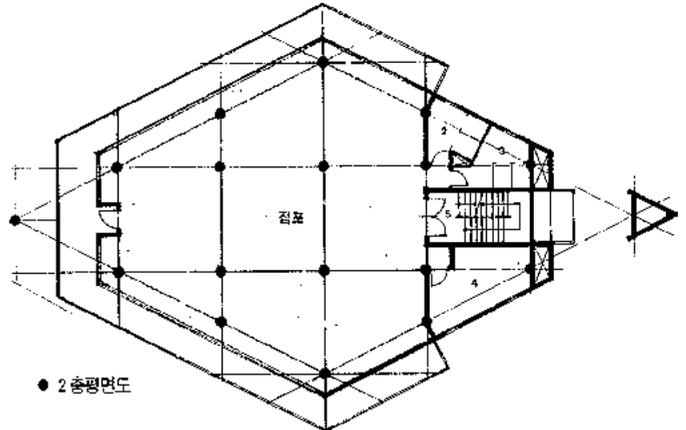
● 1층평면도



● 3층평면도



● 지하층평면도



●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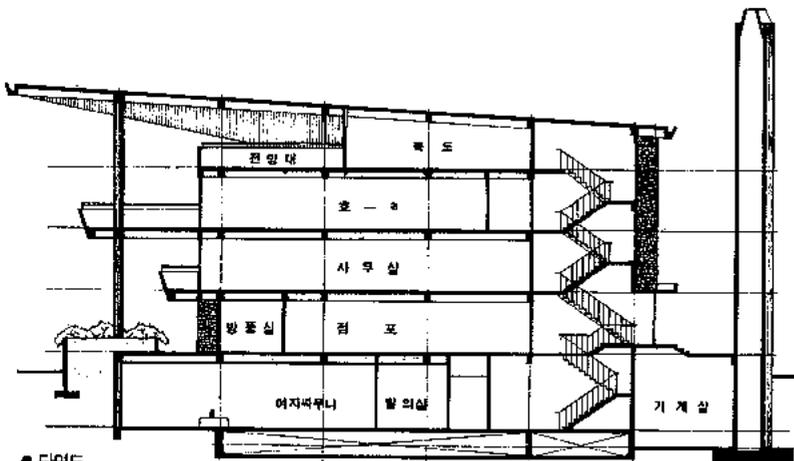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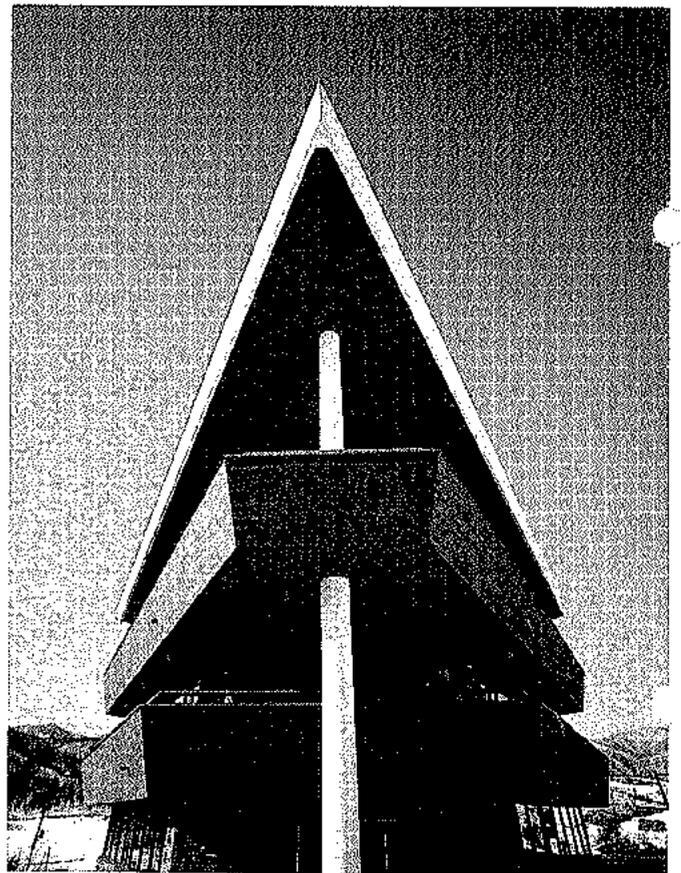




사진 : 김영호

회원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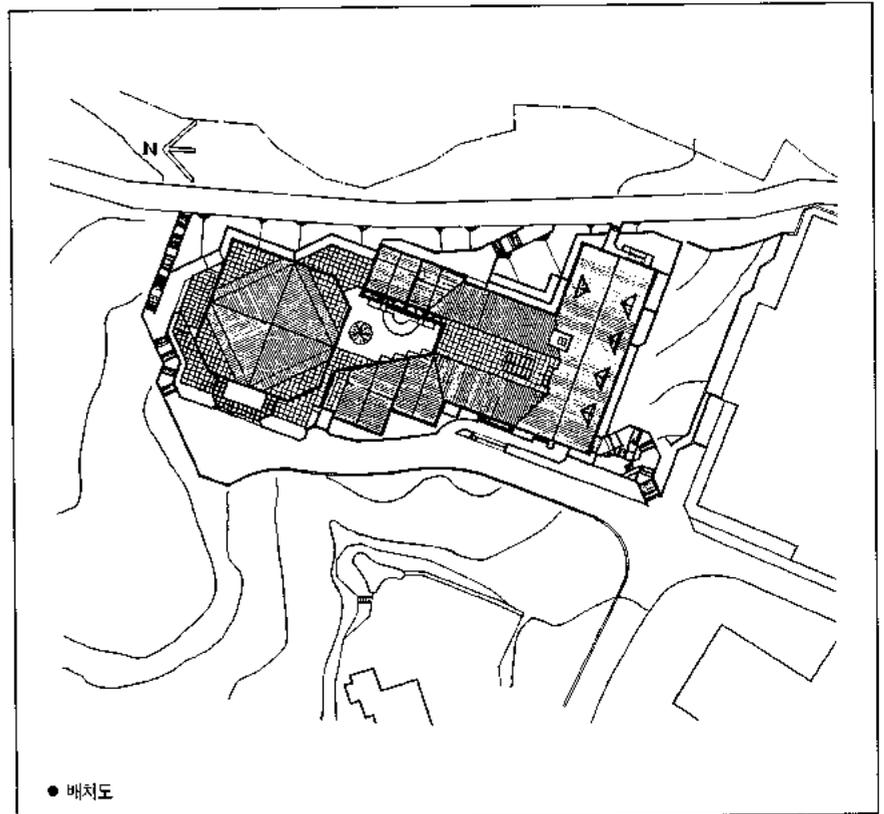
이화여대 법정대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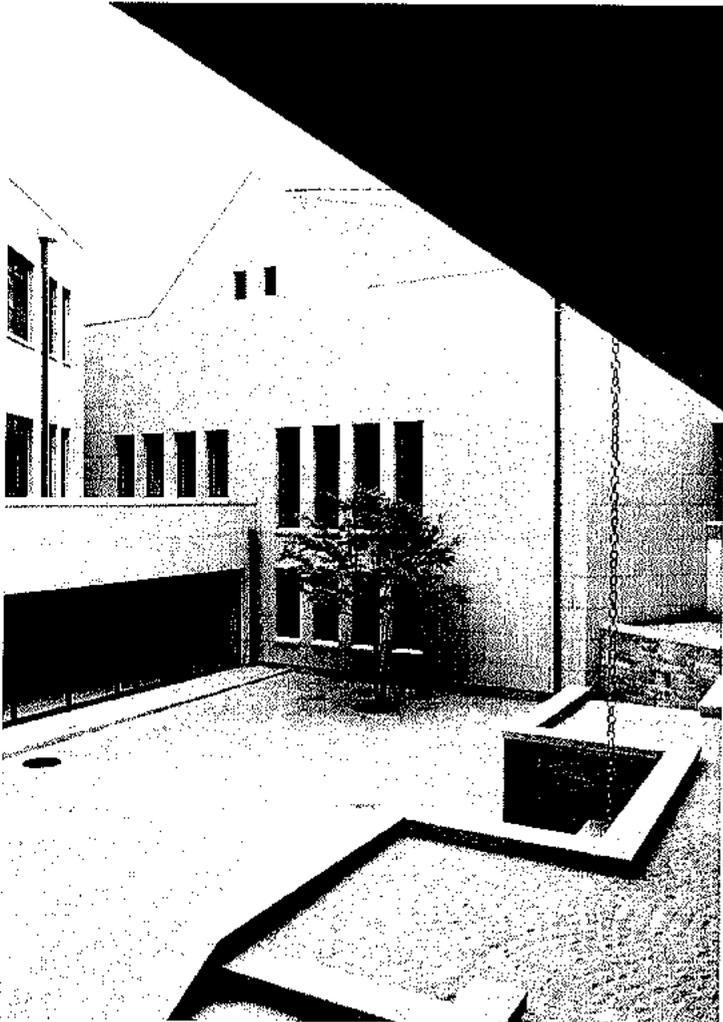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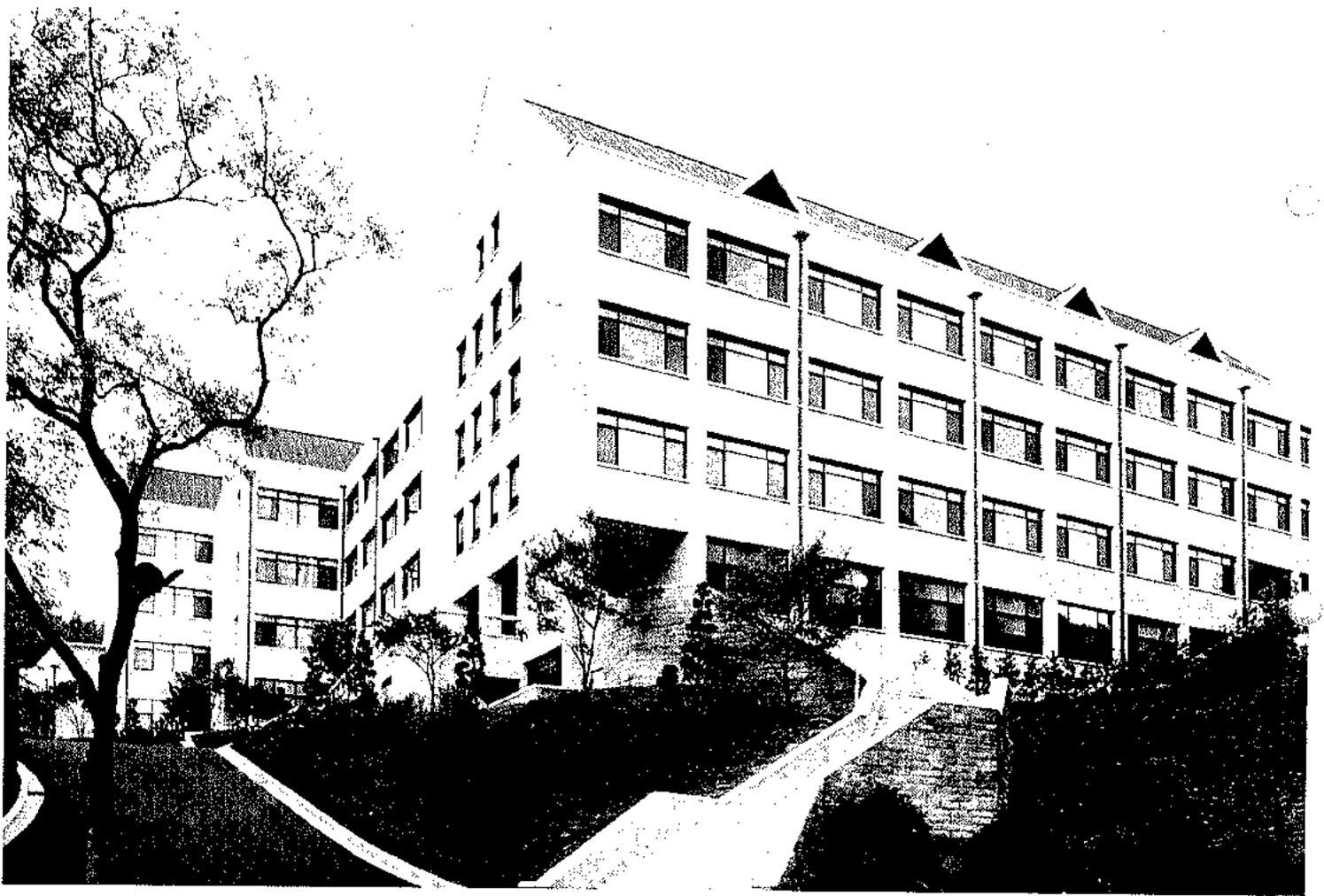
김정식 /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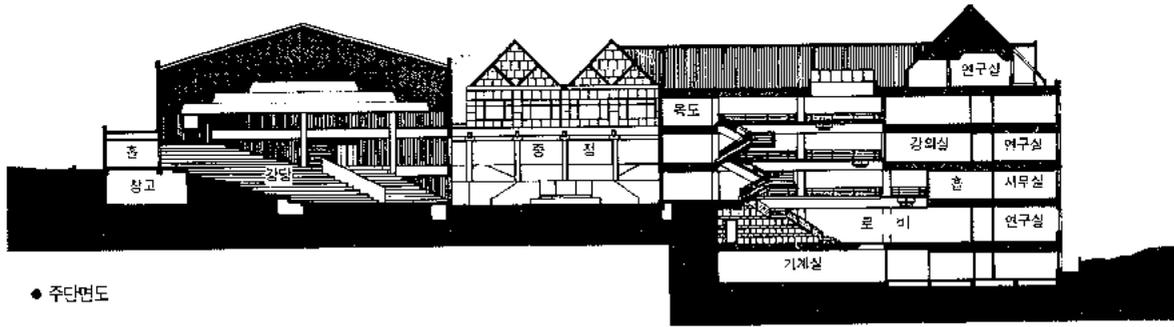
■ Law-Politics Administration Building
Ehwa Woman's University
Designed by Kim, Jung-Sik

■ 대지위치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캠퍼스내
 건축면적 : 2,998㎡
 연면적 : 7,771㎡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장재료 : 화강석버너구이(근식공법)
 발색알미늄+16%페어그라스
 봉재료 : 0.5%동판접기, 발색알미늄
 계획담당 : 김광출 구조담당 : 배원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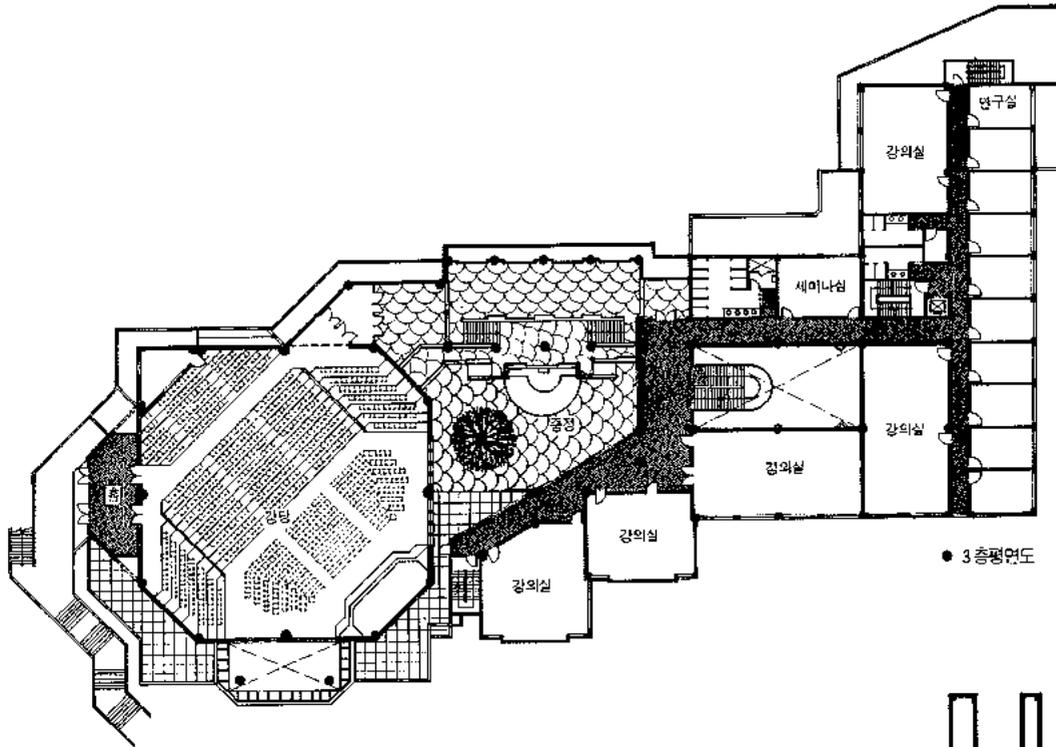
김정식/(주) 정림 종합건축사사무소/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87-1/762-9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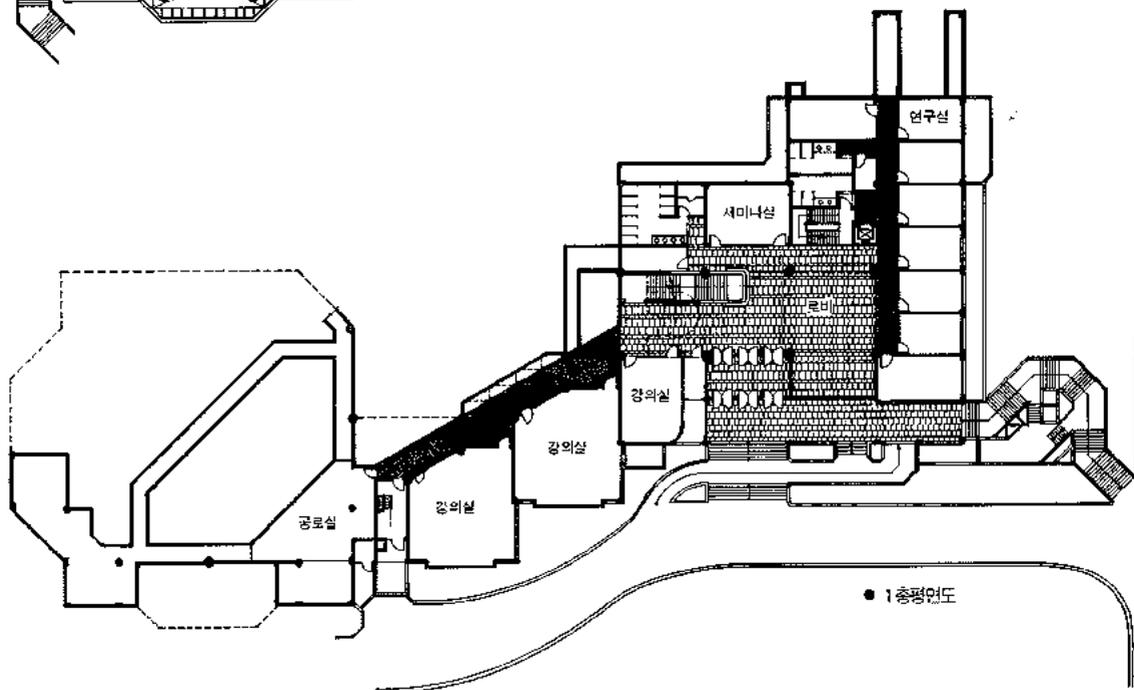




● 주단면도



● 3층평면도



● 1층평면도

신뢰받는 건축사상 정립의 衆智를 모은다.

부덕 천착한 이 사람이 윤리위원장의 대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더불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우리 협회가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 볼 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20여년 동안은 줄곧, 건축사 협회가 마치 부조리의 온상인양 잘못 인식되고 그릇된 주목을 받아 왔는데 이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에 따른 처벌 내용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위반건축 행위자인 건축주나 시공자 보다는 건축사가 유독 처벌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이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당치 않게도 단독 주택등의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설계와 감리업무를 동일한 건축사가 일관하여 수행할 수 없는 불 명예스러운 지경에 까지 이르고 말았다.

건축이 조형 예술로서의 창작 활동임을 감안 한다면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의 작품을 스스로 감리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새삼 두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나 이것은 아직도 극히 일부 회원의 과다 경쟁에서 야기되는 보수액의



사회에서나 행정당국으로 부터 신뢰받는 건축사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衆智를 모으겠다.

黃 在 洵
理事·倫理委員會 委員長

부당 할인이나 갖가지 유형의 명목대여 등등의 부조리에 기인된 자기비하의 소신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루 속히 이와 같은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 함으로써 사회에서나 행정 당국으로 부터 신뢰받는 건축사상을 정립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새해와 더불어 새로운 결의로 이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통합 예산체제 이전에 각 지부마다 설치 운영 되었던 윤리 위원회를 부활시켜 정화 위원으로 하여금 겸임토록 하여 미온적인 지도 계몽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자체 정화활동을 통하여 외부로 부터의 규제나 간섭에 끌려 다니는 태만과 미성숙의 상태에서 벗어나 장작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할 획기적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자체와 독립 예산제의 성격을 가미하는 뜻도 아울러 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본인은 앞으로 미력하나마 회원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하면서 아울러 여러 회원님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지난 한해 동인 회지 12권을 내놓고 그것이 얼마나 회원들의 구미에 맞았는지 조차 확인도 해 보지 못한 채 또 다시 12권을 내놓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보니 송구하기만 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회지가 2천5백명 회원의 것일 뿐 아니라 전건축계는 물론 사회 각층이 건축과 만남의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음을 보고 감회가 깊다.

우리의 이 시대에서 건축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을 더욱 인식시키고 그 시대 문화의 척도가 되고 있는 건축활동의 막중한 책임과 사회 기여도를 온 세상에 알려 정말 건축행위를 위하여 그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크나큰 역할을 하는 그 시기가 도래했음을 진심으로 느낀다. 산적된 건축계 문제들이 쌓이면서 많은 연구와 토론으로 정리하려하나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은 더 조직적이고, 준비되어진 대화의 장을 마련치 못한 이유도 또한 크다 할 것이다.

우리 협회가 세상에 매달 내놓는 5천여부의 회지를 통하여 그러한 산적된 문제들을 풀어 내는 큰 역할을 하며 홍보지로서의 역할을 겸려하면 더 폭 넓은 대화의 장으로서 풀지 못하는 숙제들을 회원에게만 국한시킬것이 아니라 전 건축인의 증지를 모아 우리가 사회에 얼마만큼 필요한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고 책임지는 범위가 무엇이라는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굳히는데로 초점을 모으는 방향설정도 회지가 할 일로 알고 있다.

우리문제 해결하는 용기반영의 장



**협회의 방향이 잘못된 점이 발견되고 미흡한 데가 있다면
서슴없이 시정할 용기도 필요하다.**

安 將 元
理事·編纂委員會 委員長

이러한 협회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여러분은 자신들의 작품과 생각하는 바를 (그것이 전문적 분야이든 비전문적인 분야이든 건축인의 생활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 회지에 실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협회의 방향에 잘못된 점이 발견되고 미흡한데가 있다면 서슴없이 시정시키는 용기도 필요하다. 명실공히 협회지는 사회나 건축계의 대화의 장이 되므로써 명랑한 사회가 되어지고 훌륭한 선진사회 구현에 앞장서는 전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년에는 복잡한 일들이 산적되어 있다. 건축사 연금문제, 공정거래, 건설관리법에 대한 감리문제, 독립예산에 의한 연합회, 국제회의 등의 그것이 바로 우리 문제인데 왜 회원들은 회지에 기고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전달시키지 못하는가 생각해 본다.

용기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일들은 우리 스스로가 부딪혀 해결하는 평범한 용기가 건축행위에도 용감한 만큼 건축사회의 설계에도 더욱 참여함이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우리 편찬위원회는 그러한 일들을 회지에 실어 온누리에 더욱 빛내고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노력하고자 한다.

1986년도 역사의 한 해로 마무리 지어졌고 이제 1987년을 맞이한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난 한 해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우리 건축사에게는 다사다난 하였던 해로 우리의 업무범위가 위축당할 위험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올해로 계속 연계 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선배 이사도 계신데 막중한 건축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어 우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유능한 각분과 위원장과 많은 회원들의 훌륭한 협조를 얻어 업무를 수행코자 한다.

일부 회원들은 건축위원회 안에 분과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 하고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발전되면 필수로 그 기능이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 협회도 건축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의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것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하여 그 결과를 활용 하여야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건축에 관한 개념과 이념도 정립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용이 정립되고 다져진다면 우리의

어려운 시기 신념과 노력으로 결실 창출



금년에는 분과위원회를 풀제로 운영하여 그 역량을 집약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李 文 雨
理事・建築委員會 委員長

내실로 인한 사회적 지위와 객관적 평가 기준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 '86년도 에는 건축위원회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금년에도 좋은 업적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대내·외 우리의 업무 및 보수에 직결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회 예산이 전용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어진 범위 안에서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 여러 회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는 감리전담 용역회사를 설립 하고자 추진 하고있고 멀지 않아 어느 시점에서서는 설계 업무도 국제적으로 개방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 및 협회의 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 및 대비·설정도 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꾸준한 연구와 노력과 봉사로 우리의 위치가 확고히 다져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분과 위원회를 풀제로 운영하여 그 역량을 집약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중단없는 노력을 집중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하면서 여러 회원의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고자 한다.

건축제반법규와 현실과의 조화를 위해

한개의 사회 집단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형성되든지 그 집단의 유지를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행동이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최소한의 질서와 규칙을 필요로 하며 특히 이러한 규칙과 질서가 명문화된 것을 우리는 법규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는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며 따라서 각 구성원은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법규는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변천함에 따라 그 사회의 법규도 이에 맞게 변해야 하는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건축인들의 분야도 크게는 사회의 한 분야로서 작게는 하나의 독립성을 가진 사회 집단으로서 법과 규정들을 필요로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으며 또한 우리는 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동시에 그 정신과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금번 법규위원회 일을 주관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는 점은 내 자신이 국가가 제정한 건축법, 건축시법 및 건축 활동에 관한 법과 건축사들의 함의로



건축에 관한 제반 법규에 관심을 갖고 변천하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룰 것이다.

姜 基 世
理事·法規委員會 委員長

이루어진 건축사협회 내의 규정들을 너무 등한시 하고 건축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건축에 관한 제반 법규에 관심을 갖고 변천해가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위원들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다짐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려움이 앞설 뿐이다. 더군다나 건축계가 건축물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에 중점을 뒤야 할 시기를 맞고 있고 외국의 저작권 및 제반 용역들이 들어 오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건축관계의 모든 법규가 재정비 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재도약하는 이 시점에서 제반 법규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 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 건축사들은 차제에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로서 슬기롭게 대처 함으로써 편리하고 발전적이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규를 개정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우리 법규 위원회의 활동도 이러한 취지에서 초석이 될 수 있다면 천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제삼 그간의 노고가 많으셨던 법규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바이다.

올해는 제3차 ARCASIA 총회를 오는 1988년 10월말경 우리 서울에서 치러야 할 준비의 해이다. 우리 건축계에서의 첫 국제회의인만큼 온 건축인은 총력을 다하여 훌륭하게 치르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국제외교의 적극성에 대한 절실성과 국력의 바탕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장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을 감지한다.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국가간의 존립은 약육강식의 연결이었고 현재도 그러하고 미래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추세에서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러하듯이 민간의교 또한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인 정보나 또한 초스피드하게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대처해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가를 항상 머리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 협회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정보의 탐지 습득이 민간의교의 측면에서 발돋움 했으며 88년도 10월에는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주관으로 제3차 ARCASIA 대회를 서울에서 우리 손으로 치르게 됐다. 이 대회에는 아시아 각국으로 부터 훌륭한 건축가들이 많이 참석 할 것이다.

成年 협회로서 뜻 있는 행사 국제회의 개최



87년은 제3차 ARCASIA 총회 준비의 해이다. 성년 협회로서 뜻 있는 행사가 되도록 대비 해야 할 것이다.

宋 基 德
理事·國際委員會 委員長

우리는 86년에 아시아 올림픽을 서울에서 멋있게 치렀고 88년에는 세계 올림픽을 서울에서 멋있게 치러야 할 차례에 와있다. 제3차 ARCASIA 총회도 88 세계 올림픽이 끝난 다음달에 우리는 훌륭하게 치러야 할 것이다. 전 건축계를 총 망라해서 아세아 건축가 들에게 우리의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우리 회원의 권익창달에 훌륭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미덕과 능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중동건축붐으로 많은 건설인이 중동에 진출했고 많은 외화획득으로 국력의 향상에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중동 건설붐의 퇴조로 제2, 제3의 건설시장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이번 제3차 ARCASIA 총회는 우리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좋은 결과가 올것으로 생각된다. 이 총회에 우리의 발전된 서울거리, 우리의 전통과 미덕을 보여주고 향상된 국력 및 수출되는 다양한 국산품을 보여주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년이 된 우리 협회로서의 첫 국제사업인 만큼 전원 참여 전원 협력의 굳건한 힘으로 온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금년에는 위와같이 제3차 ARCASIA 총회를 위한 준비의 해이니만큼 조직과 계획과 참여하는 자세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것이다.

협회 앞날을 밝히는 내조자의 역할

1월21일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부터 제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당연직이므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제도 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형편에서 당혹할 수 밖에
 없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데, 오늘 26일 사무실에 출근을 하니 책상
 위에 출판사업부에서 표제에 관한 원고를 건축사지 2월호에 게재 할 수
 있도록 원고를 보내 달라는 청탁서와 제도위원회 구성원의 명단이 놓여 있다.
 청탁서를 보는 순간 재차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제도위원회 위원명단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 쉰다.
 지난 해까지 제도위원으로 활동 하시던 분이 그대로 재위촉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협회의 앞날에 밝은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내조자로서 성의를
하고자 한다.**

尹 鉦
 理事・制度委員會 委員長

특히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주관하시던 신정환 회원이 부위원장 으로,
 위원장에는 이사 당연직으로 본인이 배치 되었다는 것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다. 안기태 회장의 의지를 한 눈에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임 오응석 회장이 첩 마련한 제도위원회 설립 이념을 그대로 승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독립 예산제와 연합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알 수 있는 본인으로서 새로운 설계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신참자로서 기형성된 위원회의 분위기나 업무를 하루 빨리 터득하여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고 위원장 으로서 각 위원이 어려움 없이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협회의 앞날에 밝은 희망을 담을 수 있도록 내조자로서
 성의를 다 할까 한다.

감정위원회는 불필요한 사회가 되어야

우리 인간이 모태속에서 자라 이 세상에 탄생하여 성장하기 까지의 과정과 같이 우리들의 창작활동 또한 거기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모태가 허약하면, 허약하고 병든아이가 태어나듯 우리 건축도 건축자·건축주·시공자 3자가 합심하여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야 경제적이고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이 탄생된다.

그래서 건축사는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집념의 많은 시간속에서 고뇌하며 설계를 한다.

그러나 건축주를 잘못 만나면 햇빛도 보기전에 유산되고 만다. 또한 시공자를 잘못 만나면 비록 건축물이 이세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온몸이 부실하여 잔병치레가 끝날날이 없다.

눈·비가와도 바람이 거세여도 항상 걱정에 파묻혀 살지 않으면 안된다.



**설계상의 문제, 시공상의 문제, 천재지변상의 문제 등등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장치는 불필요하게 되어야 하는데…….**

朴 榮 翼
理事·鑑定委員會 委員長

이 땅에 멕시코에서와 같은 강진이 일어났다고 상상하여 보자. 과연 우리가 만든 건축물이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번에 정부로 부터 내진설계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었고 우리 협회에서도 감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바 설계상의 문제, 시공상의 문제,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잘잘못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격이 되었으니 생각하면 어느 면에서는 불행한 일이 아닐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천재지변에 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불가항력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하겠으나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을 소홀히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불행한 일이 생겼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활에서 감정위원회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아직도 建築上을 設計上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준공식장에서 건축사가 응분의 대우를 못받는 현상도 비일비재하며 기념현판에서 건축사의 이름이 빠지기도 일쑤이다. 건축사 면허를 획득하기 까지 얼마나 긴 수업의 年限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렇게 탄생한 건축사가 어떤 일로 사회와 문화발전에 공헌하는지, 일반인이 깊은 이해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사가 사회에서 좋은 인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가끔 생기고 마땅한 권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를 이러한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서글픈 현실이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믿는다. 홍보위원회는 탄생한 지 올해로서 3년을 맞게 되며 그간 전임 위원들께서 홍보부재의 악토를 갈고 비료를 넣고 땅심을 높여 씨 뿌린 업적은 실로 크다. 올해 본인은 물려받은 이 훌륭한 토대를 바탕으로 지부단위의 홍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초점을 모아보고자 한다. 본부나 지부나 대한건축사협회의 한 몸을 이루는 支體이므로 굳이 본부다 지부다 구분할 이유는 없다고 보지만 歸納的 방법을 빌어, 전체를 홍보하는 成果에 접근시켜 가는 것도 참신하다고 여겨져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을것 같다.

회원 모두 홍보위원으로 나설때



87년은 전회원이 홍보위원으로 나서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一助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趙 春 元
理事·弘報委員會 委員長

그 다음에는, 홍보매체로서 활용가치가 큰것 중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이상 갈 매체가 없겠으나 우리의 건축사지도 적극 활용하면 그에 못지않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올해는 편찬위원회와 긴밀한 유대하에 홍보적 측면에서 건축사지를 유용한 매체로 키워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싶다.

그러나 홍보위원만이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회원모두가 홍보위원이 되어 달라는 주문이다.

회원에게는 홍보매체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넓게 열려 있다고 본다. 수행하는 업무성격상 방송에 출연할 기회도 자주있을 수 있고 신문에 기고할 기회도 자주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死藏시키지 말고 적극 활용하기만 한다면 개인적인 홍보성과는 물론 결들여 협회차원의 홍보성과도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더구나 다 잘 아는 바와 같이 87년 이 해는 우리 건축사의 권익을 위축할 여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 모두가 홍보위원이 되어 눈부신 홍보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일하는 해 회원과 사무처의 협조를 기대

1) 지난 1년간은 나 자신 공부하는 한 해였다.

신설된 연수위원회를 맡아서 연수위원들과 같이 연수제도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보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의 획일적인 강의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회원에게 의무화한 수강제도상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구조학을 전공하고 수십년간 구조전문 사무실을 경영하며 대학에서 구조학을 강의하고 있는 회원에게 전회원을 상대로 작성된 교재로 구조학을 의무적으로 수강케 하였으며, 둘째는 설비를 전공한 회원에게 구조를 수강케 한다든가 반대로 구조전문가에게 설비를 의무적으로 수강케함으로써 흥미를 잃고 수강하는 시간을 낭비케한 문제점들을 들수 있다.

2) 신년에는 전문분야별로 세미나 형식의 연수제도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설계전문가는 설계세미나에, 구조전문가는 구조세미나에, 설비전문가는 설비세미나 시간에 각기 분야별 세미나에 참석하여 자기가 필요로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상호 축적된 경험의 지식을 토론을 통하여 교환하는 장소를 만들어 줌으로써 흥미를 갖고 연수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외국의 유명대학에서 박사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상당한 실무 경험을 쌓고 귀국, 개업한 분이나 국내에서도 전공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연수방법을 강의식에서 세미나식으로 전환·개선하고 ACAE 총회와 학생 잡버리를 준비코자 하는바 회원과 사무처의 협조가 있어야……

李 榮 —
理事 · 研修委員會委員長

계신분들도 계시며 대학에서 정교수를 역임하고 정년퇴임후 개업하신분도 계시다. 연령분포도 30대에서 70대에 이르며 사회적 경험과 높은 경륜을 가진 회원들도 계시다. 이분들이 전공한 분야의 강의를 수강케 하기보다는 세미나에 참여, 상호 지식을 교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이다.

3) 연간세미나 시간표를 연초(3월경)에 발표하여 회원이 편리한 시간에 참석토록 하고자 한다. 행정적으로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행하여 보고자 한다.

4) 보조사와 보조원들의 교육방법은 금년도에 계속 연구 하겠다. 예산과 시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계속 연구과제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국제회의를 준비하겠다.

88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기로 한 아카시아 총회시 동시에 개최되는 ACAE (Asian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총회와 학생잡버리를 준비하겠다.

이상 말씀드린 신년도 계획은 연수위원회의 힘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으며 여러 회원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계기관의 지도편달과 육성정책이 합하여져야 처음 시행코자하는 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부탁드립니다.」

工事監理業務의 當爲性

監理란 무엇인가?

그 업무내용은 무엇이고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건축사 當然업무 중 한분야인 監理業務領域에 대한

政府 일각에서의 斜視眼的 見解를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 日時 : 1987년 2월 3일
- 場所 : 本協會 會議室
- 建築學會
이광로/대한건축학회 회장
한정섭/한국대학교건축과 교수
신현식/중앙대학교건축공학과 교수
- 建築家協會
유희준/한국건축가협회 회장
김정철/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 建築士協會 會長團
안기태/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기수/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 本協會 歷代會長
장기인/삼성건축사사무소
강봉진/건축사사무소 국보건축
한창진/한정종합건축사사무소
이규복/신성건축사사무소
김두섭/건축사사무소 국동건축
구윤희/화신종합건축사사무소
김지태/삼아건축사사무소
오웅석/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 本協會 理事
강기세/종합건축사사무소 (주)법건축
이문우/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이영일/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本協會 서울지부
유경철/서울특별시지부장
우남용/서울특별시지부 간사
- 本協會 會員
신무성/(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김희춘/(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
이해성/(주)이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승우/(주)종합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수/(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
이명환/종합건축사사무소 동명건축
한용섭/한종합건축사사무소
윤승중/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강석원/건축사사무소 그룹가
한종언/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조재원/(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석철/종합건축사사무소 아카반
김지덕/유신건축사사무소

建築士의 當然業務중 한 분야인 監理業務의 責任限界는 어디 까지이고 앞으로의 監理業務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안기태 :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자리에는 이광로 대한건축학회 회장님과 한국건축가협회의 유희준 회장님, 3단체의 역대 회장님 그리고 원로 회원님들과 동료 회원 여러분께서 배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간에 경제기획원에서는 건설공사

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동기는 지난번 독립기념관 화재 사고로 인한 것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정부측에서는 무언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지에서 건설공사 합리화 방안을 경제기획원을 통해 연구 착수하게된 것입니다. 건설공사는 각 분야가 있겠지만 문제는 그 속에 우리

건축사에게 직접관련이 있는 건축분야도 상당히 포함되므로 이 기회에 관련단체의 회장님과 본 협회 역대회장님, 동료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하는 뜻에서 모신것입니다. 최근들어 정부에서는 각 분야의 고도 성장에 따라서 건축 설계분야에 있어서도 무역자율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설계 분야를 맡고



이광로

한정섭

있는 우리 건축사들의 자질도 향상되어야 하겠고 사무소도 좀더 대형화 되어서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 체계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외국에서 우수한 설계용역 업체가 국내로 진출할 것을 예견해서 우리는 좀더 강력한 체제를 갖추어 대응도 해야겠지만 역으로 해외로도 진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심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건축 문화적 측면으로 보아서도 용납이 될 수 없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만은 큰 그룹급 회사의 일부에서는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자회사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설계하겠다고 주장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의 건축계 당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할지 대책을 세워야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당장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90년대의 증반에 가서는 그러한 추세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축사로서 부분적인 업무한계 즉 감리업무의 책임한계등과 앞으로 감리 업무등에 대하여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토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본협회의 대안작성 업무에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만 인사의 말씀을 줄입니다.

김기수 : 본회 상근 부회장 김기수입니다.

회장께서 오늘 간담회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정부와 협의해온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회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띤 대형 건축물을 포함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제도상의 문제점과 시행상에서 발생한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설공사 합리화 방안을 작년 말까지 확정지을 계획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그리고 계약, 감리, 감독 및 건물의 유지관리등 전체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보다 더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건설부, 과기처 그리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많은 의견과 자료도 제시 했었는데 협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이 확정에 대하여 시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협의 또는 의견 제시를 해야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토론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집약된 고견을 정리하여 이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建築主가 建築士를 雇用, 設計와 工事監理를 自体遂行토록 하고 建築士나 관련분야 技術士를 雇用한 監理專門業체를 設立, 監理業務를 專門으로 遂行시키려는 것이 政府가 구상하는 案중 하나이다.

강기세 : 제가 본 협회 이사자격으로서 그동안 경제기획원 회의와 건설부의 정책심의 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 배포해 드린 자료에 주요 사항이 요약되어 있지만 서술된 내용 이면의 사항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회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정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합리화 방안중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꼭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포해드린 자료에 설명이 있지만 현재 내재된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사항과 저희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이자리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공사감리의 시행 과정에서 조사, 설계, 감리, 감독의 개념이 불분명해서 어떤 사항이 감리이고 감독인가, 그리고 당해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등에 대한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인가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추진해온 사항 중에서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임원진들이 경제기획원과의 회의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강력히 주장도 했었습니다만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본 협회 강기세 이사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단계 조치와 2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계 조치로서는 국내건축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2단계 조치로는 무역개방 정책의 일환으로 설계와



신현식



김정철

공사감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문호개방을 하겠다는 안을 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2단계 조치중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건축사를 고용해서 건축주(공사발주처)가 고용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와 공사감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1단계 조치에서는 감리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설립해서 건축사나 관련 분야의 기술사를 고용해서 감리를 전문으로 하겠다 함으로서 전문화된 동업체가 외국에서 국내무대에 진출할 상황에 대응하고, 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요점적인 의도 사항 입니다. 1단계 조치중 제일 문제시된 사항은 설계와 공사감리의 구분에 있어서 정부나 공공단체에서는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분리할 수 있다고 의도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설명이 있지만 저희 협회에서는 감리 과정을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구분을 했던 것이고 설계감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설계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고 또한 저희 건축사들이 건축사 사무소를 대형화해서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장기인 : 그러면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일체성에 관한 사항중 설계자가 공사감리 업무를 행하는데 있어서 그 당위성과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승우 : 이 문제는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 당연한 사항이 아닐까요? 설계자가 공사감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있어 일본이나 미국도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줄로 아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분리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건축문화와 후배 건축사를 위해서도 어느 면으로 보나 부적합한 것이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성 : 설계와 공사감리 문제에 있어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측면을 약간 달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설계가 종료되었다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면이 완성되었다 해서 설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일본의 경우에는 설계감리라 해서 아무리 설계를 잘했다더라도 탁상위의 도면 완성으로는 설계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하는 전제하에서 공사도중 변경 또는 조정해야 할 사항까지도 수정하여 결국은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건축설계가 종료되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절대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Project Management라 해서 A라는 설계업체가 설계한 것은 B라는 회사가 공사감리를 하는 예는 간혹 있기는 하지만 설계와 공사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식 : 외국의 경우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AIA에 관련된 문헌에서 본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건축주가 설계와 공사계약을 한후 PCM에 있어 설계자가 감리를 하게되어 있으나 건축주가 공사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설계자가 관여하지 않은 시공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못전달 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한정섭 :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를 파헤쳐서 결론을 효율적으로 유추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건축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설계를 하고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사감리 업무를 기술사나 기타 건설기술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관련분야 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부터 확실하 해야 할 것이고 다음에는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설계자가 감리공사를 해야 하는데 있어서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타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행하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장기인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시공 회사에도 건축사는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건축사법에 건축설계 행위는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만이 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방해서 건축시험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라도 건축설계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과 이에 부수되어 토목대지는 타 건설기술 분야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당해분야에 설계와

공사감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기세 :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회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 그리고 설계감리와 시공감리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감리의 내용에 대해서인데 시공감리 즉 Quality Control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번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사가 공사감리라는 포괄적 업무의 전부를 다룰 것인가 혹은 일부를 다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것입니다. 건축사법상 공사감리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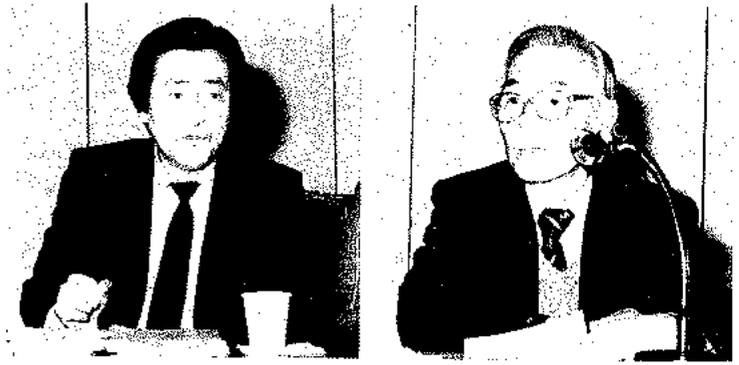
監督官은 予算執行과 建築的인 立場에서의 監督事項과 承認事項을, 技術的인 工事監理事項은 建築士로서 設計者나 施工監督者가 遂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명환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공감리라는 것을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실지 체험해 보았는데 고충도 많았습니다. 그때 官하교의 시공감리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겪어 보았습니다. 물론 시청의 한 공무원이 감독관으로 나와 있었는데 건축설계 권한을 갖는 건축사는 소정의 기술적직 기간을 갖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면허 시험을 거쳐 합격한 공인된 자인데 건축사라는 면허를 받기까지는 건축기술 지식도 뛰어나야 하지만 특히 건축법규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리자와 감독관의 위치 상관관계를 짚어 볼 때 감독관도 건축법령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겠지만 법령의 해석과 설계자의 의도가 현장에서 기술지도적 측면에서 전개되도록 하기위해서 동시에 기술지도 즉 설계의 전개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감독관이나 아까 말씀대로

내용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를 확인하고 시공자를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안에 시공상의 정확도와 설계업무의 연장된 의미로서의 감리업무 내용이 모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업무의 내용과 책임한계를 규정하는데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사가 아닌 타 법령에 의한 기술자라면 설계감리 또는 시공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독관은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예산집행과 건축적인 입장에서 감독사항, 승인사항 등을 관장하고, 기술적인 공사감리 사항은 건축사로서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인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설계와 공사감리의 일체성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건축사가 모든 건축물의 설계를 하고 당해 건축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집약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의제로 넘어가서 만약에 건축사가 공사감리 업무를 분리수행하는 문제에 있어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분리한다면 그



안기태

장기인

방안은 어떤것이 있겠는지와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 그 문제에 대하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과 당면한 문제점을 과감히 노출시켜 놓고 협의해 나가야 좋은 안으로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토목설계 용역과 건축설계 용역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사무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토목설계 용역회사가 9개가 되고 자본금은 10억 이상입니다. 지금 토목설계 용역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당면한 문제는 우리와 같습니다. 제가 정부 당국자와 협의는 안해 보았을지라도 제가 알기에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동기가 독립기념관 화재사고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전 쯤에는 총 공사비 몇백억에 상당하는 건축공사가 별로 없었는데 사회가 점점 발달하고 경제적 여건이 향상됨에 따라 정부나 민간발주 공사가 점점 더 대형화되는 필연적인 추세에 있습니다만 외국의 경우를 잠시 소개 말씀 드리면 중동지역 건설공사시 미국의 벤틀회사가 설계한 것을 프랑스의 콘설턴트에서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는 설계자가 감리를 하기도 합니다만 외국의 경우나 국내의 경우를 비교해볼 때 차이점은 바로 계약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많은 건축사님들이 참석해 계시지만



한상진



구윤희

민간발주 공사나 관공사시 설계용역 발주처와 계약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모두 읽어 보거나 숙지하고 계약서에 날인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절대 그러하지 않습니다. 건축주나 시공자나 설계자나 고문변호사까지 두고 계약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대형화 되기전 과거에 우리나라의 건축풍토를 돌이켜 볼때 공사감리라는 용어가 나오기전에는 설계자는 설계만 해주고 정부 관청에서 기사, 기좌, 기정이 공사감독을 하고 공사감리에 준하는 임무를 다했습니다만 점점 대형화되다 보니까 공무원의 기술도 부족한 데다가 공무원 인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문제점에 부딪쳐 결국은 민간쪽으로 돌리어야 했던 이유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토목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문제는 공사감리 사항중 만약 시공감리 까지도 모든 것을 민간 용역업체에 맡기겠다는 문제가 발생 하였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본 1억밖에 없는 용역회사에 공사비 100억에 해당하는 용역을 주고 시공도중 하자가 생겼을때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는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외국에는 건설공사만 보증해주는 보증보험 전담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보증보험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준비단계적인 여건의 미숙으로 보증을 잘 안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도 바로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건축, 토목 건설시공회사 뿐만 아니라 건축사

사무소의 대형화를 제시하고 있는 요인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시공감리 까지도 계약을 하고 설계비보다도 많이 받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측과 공사감리비에 대한 협의에 있어서 시공감리 사항까지도 책임을 지고 하겠는데 상주감리를 해야하므로 상주공사감리시 공사시작 단계에서 부터 토목, 전기, 기계분야등 보조원이 필요하므로 전체소요 인원을 계상해서 감리비를 계산했었는데 계산된 금액을 건축사 보수기준에 적용시킬데가 없어서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협의를 보았습니다만 결국 문제는 책임소재 문제에 봉착되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자가 어디까지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해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안기태 : 오늘 협의하는 사항 즉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일체성, 공사감리 업무시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분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에

AIA規約을 보면 工事監督官(CMA)은 建築主가 要求時 設計者가 추천해 주게 되어 있으며 그러더라도 施工上の 質的 責任은 施工者가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승우 : 미국의 AIA Document에 보면 설계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CMA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뜻풀이로 보면 우리나라의 공사 감독관에 해당하지요. 즉 건축주가

대한 논의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에 깊이 빠져들어 우리가 대책을 강구 하고자하는 방향이 잘못될까 우려하여 본 협회 강기세 이시계서 설계감리와 시공감리에 대한 용어정의와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그와 관련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참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기세 : 저희가 감리라고 하는 업무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현재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의 정의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 확인하는 업무로 포괄적 의미로 기술되어 있어 서술된 정의를 분석한바 설계의 연장된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자를 시켜서 시공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 즉 시공감리의 두가지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회의 분과 위원회에서도 협의했었고 원로 선배 회원님과의 협의회에서도 논의해서 나름대로 협회의 안을 작성해서 경제기획원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경제기획원의 실무 연구진이 작성한 지르에도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분류되어 있어서 저희의 뜻을 강경하게 피력했었는데 건설부측의 의견은 전혀 달랐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현행법상 공사감리 업무 내용에 있어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절대로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요구하면 설계자가 추천해서 CMA를 추천해주고 그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AIA Document의 어느 조항을 보아도



김지태

오용석

시공의 질 확보는 시공자가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설계자가 공사의 질에 대하여도 책임진다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설계상의 오류가 있을시에는 예외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시공감리 사항을 시공감독으로 규정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AIA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도 일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의 업무영역 침해에 대해 논의가 있었듯이 이것을 시공감리라고 규정해 놓으면 점점 우리의 업무영역이 침식당하는 경우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장기인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리라는 문제가 저희 건축시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제기 되었던 사항입니다. 초기에는 건축설계를 하여 허가를 득한후 법적으로 위법시공된 곳이 있으나 없느냐에 대해서만 주로 확인하였고 건축주나 허가권자도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았었는데 공사가 대형화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공의 질을 확보하는 측면에까지 문제가 되었는데 공사감리에 있어서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섭 :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건축사에게만 있는 것인가이고 시공문제에 대해서는 설계감리와 시공감리의 공사감독 하고 나누어서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환 : 아까부터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애매하여 구분이 잘 안되고 있는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공사감리라는 것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진행하는 설계와 관련된 업무라고 보고 그 안에서 설계자가 당해 공사에 있어서 설계도서의 보완, 해석하는 업무가 설계감리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감리는 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서 위에 현장에 일어나는 건축기술적 사항을 설계자적 입장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관이라는 것은 정부공사에 있어 예산회계법상 일종의 예산집행관으로 문자 그대로 정부예산이 건축공사에 있어 적재적소에 활용되고 있는가를 확인 감독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공사에서 감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민간 공사시에는 관공서의 감독관 비슷한 현장대리인이 있습니다.

김지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 건설부에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작성할 당시에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그때에도 감리와 감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명환씨 말씀대로 설계감리라는 것은 삭가의 설계의도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고, 시공감리는 공사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좀더 발전시켜서 시공의 질을 확보하고 시공과정을 지도하며, 감사하는 내용의 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감독의 업무내용은 기술관리, 자재관리, 노무관리등 5가지의 업무 영역이 있듯이 각종 관리 업무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사의 기술적인 공사감리 업무와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의 업무 영역이 좀

확대되어서 혼선이 됩니다만 엄연히 구분은 있는 것입니다.

한용섭 : 김지태 전회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대한건축학회에서 용역을 받아 건설부에서 제정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준칙에도 분명히 공사감리자라고 나와 있지, 감독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자가 반드시 감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AIA 규정에도 보면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를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를 연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점에서 볼때 취약점이 많은 건축사 사무소도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사무소는 설계만 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무소에는 감리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정부의 협의과정에서 AIA규정에도 예가 있으므로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최선의 방안은 설계자가 할 수 있는 소위 기술감리에 해당하는 설계감리, 그 다음에 시공감리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공감리라는 것은 어떤 자본주가 투자를 해서 순전히 Quality Control 만을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굳이 건축사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인 :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김기재



이명일

분리하는 문제에 있어 대형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의

분리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시공기술사의 업무기능

監理業務나 設計業務는 建築士의 當然業務領域임을 전제로 하고 細都工事時에는 關聯分野의 技術士를 동원, 또는 고용, 建築士의 責任아래 이루어지도록 制度化하면 問題는 없을 것이다.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위 건축사가 아니고 타 법령에 의한 기술사도 공사감리 업무에 가담할 수 있는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준 : 의제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대규모 공사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소화할 수 있는 준비단계는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준비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건축공사의 감리시에는 설계자가 직접 감리하는 경우는 극히 적고 대개가 감독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설계자가 감리하는 경우는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시공 도중 크고 작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아까도 시공감리, 설계 감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감리업무 내용을 구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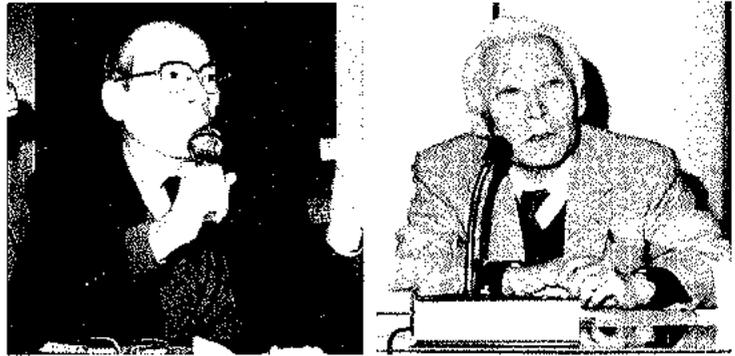
필요없이 감리업무 하나, 설계업무 하나로 해서 오로지 건축사의 고유업무 영역임은 불변하고 세부 공사시에는 관련분야의 기술사 즉 토질 기술사, 안전관리 기술사 등을 동원 또는 고용 시켜서 모든 감리업무의 내용은 설계를 실시했던 건축사를 감리자로하여 건축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제도화되면 별로 문제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성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좀더 근본적인 데에서부터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평소 느끼고 있으시겠지만 우리 건축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일부터 이야기된 사항이지만 정부 기구에 우리의 주인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독립기념관 사건 말씀이 있었지만 사건의 내용을 깊이 분석해 볼때 그 건축사만이 고충을 당해야만 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라하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권한도 없고 의무만 지워져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책임을 져라 하는 것은 어딘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건축사를 비롯하여 특급 기술자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에 있어서도 기술사는 과기처에 속해 있고 건축사는 건설부에 속해있고 해서 같은 건설분야를 다루는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의 체제가 잘못잡혀져 있어 통일성이 결여된 때문이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것에 연연해서는 아니될 것이고 우리 건축사 협회의 전화원만이라도 뜻을 모아 단합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인 :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남은 의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감리전문 업체를 신설하는 문제에 있어 기술인력 활용을 위하여 민간감리 전문업체에 의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존용역업체의 시공감리 범위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지? 또 하나 공사감리와 공사감독에 있어 업무범위를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와 그리고 시공감리를 위한 건축사 사무소 감리요원 구성 및 책임한계에 있어 감리업무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있었고 다 일리있는 의견인줄 압니다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건축설계업무라는 것이 건축주로부터 발주되는 것이고 건축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쳐게 되겠습니다. 최근들어 건축물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설계에 있어 작품의 창의성과 그에 따르는 기술적 뒷받침이 조화되어야겠는데 어떤 경우에는 창의성보다 기술적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감리라는 문제를 부각시켜 이야기하다 보니까 감리라는 특별한 분야가 설계와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착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신무성

김희순

같이서 우리가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건축물을 창조하기 까지는 설계과정과 시공과정이 수반되는데 물론 설계 과정 속에 감리라는 과정이 속해져 있는 것이지만 구분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인 : 감리는 설계의 연장업무이므로 설계의 의도를 전달해서 설계의 의도대로 시공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감리업무인데 공사가 점점 대형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감리

업무만을 전문업으로 해서 공사감리 업무를 좀 더 확실하게 해보자는 데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으면 면허제도라는 것이 필요없습니다. 건축과 출신 아무에게나 경륜만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시공기술 면하는 시공 회사에서만 활용토록 하고 만일에 감리에 관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 건축사 면허자로만 구성된 감리전문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해서 그 밑에 전기, 기계 등의 엔지니어도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법제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 대신 설계자의 권한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최종적으로 현장의 총체적인 기술적 책임자는 설계자이므로 설계자의 의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는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가 아이디어를 창안 했더라도 설계자의 동의없이 절대 변경하지 못하는 선진 외국과 같은 체제로 제도화 된다면 우리가 동의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의 분리 문제라든가 감리전문업체의 신설을 어떻게 해 나가겠는가 또 공사감리와 공사감독 업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施工技術者란 施工会社の 施工을 위해서 免許를 준 것이며 따라서 필요하다고 수시로 設計와 監理도 하고 監督도 하게 한다면 免許制度라는 것은 필요없는 것이다.

이영일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대하여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설계자가 감리를 할 때도 있고 설계자가 감리 회사를 별도로 지명해서 시행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음니다만 그래도 별도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Sharp Drawing에 대한 최종 동의권은 설계자에게 있고 자재를 일일이 검수는 안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시공재의 색상 등을 설계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시공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임받은 감독자라고 해도 업무의 한계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쳐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필히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90년대 중반 정도에는 국내건설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체들이 국내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서 국내 업체의 대비체제를 정비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우리도 그때에

가서 외국의 업체에 대응하려면 지금 보다는 한단계 차원을 높여서 준비 체제를 갖추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를 잘 연구해야겠는데 외국의 기업체는 전문감리 용역회사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체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설계자의 의도는 어떤 경우에서나 존중되어야 하겠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만 정부측에서의 큰 고충은 현 건축사사무소의 체제로서는 감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줄 것은 넘겨 주더라도 설계자의 창작의도는 절대로 지키는 범위내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감리용역 업체에 대해서인데요, 저의 생각은 기술사들이 감독을 할 수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면허제도 자체는 어떠한 한계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공기술자라는 것은 시공회사의 시공을 위해서 면허를 준 것이지만 어떤 감독 기능을 위한 면허제도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시로 설계와 감리도 하고 감독한다 할 것

그리고 감독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음니다만 저는 감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감독자가 감리자의 위에 서서 감리자의 의도도 무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에게 넘겨지는 설계와 감리 체제에 있어서는 설계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감독자는 설계자가 의도하는 범위내에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물을 준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심부름꾼 정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성



이승우

한창진 : 건축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의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업무의 연장선상의 감리,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표의 제11조(공사감리)의 각 항에 규정되어 있고 또하나 시공업무상으로 볼 때에 감독이라는 것이 따로 있겠으나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공사감독까지를 다 넘겨 준다면 우리가 별도의 감독팀을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보수기준 제11조에 보면 공사감리지 소위 설계자가 설계의 연장된 의미로서의 감리업무가 6개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업무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업무임은 당연하겠고 제11조 제1항 제4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건축주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건축사가 공사감리도중 설계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변경설계 도서 및 변경공사 시방서를 작성하고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3항에 보면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주의 요구가 있거나 공사성질 및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는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상주 감리 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모두 설계업무의 연장된 의미로서의 공사감리이고 엄밀히 말씀드리어서 시공감리라고 하는 사항은 시공상의 공사감독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공사감독까지의 책임관계까지를 우리 건축사가 진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야기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부터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이 보수기준표에도 감리업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필요하다면 제11조에 모자라는 부분을 더 보완해 주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거론의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민간감리 전문업체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공사감독 기구로서는 이러한 민간단체는 얼마든지 생겨나도 좋다고 봅니다. 일례로 건축주와 계약하여 우리가 설계의 연장 의미로서의 감리를 하는 중에 시공의 감독까지를 의뢰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민간감리 전문업체와 협동체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인 :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사실 감리업무를 따로 부각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별개 업무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사실상 감독업무를 따로

設計는 어디까지나 建築士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監理라고 하는 것은 設計過程 業務의 延長으로서 당연히 建築士가 맡아서 해야 할 業務이다.

오웅석 : 장회장님께서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사항용 구체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감리업무와 동격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리 문제를 굳이 의논한다는 자체 부터가 좀 착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유도 과정에 우리가 빠져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규정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독 업무시 공사 시공자를 어떻게 지도해 나가느냐는 걸로 따로 규정해 놓으면 공개적으로 시공기술사를 고용하더라도 그리고 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생겨나더라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꾸 감리라는 용어로 떼어 붙이니까 우리 건축사의 업무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응섭 : 한창진 전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건설부에서 제정하고 '85년 2월27일 개정하여 협회에 송부한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보면 공사감리의 업무 내용과 감독관의 업무내용이 분명히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 즉 공사행정 관리 또는 시공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감리자는 자기가 설계한 설계내용이 그대로 지켜지는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 보면 공사감리자와 감독관의 중복 업무가 있는데 건축주 측에서 감리자에게 감독업무까지를 위임하면 감독관의 업무까지 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건축사법에 규정돼 있듯이 건축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라고 하는것은 설계과정 업무의 연장으로서 당연히 건축사가 맡아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단, 사회에서 생각할 때 감리라고 하는 것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이상수

이명환

엄연히 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경우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도 설계의 연장이므로 공시시방을 통한 공시지도상에서의 책임은 포함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절대로 건축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진영을 보장한다는 것은 발주자 측에서 별도로 해야 할 문제이며 마땅히 시공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감리 업무와 동격에서 분리업무로 해야 한다고 거론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기태 : 그 동안의 경위를 경제기획원 당국과 다섯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또 건의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했는데 그때 회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참석한 분이 부회장, 장기세 이사, 이문우 이사, 안장원 이사, 사무처장 이렇게 참석 하였습니다. 협의과정에서 느낀 점이나 요구사항 등 그 동안의 경위를 부회장께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말씀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 그간에 회의를 참석하며 정부 측의 생각 및 문제점 등 이것만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관 화재가 왜 발생했느냐 이것이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도 감리자가 있었고 설계자가 있었고 감독관이 있었고 시공자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모든 것을 구분하여 책임짓는 한계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 감독관을 예산회계법상 문제뿐만 아니라 시방서 내용도 책임 한계에 들어갑니다. 본 계약 내용을 보면 시방서대로 시공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엄연히 감독관이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이것을 제도화하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책임한계가 무엇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 회의 자료의 6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자란 도대체 무엇이나? 현행법상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의 여부 확인 또 시행령에 보면 “일반감리”와 “상주감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성 대형 건축물인 경우 정부가 어느정도 관여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리라 하는 것은 개념이 무엇이고 업무내용이 무엇이고 그 업무내용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는냐?

이것을 지금 경제기획원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라든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등 모든 것을 경제기획원에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 협회가 건축사가 고유권한을 지켜 나아갈 수 있고 건축사로서 감리체제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를 제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회의자료에서 제시된 내용도 바로 이겁니다. 과연 공사감리는 전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냐? 그 다음에 감리를 제대로 개념화시킨다면 설계감리와 시공감리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닦쳐오는 개방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입장에서 기술용역 업체와 예술성을 전제로한 건축사 업무 이것을 복합해서 내형 전문업체를 육성시켜서 90년대 이후에는 개방정책에

따라 밀려 들어오는 외국산업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에서도 우리에게 물어 오기를 이러한 문제점이 왜 발생하느냐? 현행제도가 잘못됐다면 제대로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 로비 활동을 했던 간에 경제기획원에서 사실상 계획안이 나왔습니다만 유보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여러 건축계의 원로를 모신 가운데서 의견을 수합하여 그 자료를 토대로 경제기획원이나 건설부, 과기처 그리고 관련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때 발표하고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집약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 토론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자료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갖는 과정에서 최후까지 문제됐던 것들만 추려놓은 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웅석 : 감리업무를 설계자가 하는 바탕에서 만약 감독기능까지를 발주자가 원한다면 감리지 밑에 조건 여하에 따라서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이 감리자의 책임이다. 감리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한 사고가 난 것이다.” 이것은 감리자를 어떠한 조직상의 책임을 주었으며 그에 합당한 비용을 주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책임하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건축사인 권한을 감리자에게 주었다면 즉 그 체제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한용섭

김기수

주었다면 절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감리체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리자를 어떻게 발주자가 대접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느냐 하는 그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정부와의 협의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화재 사건이 난 것은 기술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을 것이므로 그렇다면 기술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면 기술자 면허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등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에 편승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각기 면허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미연에 방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동적의 문제로 다루어지면 안되겠다고만 말씀드리고 지금 사항은 말씀 못드렸는데 감독기능을 발주자 밑에 둘 수도 있다 하면 반드시 감리자

책임은 조직상의 권한과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별도의 감리 회사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는 건축사의 책임하에 따로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그런 설계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러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는 감리의 경우 법정감리다 해서 도장만 찍고 책임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리는 누가 하느냐 이것은 발주자측 감독관이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상화한다면 지금 새로운 법이다, 새로운 체제다 하는 것이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모든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정상화해서 운영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을 고쳐서라도 감리자의 도장없이는 기성고 지급이 안되는 그러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감리자는 언제고 책임있게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수 : 건축사들은 법의 보호를 어느 정도 받아서 종합이 아니더라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업을 할 수 있게끔 법적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체에 등록되어 있는 토목의 용역업체는 물론 전문과 종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자본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한국기술개발공단 조직이 하나의 토목기술자의 노후의 대책으로서 법인체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단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가 하면 순수 감리용역 업체입니다. 토목회사에서 설계한 것을 감리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감리와 감독을 혼동을 일으키는데 계약 조문을 보면 감리계약서이지 감독 계약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엄연히 감독과 감리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또는 현재로서 중요한 기로에 서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서는 정부 의도는 상당히 굳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에서 설계자와 설계감리 시공감리라 해도 좋고 공사감리라해도 좋고 이 3단계를 본다면 설계자가 설계감리를 한다는 것은 설계의 연장이라 해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주장해야 하겠다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설계감리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시공은 시공감리에다 주고 설계자는 설계만 해라 그렇게 해놓고 건축물이 준공이 되어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이것을 무상처리 할런지도 알수가 없고 또 설계감리를 함에 있어서 일반 감리라면

監理者의 도장없이는 기성고 지급이 안되는 정도의 權限을 부여한다면 監理者는 언제고 책임있게 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로 : 저는 건축설계라 하는 것은 도면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완성시킬때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설계와 감리를 나누어서 이에 대한 토론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건물이 대형화되고 여러가지 면에서 이러한 직무를 전문화 시키는 마당에 있어서도 건축문화를 창달시키려는 건축사가

주가 되어 그밑에서 여러가지 필요한 기술자가 동원이 되어야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감리를 함에 있어서도 시공자가 협조를 안하는 문제도 따지고 보면 건축주가 요구하는대로 협의가 되어야 겠지만 기성고 지급문제에 있어서도 시공자측에 비추어 본다면 감리를 하는 건축사에게 자꾸 책임만 물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모르지만 상주감리를 하면 현행 감리비로는 타산이 안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무를 함에 있어 상당한 고충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모두 맡고 있습니다. 감리업무 규정을 보면 용역비는 얼마받지도 못하면서 자재분석까지도 모두 하계급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설계자가 반드시 설계의 연장선에서 현장에 상주를 하지않고 순회를 하더라도 설계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문화해서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이점이 아닌가 생각하며 그 다음에 시공감리라 하는 것은 대형 회사가 해도 좋겠지만 거기에도 조분에 설계회사가 시공감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면 용역을 주게하고 인정이 안되면 반드시 설계감리자의 승인하에 타 감리자에게 줄수 있다고 규정만 한다면 우리들로서는 대성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할 것은 시공감리자는 건축사가 돼야될 것이나, 건축시공 기술사도 될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건축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명문화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야 건축사 노후 대책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외하고 싶습니다.

장기인 :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수용해 주면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할것은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해야겠다는 것은 나쁜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감인줄 압니다. 다만 여기서 오늘 이 과제만 놓고 얘기를 했는데 이외에도 여러분이 제도적인 문제서부터 항상 생각을 하셔서 좋은 대책이라든가 방안등이 있으면 항상 조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윤희 : 제가 보기에 조금 납득안가는 것이 몇가지가 있는 것은 과연



과기처에서 지금 기술사들이 건축사 업무인 감리업무를 하겠다는 것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대 건설회사가 용역업체를 각자가 신설해서 소위 국제시대에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볼때는 단순히 기술사 회측에서 기술사들이 살아 나가기 위해서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확실한 기간의 아시는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말하자면 기술사들이 감리업무나 용역업체를 대형화 시켜서 동 업무를 하겠다 하는 문제만이 제기된 것이나 아니면 소위 재벌이라 정하는 10대 건설업체가 용역업체까지 맡겠다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기태 : 재벌 대기업에서 설계 사무실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은 과거에도 많이해 왔고 현재 많이 시정되 왔습니다만 대기업에서 설계에 참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정부의 경제 입국이라는 측면에서 건설시공은 외국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설계분야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때 하나의 육성책으로써 큰 기업에 맡겨서 설계사무실을 운영하면 기술도 고도화 됨은 물론 외국과의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거론 되었던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발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급급한 나머지 제기된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바로 정착되는 사항이 아니라 90년대 중반쯤가면 그때 문호개방 정책에 따른 국내사회 변천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나온 것이지 곧 닥뜨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이자리 에서는 그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도 그러한 문제에 직접 부탁드리면 아주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혀 두겠습니다. 앞으로의 자주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방침을 세우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책임지고 일을 맡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취지하에 오늘 이 자리는 여러 건축분야에 고견을 듣고자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기인 :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건축사 협회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을 자주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회원님 그리고 학회가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과 또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만 끝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 주시고 언제든지 의견 있으신분은 협회 회장님이나 임원진에게 연락주시면 집행부로서 감사히 청취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設計監理分離에 대한 小考

姜 基 世

본협회 법규위원회 위원장(理事)

건축은 원시 시대의 단순한
 원시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포괄한 인류 문화의 중요한 장르를
 형성하고 있으며, 원시시대 이후
 지금까지의 인류가 자랑하는 모든
 건축물들은 그시대를 반영하는 시대의
 산물로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역사성과 시대성에서 지금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건설의 질적문제를 생각해 볼 때,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과연 건설 분야만이 질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어떤 분야의
 질은 매우 우수하고 다른 분야는 그
 정도에 있어 현격히 질이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각 분야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하며 그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그
 사회의 선진화를 대변하는 것이다.
 더우기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서로 연관된 사회에서는 하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말적 원인
 분석과 임시 방편적인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설사 일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또다른 문제가
 파생한다는 것 또한 잘 안다.
 우리에게서는 종합적 차원에서의 문제
 분석과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건축분야의 부실문제가 과연
 한국인의 장인정신에 결함이 있는
 것인가? 건설을 위한 협동체제의
 유기성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경제여건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공업화의 성숙도가 낮기 때문인가?

하지만 이런 의문에 앞서 이 분야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질을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건축물이란 기술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그것의 질이 우수하고 문화적
 가치를 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건축물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건축이 문화의
 뚜렷한 장르를 차지한다는 문화사적
 가치에 있어서는 예술적인 측면이
 중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은
 인간의 작은 두뇌에서 창조된 공간의
 형성체이기에 더욱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설계를 하더라도 백이면 백사람이 각기
 다른 형태와 특징을 가진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적 건축물에서나 선진국 심지어는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의
 경우에서도 처음 구상자(설계자)의
 의도 존중을 위해 모든 건설분야
 중에서도 특히 건축안은 설계자가
 끝까지 건축물을 주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릿속의 구상이 실물로 구체화되는
 과정은 처음 설계자의 의도나 예술성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히
 설계자를 주축으로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동체제이래 건축주의
 이해와 의지가 뒷받침 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
 체제는 의도의 변질과 일관성 결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의
 또다른 측면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건설 문제가 어디에
 있던 간에 부실공사 방지와 질적

향상도모에 주력하려는 것은 선진화를
 위해 모든 수준을 이끌어 올리려는 이
 시점에서 볼 때 무척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며 차체에 대책 시안에 대한
 의문점과 다른 측면의 개선 내용을
 적고자 한다.

1. 전문감리 회사의 신설
 전문감리 회사의 업무 내용은
 어디까지나 건설회사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된 것으로 선진국의 경우 공사의
 질은 시공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설계자는 DESIGN QUALITY를 위하여
 현장에 개입되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건설회사의
 불신과 시공의 감독을 철저히 하지는
 생각에서 별도 전문감리 회사의
 설립이나 기존 설계사무소의
 감리능력보완책 등을 논의하지만 이로
 인하여 설계의 연장업무로서의 감리가
 소홀이 되거나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한계와 책임한계 등으로
 시공편의주의가 나타나, 건설분야중
 건축만이 갖는 섬세성과 감각성이
 결여되고 이는 문화적인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계자가 의무적으로 적극
 참여하여 주관이 된 상태에서 전문감리
 회사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같으며, 한국의 미8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도 설계자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야만 공사도중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인 설계변경,
 수정, 보완 등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나아가서 설계의 기술축적이
 현장을 통해 이루어져 국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시안에서,
 시공과정에서의 설계자의 역할은

설계자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은, 어떠한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나 자문이란 표현은, 별도의 감리자가 임의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설계변경등의 업무가 저작권적 측면에서 불매 성립될 수 없음을 부인하고 싶다. 따라서 설계자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설계 감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감리자의 책임과 권한

어떤 행위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또는 누구누구가 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본래 건축이란 출발부터 완공까지 발상, 타당성, 검토, 마스터 플랜, 설계, 감리, 시공 등의 업무와 참여자로서 설계자, 감리자 일반 건설업자, 전문 건설업자, 자재 생산자, 기기제작자등 여러 분야의 직종이 합쳐 이루어지는 것이며 부실의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가 관련되어지는 건설분야인 것이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을 경우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제재조치로서 그의 업체등록 및 기술자 자격취소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마치 학생이 잘못된 행위로 인해 선생님이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논리와 다를 바 없으며 만약 감리자가 책임을 질 정도의 큰 부실공사라면 이에 관련된 모든 회사 또는 자격소지자를 동시에 같은 제재를 가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벌칙위주의 사회가 된다면 아무도 이에 종사하려는 마음과 업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없어지므로 선진국에서와 같이 보험제도를 개발하여 모든 위험을 보험으로 대처하고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보험료의 증대, 신용의 하락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3. 건축사와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사는 예술과 기술을 바탕으로 공간을 창조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취득시 건축시공 기술사보다 건축에 관한 관계법규 및 설계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건축분야의 설계와 감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각국이 동일된 것이다. 건축시공 기술사는 낱말 그대로 건축에 관하여 공사의 질을 확보하면서 설계내용을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책임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시공을 반드시 시공기술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양자의 관계는 전문회사 대형화 추세와 건축에서는 부부와 같은 존재로 상호 보완 되고 있는 실정이나 어디까지나 업무취급 범위와 장르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부에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여 시공기술사 주도의 감리방안은 건축공사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성격상 분석하면 모순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설계를 제작한 건축사와 감리를 하는 시공기술사 그리고 건설회사측의 시공기술사들 간에 특히 감리 입장의 시공기술사와 건설을 하는 시공기술사 간에 건설기술적 측면이나 도면이해 능력의 자격면에서 동일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능력 면에서 시공기술사가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 하겠다.

이러한 면으로 볼 때 감리의 기능은 감시기능 만으로 전락할 위험이 내포되고 있다. 또한 설계도면의 이해면에서도 설계자가 건설회사측의 시공기술사와 직접대화 하여야 착오가 발생하지 않으며 올바른 전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설계의 보완 발전 수정등을 설계자가 이행하다 보면 감리의 시공기술사는 감시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고려할 때 현재 건설회사의 시공기술사가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감리자로서 시공기술사가 상주할 정도로 인력이 있다면 당연히 건설회사측의 현장 관리자로 우선적으로 중당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감리자는 건축사가 주관이 되고 시공자는 시공기술사가 주관이 되어 상호간에 건물규모에 알맞는 조직을 갖고 각자의 본분을 충실히 한다면 양질의 건물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결 언

건설공사 부실대책중 여러 측면이 있으나 다른 각도에서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건축주의 의지가 투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주관의 건설공사는 건설주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가 주인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건설장소에 모든 이용자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이들의 신원을 표시한다면 장기적으로 부실제거의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된다.

2. 건축공사에 한하여는 저작권의 배경을 활용하면서 인간이 자기 자식을 키우듯 설계자의 정신적 창조물인 좋은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심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설계자가 감리 과정에서 반드시 주도적으로 참여되어야 한다.

3. 건설의 공법개발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인간의 심성은 성급함과 편의주의를 선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인정신이 결여되어가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공장 생산으로 기계화, 자동화, 능률화된 제품들이 현장에서 조립되고 시공되므로써 기능공이 없이도 중장비와 일반 인력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술개발과 생산업체의 제품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기술 및 공법 개발특허와 수의계약의 특전부여등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4.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또한가지 방법은 현재까지 기술자의 개인 능력과 구두로써 행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감리하는 요령과, 문서로 이루어지는 책임 감리제를 활용하는등 어떠한 기술자가 감리하여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함으로써 통일된 기술개발과 기술축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런 상황이 정착된다면 시공감리 없이 시공자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신용사회가 될 것이다.

끝으로 시행착오 없는 시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를 실감하고 있는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건축이라는 예술(I)

■
Theme Essay
Truth in Architectural
by An, Byung-Ui

빈 다방에 들어서면 누구든 앉을만한 곳을 찾아 잠시 눈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마땅한 자리를 잡는다. 이런 자리는 오래 벽을 한쪽에 낀 구석진 자리거나 큼직한 잎이 날개를 펴고 있는 보기좋은 「몬스테」 밑이라든가, 큰 어항이 놓여 있는 옆자리 따위이다. 분명한 것은 누구든 다방의 한복판, 소란스러운 곳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다.

레스토랑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식당의 모든 좌석이 저마다 특색있도록 꾸민다. 손님들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아백크들은 덕수궁 담을 끼고 돌아가는 호젓한 길을 흔히 찾는다. 이렇듯 우리들은 아늑한 곳, 즐거운 곳, 호젓한 곳을 좋아하는데 바로 이런 곳이 人間的인 空間이기 때문이다. 건축이란 바로 이런 공간을 말한다.

이밖에도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많다. 아름다운 것, 인식을 주는 것, 이상한 것, 멋있는 것, 최상의 것, 감동을 주는 것, 에레гант한 것, 신비스러운 것, 장관, 움직이는 것, 드라마틱한 것, 따위. 이런 것들이 건축이다.

학자들은 정의를 내리고 분류하기를 좋아하지만 건축이란 무엇이나, 건물이나 구조물과 건축을 평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고 정의내리려면 잠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름다운 것 하기에는 부족하고 차라리 멋있는 것이 좀 가깝겠으나 시원치 않고 인간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구조물하면 범위가 넓어 그렇듯 하지만 예를들어 아늑한 주택은 좋은 건축이지만 별로 큰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다. 왕창 범위를 넓혀 인간적인 것 하면 한정이 없는 것 같아 定義도 뭣도 아니다.

건축이란 무엇이나 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쓰는 것이 이 원고의 목적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고 차라리 교수들에게 물어보든가 學士論文이나 살펴 보는 것이 나올 듯 하다.

세월에 따라 건축의 개념은 많이 달라져 왔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 굳이 정의짓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건축디자인 하는데 이런 정의는 조금도 소용되지 않는다. 예술이란 학설이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먼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과 가장 가까운 예술을 든다면 조각이겠다. 조각은 작가의 의지가 形態로 빚어진 것이고 건축은 그 기능이 작가의 의지를 통해 형태로 빚어진 것이다. 근본적인 차이는 건축은 기능이라는 형태도 없는 구축이 강한 요소를 건축가가 어떻게 소화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기능이라는 주어진 숙명의 본질을 깊이 파악하는 작업부터 건축디자인은 시작된다. 화기는 물체나 경치를 그릴 때 우선 그 대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표현한다.

건축디자인도 이와 같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건축은 조각처럼 조형의 예술이며 걸작이라고 불리우는 작품은 모두 멋이 있어 우리들은 성급하게도 그 기능의 본질을 파악할 생각을 제쳐 놓고 멋있는 조형부터 찾는다.

건축이란 무엇이나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쓰는 것이 이 원고의 목적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고 차라리 교수들에게 물어보든가 學士論文이나 살펴보는 것이 나올 듯하다.

세월에 따라 건축의 개념은 많이 달라져 왔고,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 굳이 정의짓는 것도 무리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건축디자인하는데 이런 정의는 조금도 소용되지 않는다.

自己執着이 강한 작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로 평면의 기능을 몰아부치고 顯示慾이 강한 작가는 남들이 놀랄만한 기발한 조형을 찾아서 기능을 그 속에 쑤서 넣는다.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대상의 본질을 느끼고 꿰뚫어 보는 화가의 자세를 우리들 건축가는 배워야 한다. 새로운 조형이 해답이 아니다. 機能의 本質을 찾아 이것을 조화있게 꾸밀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좋은 건축작품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꾸며진 조형은 기능의 虐殺에 지나지 않는다. 건축의 아름다움이란 어떤 틀에 맞추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참다운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이다. 조개나 소라의 형태는 더없이 아름답지만, 그것은 그 기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 붐비지 않는 넓직한 공간에 아름답게 꾸며진 진열장과 조명, 더러 작은 연못과 싱그러운 화초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휴식 스페이스, 이러한 백화점이라면 쇼핑하는 즐거움이 있으리라. 백화점이란 즉 쇼핑하는 즐거움을 주는 곳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가슴이 설레이는 기쁨이다. 더욱이 항공편일 때는, 맞이하는 기쁨, 떠나 보내는 아쉬움, 재회를 기약하면서 나누는 한잔의 술, 오손도손 나누는 그칠 줄 모르는 대화. 이러한 분위기를 담으려면 어떠한 공간이 어울릴까. 이것이 공항의 본질이다. 이로 사리넨은 이 해답을 케네디 공항에서 보여 주었다. 박쥐가 날개를 펼친 듯한 조형으로 감싸인 공간이다. 직선이라고는 비스듬히 서 있는 거대한 유리창 뿐, 내부 공간은 철저히 곡선과 곡면으로 마감 재료 또한 그지없이 단순하고 소박하다.

진찰, 입원, 관리. 이것이 병원의 3대 기능이다. 병원은 이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족하지는 않다. 병원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다. 환자로서의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도 그렇거니와 병원의 깨끗하고 차가운 분위기, 약 냄새도 싫다. 환자의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고 불안한 마음을 되찾아 주는 것, 이것 또한 병원이라는 기능이 안고 있는 본질이다.

어느 작가의 작품인지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그는 대기실, 진료실 등에 햇빛과 푸르름이 가득한 中庭을 군데군데 배치하여 환자에게 위안을 준다. 매우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란 말에서 생각나는 것은 「알발·알토」이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핀랜드」의 작가의 어느 건물 主入口에는 손잡이가 높은 곳과 낮은 곳에 각각 따로 붙어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높은 곳은 어른들 用이고, 낮은 곳은 어린이들을 위한 손잡이다. 「알발·알토」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 소박한 재료의 쓰임새, 친절한 디테일, 결코 웅장하지 않고, 척하지 않는 조형, 그러면서 역매이지 않는 평면구성이다. 아마도 가장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작가가 아닐까. 호텔은 여러가지 기능을 가진다. 여행을 떠나 의지해 묵으면서도 가정에 있는 듯한 아늑함과 보살핌이 요구되면서 한편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하는 화려함과 즐거운 분위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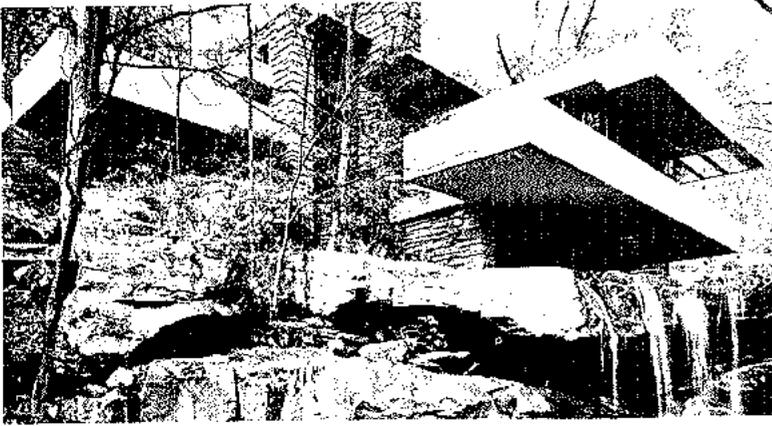
Alvar Aalto

호텔의 본질이다. 손님이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그 호텔은 실패작이다. 호텔에 묵고 있는 동안 날마다의 생활이 곧 작은 드라마의 연출인 그러한 공간이어야 한다. 대개의 건축은 그 기능에 따라 그 조형이 결정되므로 오피스 빌딩들은 모두 엇비슷하고 백화점끼리 또한 비슷한 모양을 가진다. 별로 움직이지 않는 見類는 서로 비슷하고, 빨리 달리는 魚族들은 자기들끼리 비슷하고, 하늘을 날으는 鳥類 또한 그렇고, 숲 속에 사는 네발짐승끼리 비슷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住宅은? 주택만큼 모양이 서로 다른 건축도 없다. 대개의 건축이 여러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그 최소공배수를 만족시키면 되지만 주택은 그 가족만을 위한 것이고, 또 대지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일까. 그 중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주택 몇개를 살펴보자.

「미스·환델·로」의 황스와즈邸는 마치 숲속에 놓여진 콕직한 유리상자 같다. 모든 조잡한 재료와 디테일을 버리고, 가장 순수한 형태로 빚어진 공간이다. 둘러싼 우거진 숲이 곧 벽으로 자연 속에 주거공간을 한정지은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가 주거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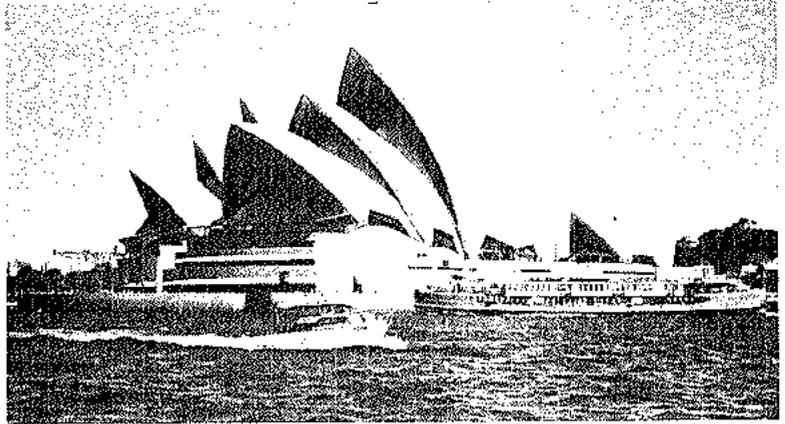
브라질에 있는 「오스카·니마이어」의 자택은 바다와 숲을 잇는 접점이다. 바다를 보고 싶고, 숲도 버릴 수 없어 양쪽을 유리로 감싸고 아름다운 곡선의 슬라브 지붕을 덮은 매우 자유스러운 흐르는 듯한 평면구성이다.



▲라이트의 「낙수장」



▲오스카니미요



웃꼰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

한편 「라이트」의落水莊은 흐르는 계곡의 물과 숲속에 어울리는 매우 다이내믹한 조형으로 자연속에 주거공간을 강하게 한정짓는다. 세 건축가 모두 자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공통된 것은 뚜렷한 개성이며, 바로 건축이다. 애당초 대개의 건축은 땅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놓여지는 주위환경과 끊어질 수 없는 연관을 맺는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상대로 생각해 왔으나 동양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자연의 일부이며, 그 속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 또한 자연속에 다소곳하게 자리 잡았다. 많은 고찰들이 그 자태를 뽐내지 않으며 산 속에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놓여 있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웃꼰」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였다. 그의 스케치에 의하면 바다에 떠 있는 하얀 돛을 단 요트의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이야기이다.

오페라 하우스의 기능으로는 비모진 건물이든 돔이든 피라밋이든 안될 것은 조금도 없다. 단지 항구의 한 모퉁이라는 환경조건에 요트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 이 건축을 불후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여기까지 쓴 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건축이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기능만이 아니라 그 기능에 선행되는 그 본질,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꿰뚫어 보고 이것을 건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결과 빛어진 조형이 참다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다.

또한 건축이 놓여지는 환경에 대한 작가의 이미지 사고가 건축을 결정짓는 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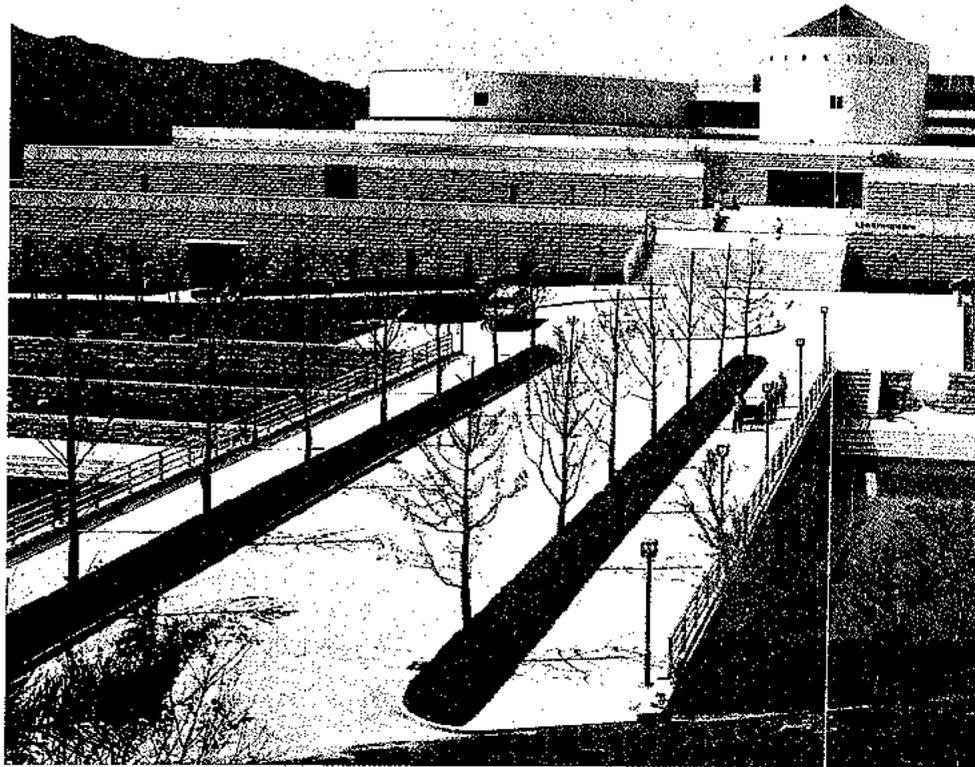
이 원고를 쓰는 계기가 되어 오랫동안 건축이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요새에 더러 눈에 띄는 아마 「벨츄리」의 영향처럼 보이는 재미있는 에레베이션(조형이 아니라 단지 에레베이션)을 가진 건물들이 떠 올랐다. 재미있다고 나는 느낀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보는 동안만 즐거울뿐 극장을 나오자마자 뇌리에서 사라져 버린 오락영화, 한 두어시간 읽을 동안 재미있고 책뚜껑을 덮으면 아무런 느낌도 안남은 연애소설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것들은 예술이 아니라고 잘라서 말할만큼 오만불손하지는 않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므로 그런대로 존재가치가 있다. 어느 것이 참다운 것인가 하는 것은 오직 역사가 판단해 줄 것이다.

다만 「벨츄리」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이 있다(얼마나 오래 갈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수십년 전에 보았지만 아직도 생각나는 영화, 몇번씩이나 되풀이해 읽었던 不朽의 문학작품, 나도 모르게 도취되는 선글, 이런 것들과 견줄 수 있는 건축이야말로 진짜가 아닐까. 건축이란 무엇인가. 나에게 힘에 겨운 과제였지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도시, 예술이란 편견의 소산이다 라고 자위하면서 다음에 계속해서 건축의 본질을 찾아 어프로우치 해 나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 즉 이성에 의한 길과 감성에 의한 길을 펼쳐보기로 한다.

傳統性的 實相과 虛像

국립현대미술관을 돌아보고...

■
Architectural Criticism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by An, Young-B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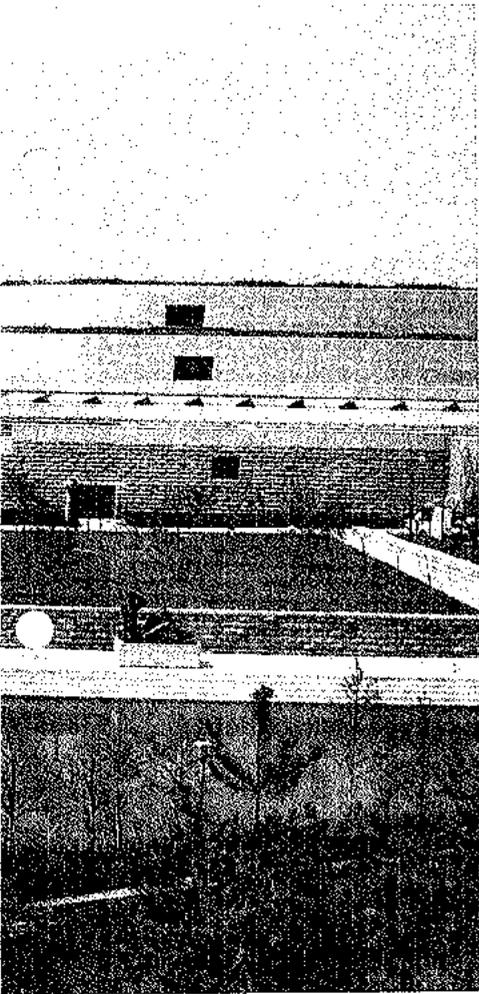


1. 前言

최근에 준공된 과천의 현대미술관에 대한 건축비평을 처음으로 청탁을 받은 것은 지난 9월 초순경 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건축작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서 나도 언제인가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바쁜 것을 이유로 일단 사절 하였었다. 건축작품을 비평하려면 건축사와 건축이론에 밝아야 하는 것은 물론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나 자신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비평이란 아무리 박식한 지식과 냉철한 이성적 사고에 의거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항상 문제점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김 태수씨의 작품에 대한 기대가 커서 과천의 현대 미술관을 하루라도 빨리 가 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Hartford에 있는 그의 스튜디오에 들러서 그의 작품들을 보아 왔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는 있으나 거의가 다 소규모 작품들이어서 큰 건물에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 되었을까 하는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지난83년 여름 그를 만났을때 서울로 부터 새로 짓게 될 미술관의 계획안을 제시해 보라는 의뢰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격려한 바도 있어서 더욱 기대 되기도 했다. 마침 학생들에게 미술관 설계과제를 내준 것을 계기로 미술관 견학도 시킬겸 과천에 다녀오게 되었다. 본 미술관을 둘러보고 난 후의 소감은 비록 몇가지 면에서는 나의 의견과 상치되는 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때 우수한 작품으로 보여져 대단히 기뻐다. 최근에는 기념적인 공공 건축물이 새로 세워질때 마다 지나치게 전통 의식이나 과욕에 사로잡힌 과장된 건물에 대해 자주 염증을 느껴온 나는 본 미술관을 둘러보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을가미에서 탈피하여 차분하고 진실한

안영배 /
서울시립대학건축공학과 교수



◀ 현대미술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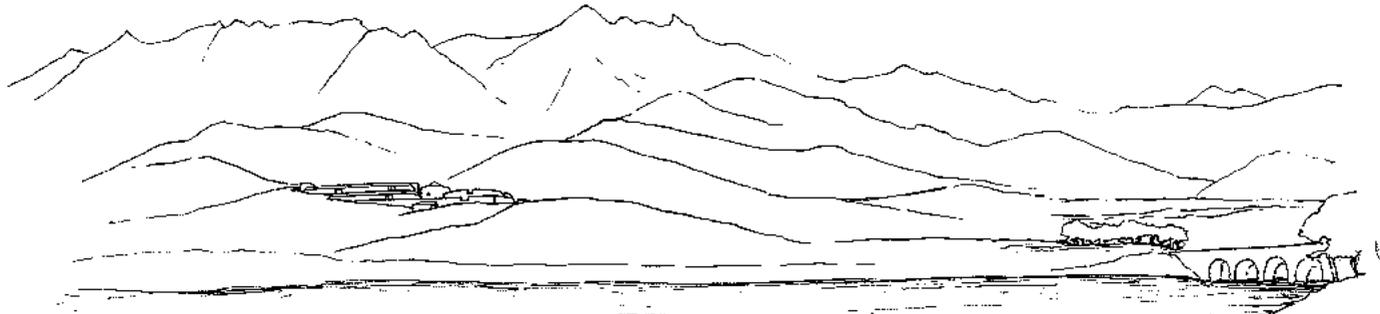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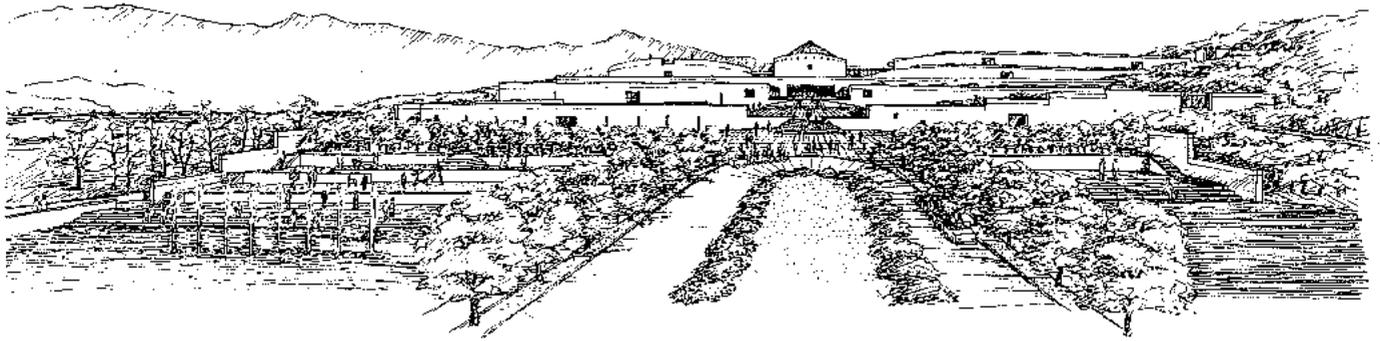
작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구나 하고 보여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발주 측의 요구가 강한 반면 건축가들은 마치 시녀처럼 무기력해 지기가 쉬워서 작가의 의도를 제대로 펴 나가기가 대단히 힘들다. 그러한 힘든 여건들을 무난히 극복하고 작가의 설계의도를 잘 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작가의 개인적인 능력에도 기인하겠지만 우리나라 정부관서에서도 건축가의 의도를 존중할 수 있는 면이 배제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져서 더욱 반가웠고 크게 희망적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건축가들도 작가의 소신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후 얼마후에 “건축과 환경” 86년 9월호에 본 미술관에 대한 작품사진과 함께 논평이 크게 게재되었다. 건물준공과 함께 이렇게 재빨리 논평이 이루어진 것에 감탄했고 건축비평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미술관은 작품에 대한 논의를 떠나는데 있어서 확실히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전통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엿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통건축에 대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나로서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어떤 충동을 느꼈다. 그러던 차에 두번째 원고 청탁을 받은 것을 기회로 여기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글은 작품에 대한 비평이라기 보다는 본 미술관과 연관하여 전통성에 대한 나의 소감의 일단을 피력해 본 것이다.

2. 傳統性 具現

우리나라에서는 기념적인 공공건축물이 계획될 때마다 전통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지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것 같다. 경복궁안의 국립박물관의 경우가 가장 심했으며 독립기념관의 경우도 그러했다. 또한 지방 문화회관 건물의 콤포에서는 지붕형태를 변형시킨 계획안들이 의례히 당선되곤 하였다. 부산 시민회관과 군산 시민회관 그리고 김 중업씨의 진주 시민회관 등이 바로 그 좋은 실례들이다. 건축에 있어서 전통적 요소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 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피상적 요소들에 의해 민족성이나 자주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편협한 국수주의적 사고에서 기인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전통건축 속에 내재해 있는 선조들의 건축 의도나 감성적 요소들을 추구하여 이것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서 앞으로의 건축작업에 있어서 창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것이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성의 추구는 어디까지나 창작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전통성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본 현대미술관 계획에서도 한국의 전통성을 높이도록 하는 요구가 크게 작용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현대미술관의 기본개념이 우리나라의 산성이나 산지 사찰등의 이미지에서 비롯 되었다고 하는 설계자의 변에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원통형의 구성이 봉수대를 연상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전통성을 인식케 하는데 매우 효과가 컸다. 그러나 큰 벽면의 구성은 한국의 산성이라기 보다는 서양의 고성이라 할 수 있겠고 기하학적 구성도 한국적 이라기

보다는 서구적이라 할 수 있다. 형태상으로는 산 언덕에 지어진 성곽으로서 France의 Carcassone 城이나 Syria의 Krah 城 그리고 영국의 Windsor 城 등을 연상케 했다. 그렇다고 한국의 전통성이 도외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통적 요소는 형태의 유사성에서도 찾을 수도 있으나 오히려 형태가 지니는 내재적 질서 의식이나 감각적 표현에서 찾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현대 미술관은 비록 형태는 서구적이라 하더라도 서구의 고성에 내재하고 있는 웅장하고 과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온화하고 유연한 한국적인 감성과 표현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넓은 돌벽면에는 구조적 표현이나 아무런 장식 없이 단순한 돌 패턴만이 단조롭게 반복되고 있어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으나 한편으로는 순진하고 소박한 이러한 표현에서 한국의 백지에서 느낄 수 있는 단순성과 담백성 까지도 느끼게 하기도 한다. 건물의 규모도 만약 평이면 결코 작은 건물은 아닌데도 규모가 큰 건물에서 흔히 느끼는 위압감이 적으며 매쓰나 외부 공간들을 작게 분할하여 친근감을 주도록 노력한 점이 많이 엿보인다. 중심축선에 따른 점진적 진입 방식이나 낮은 벽에 의한 공간의 분절 그리고 적절한 크기의 외부 공간들이 한국의 고대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접근 개념이나 스케일 감각과 매우 유사하다. 내부공간에 있어서도 공간의 스케일이나 비례는 전반적으로 볼때 우리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다. 이와같이 형태와 공간의 스케일이나 기본 개념에서 얼마나 한국적 전통성이 깃들여져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내재요소가 그 자체에서 유사성을 추구하려는 외형적 요소 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설계자가 본 미술관의 기본 구상에서 한국의 산성과 봉수대를 생각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김 란기씨는 크게 의문을 제기하였다(건축과 환경 86년 9월호),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성이나 봉수대라고 하는 이미지는 핵연구소나 군사기밀을



▲초기안 스케치

유지해야 하는 건물이라면 몰라도 미술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제기는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는 이에 대한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당이면 부채나 갓을 생각해야 하고 핵연구소 라면 산성이나 봉화대를 생각해야만 하는가 라는 점이다. 金壽根씨의 잠실 체육관이나 종합 운동장의 아이디어가 고려자기에서 비롯 되었다고 하였을 때도 고려자기가 체육관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논박했던 기억이 난다. 형태상에서는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건축에 관한 한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의 버전 곡선이 기와지붕의 추녀곡선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조형감각은 고려자기의 부드러운 곡선에서 시작하여 옷깃의 곡선, 그리고 건축의 추녀곡선에 이르기까지 연관성이 매우 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듯이 산 언덕에 지어지는 미술관 이라면 산성이나 봉수대를 연상해 보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나타난 형태상의 유사성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조형감각이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일이다. 작가(金泰修)는 비단 현대 미술관 뿐 아니라 Hartford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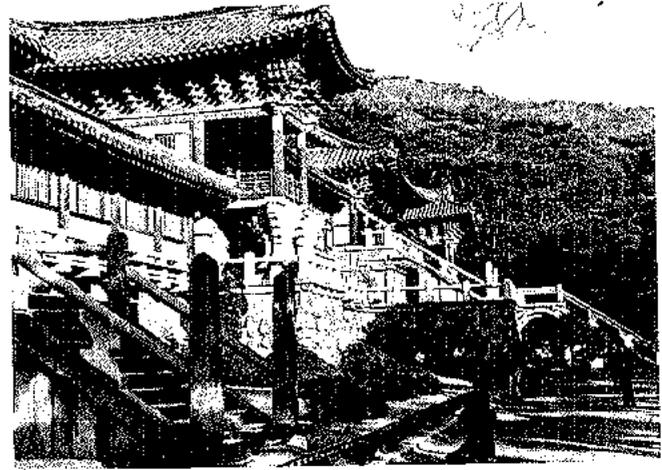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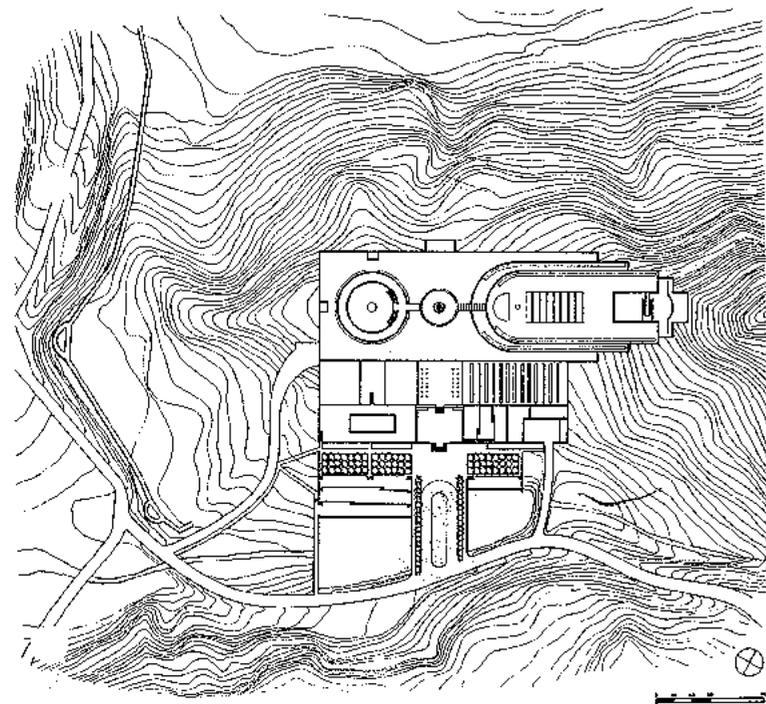
작품에서는 그의 차분한 성격과 진중한 작품의도를 통해 능히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 표현이 강하게 노출되거나 과장된 건축을 바라보는 풍토에서의 시달림이 적었던 것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대공원의 주 진입로에 면해 있는 대식당 건물을 지나가면 멀리 산 언덕 위에 세워진 본 미술관 건물이 보인다. 수평으로 길게 뻗친 중첩된 벽면과 두 개의 크고 작은 원통벽 그리고 중앙의 높은 원통벽에는 원추형 지붕으로 덮혀져 있는 것이 마치 고성같기도 하고 핵병연구소 같기도 하다. 그러나 어쨌든 이곳에서 보는 건물의 형태만은 아름다웠다. 무엇을 연상하든 간에 처음 본 인상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하다. 구라파의 고성에 가보면 웅장하고 내부는 움푹한 곳이 많으나 우리에게서 고성이라면 움푹하다라기 보다는 낭만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서구의 고성들을 가보는 기회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성들이 결코 움푹한 곳이 아니며 밖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위압적 이라기 보다 오히려 아담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계자가 우리나라 산성을 연상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며 그 발을 들고도 크게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山城이라고 하는 설계 이미지가 일반 사람들을 은연중에 전통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반면에 설계자는 외형상의 전통 개념에서 벗어나 자유스럽게 건축가의 의도를 펼 수 있었다. 즉, 전통성을 일반인에게는 實相으로 보이는 虛像으로 되게끔 생각하지 않았나 하고 보여진다. 이것은 형태의 기호화나 변형으로 전통성을 쉽게 구현하려는 종래의 방법과는 달리 공간 구성이나 감각적 표현등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 전통성을 추구하려는 차원 높은 건축의도로 해석된다.

3. 진입과정과 조형개념

본 미술관에는 공간의 질서를 주기 위하여 직교를 이룬 두 개의 강한 축이 형성되어 있다. 하나는 정면 진입시점 (이하 진입 시점이라 함)과 중앙의 원통을 잇는 진입 축선이며, 또 하나는 원통 좌우에 있는 회화 전시실과 조각 전시실을 잇는 건물축이다. 본 미술관은

이와같이 축성을 강조 함으로써 공간구성이 기념성이 강한 고전주의적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진입축선상에는 물위를 건너가게 되는 다리과 그 좌우에 열쭉처럼 늘어선 가로수, 화려하게 물을 뿜는 분수대, 그리고 두 개의 넓은



▲ 빛 방향의 건물조망이 더욱 아름다운 불국사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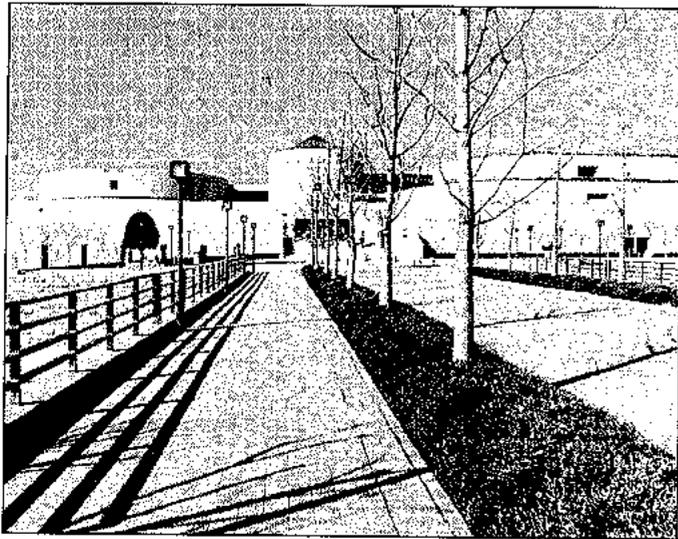
계단으로 구분된 진입광장이 있다. 더우기 두 개의 진입광장은 벽면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중첩된 벽면에 의해 멀리서도 공간이 중첩되어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 변화되는 공간마다의 중심거리는 60m(분수에서 첫번째 진입광장까지의 거리), 그리고 다음은 20m(첫번째와 두번째 진입광장 사이)로 거리가 단축 됨으로서 건물에 다가서는 접근감을 높여주고 있다. 연속성과 중첩성은 공간의 심연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가 큰 건축 수법이며 이러한 실례는 우리나라 산지 사찰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본 미술관의 진입과정이 이와같이 전통건축과 연관성이 인정되는 점이 있는가 하면 또한 상치되는 점이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건축 중의 하나인 불국사의 진입과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불국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본 사찰이 엄격한 고전주의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변지형이 山地라는 점등이 본 미술관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 사찰은 원거리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근거리에서 이르렀을 때 건물의 모습이 크게 빛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조망이 빛 방향인 관계로 건물의 경관은 입체적 구성을 이루어 훨씬 아름답게 보인다. 측면으로 보이는 중첩된 두개의 석교와 높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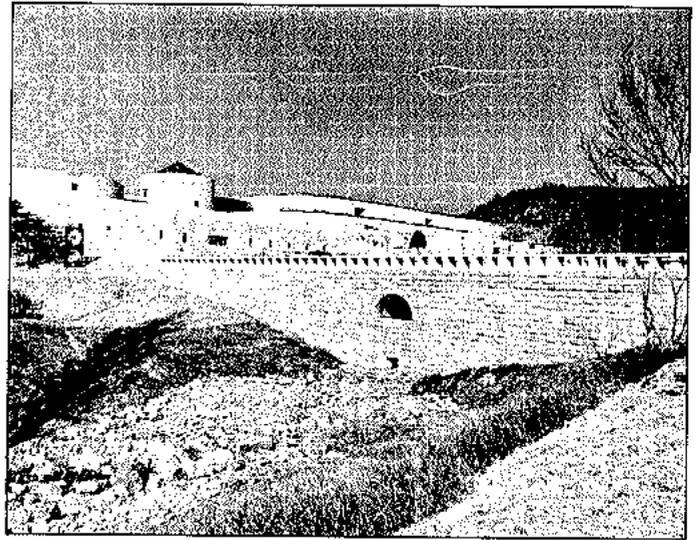
낮은 두개의 층단, 그리고 전면이 나란한 두개의 회랑등에 의해 공간의 중첩성을 실감케 한다. 동시에 후방의 큰 석교에 의해 중축성이 강조되면서 종교의 강한 상징성도 잘 표현하고 있다. 본 사찰의 공간구성이 중축성이 강조된 고전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건물의 조망은 정면에서 시작되지 않고 빛 방향으로 시작하게 함으로서 오히려 강한 중축성을 지각하게 한 점, 그리고 처음에 보는 빛 방향의 조망과 주변을 이동하면서 보이는 다양한 건물조망을 정면 못지 않게 중요시 하였다는 점 등이 불국사를 다시한번 높이 평가하고 싶은 점들이다.

다음은 본 미술관의 진입과정을 살펴 본다. 1984년 여름 김 태수씨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회림의 델피신전의 진입과정을 크게 평가했던 기억이 난다. 본 미술관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 지점은 북쪽방향의 원거리에서 부터이며 언덕밑에 다다르면 한동안 안보이다가 언덕밑을 돌아서 남측전방에 이르렀을 때 건물모습이 크게 다시 나타난다. 델피신전과 너무나 유사하다. 이러한 진입과정과 건물조망은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점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좋은 방식의 하나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거리 에서도 잘 보이도록 산의 능선위에 건물을 배치하거나 건물의

胴体가 산줄기를 뚫고 들어가는 건축조형은 전통 건축과는 너무나 크게 상치되는 점으로서 쉽게 수용되기 힘든 점들이 아닌가 사료된다. 다음은 코끼리차 정류장에서 본 미술관을 향해 진입하는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본 미술관의 주차장은 수용량이 작아서 일반인의 차 진입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도보로 진입하는 것은 그 비중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코끼리 차를 내려 동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차도만 있을뿐 보도가 안보여 잠시 당황하게 된다. 도리없이 차도로 더 걸어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타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 할지 당황하게 만든다. 우측으로 가는것이 주 진입로인 것이 분명한데 좌측으로 가는 길어 지름길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부터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측으로 진입하다 보면 좌측으로 건물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빛 방향의 건물조망이 불국사를 연상케 하기도 하는데 이 지점에서의 건물조망은 정면보다는 훨씬 못해서 정면만을 중요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문 출입을 위한 개구부가 측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며 건물 전방에 보이는 호수를 막은 벽면이 너무 크고 그 밑의 하천이 정리되지 않아 경관을 크게 저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정면 앞에 이르러서도



▲ 인도에서는 가로수에 의해 건물조망이 시각적 장애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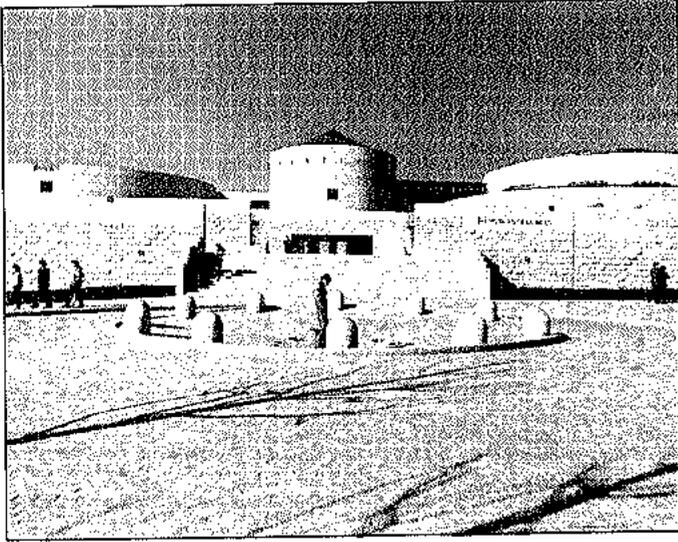


▲ 호수를 막은 벽면구조가 건물에 비해 너무 크고 단조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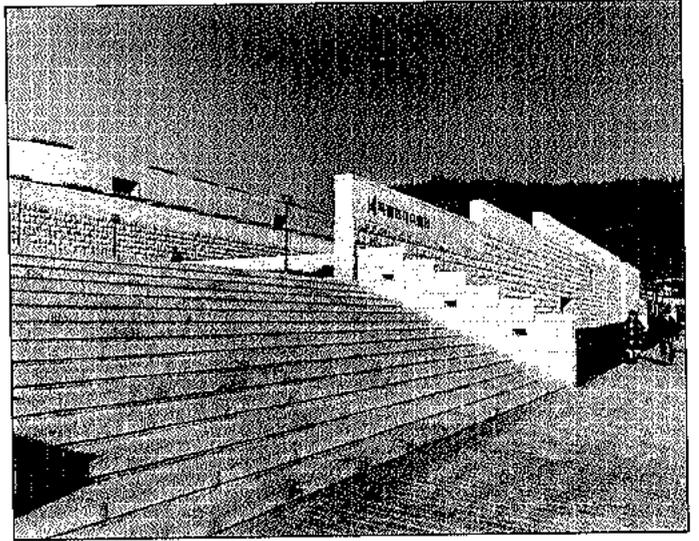
보도에서는 중앙의 차도사이에 있는 가로수에 의해 조망이 장애를 받고 있어서 보행자는 차로 진입하는 사람에 비해 너무도 소외당한 느낌을 갖게 된다. 반면에 차도 한 가운데서 정면으로 바라보면 중앙의 원통벽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건물이 길게 전개되면서 중축선상의 분수와 넓은 계단, 그리고 증첩된 벽면등에 의해 당당하고 깊이있는 건물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조망은 기념성을 크게 의식하고 계획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초기 안 스케치에서도 이러한 작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의도는 西歐에서의 르네상스 양식의 많은 기념적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로마의 성베드로 사원을 비롯하여 빠리의 앙바리드, 워싱턴시의 국회의사당 등이 바로 그 좋은 예들이다. 그런데 중심성을 강조한 尖塔 이라든가 넓고 높은 계단을 설치한 기념적 건축물에서는 어떤 저항감을 배제할 수가 없다. 계단이란 노약자와 신체장애자에게는 참으로 거북한 존재이며 위엄성을 강조하는 건축표현은 일반 시민에게 친밀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에서는 기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건축가와 지식인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권위성이 강조되었던 서구의 고전건축에 대한 흥미가 크게 차지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자주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건축개념은 독립기념관이나 예술의 전당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서울 지방법원 콤플렉스에서 능히 엿볼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20년전의 일이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설계시 원형됨을 강요받고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에게 생생하게 떠오른다. 본 미술관 구성에 있어서도 작가는 위엄성을 강조한 기념 건축물을 바라는 일부 계층에 대하여 타협하려는 태도가 있었지 않았나 보여지기도 한다. 산지에 세워진 사찰로서 진입과정과 공간축의 구성이 뛰어난 구래 화엄사의 예를 또 하나 들어 보기로 한다. 본 사찰의 영역안에는 세계의 주요 구조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대웅전과 각황전 및 언덕위에 세워진 사 사자 석탑이다. 일주문에서 시작되는 진입과정이 대웅전 앞의 주공간에 이르기 까지 이들 세계의 주요 구조물들이 이루는 축선들과 연관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교묘하게 변화되고 있다. 주 공간에 이르러서도 직교를 이루고 있는 두개의 건물 즉 대웅전과 각황전은 대웅전을 보게 되는 지점이 어느 한 건물의 축선과도 일치되지 않는 또 하나의 사선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서서히 주된 건물의 정면으로 다가갈때 비로소 건축물과 진입축이 일치 되면서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공간의 진입은 건축물과는 무관하거나 또는 축선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일치 됨으로서 더욱 다양하고 활기에 찬 공간의 풍요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緊張과 弛緩이 반복되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과도 연관되는 점이라 하겠다. 본 미술관에서의 두개의 주요전시장 즉 회화관과 조각관을 화엄사에서의 대웅전과 각황전이 이루는 구성처럼 완전히 대등시 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보는 위치에 따라 어느 한쪽을 대두 시키면서 그 사이에 있는 제3의 특별 전시장이 조정역할을 하는 이른바 동적균형을 이루는 공간구성을 나는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나라 건축역사를 훑어보면 삼국시대 초기에는 경주의 황룡사 처럼 중앙에 높은 첨탑을 세워 절대적 권위를 상징하는 건축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후 이러한 일탑 중축형은 불국사와 감은사와 같은 이람 중축형으로 변천하면서 양단에서 균형을 이루는 조형 개념으로 변하여 갔다. 그 후 다시 고려조나 조선조 시대에 이르러서는 건축공간의 중축선도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 바뀌어 갔으며 다원적이고 다양한 건축 조형으로



▲ 기념성이 강조된 정면외관



▲ 노약자에게 거부감을 주는 기념적 계단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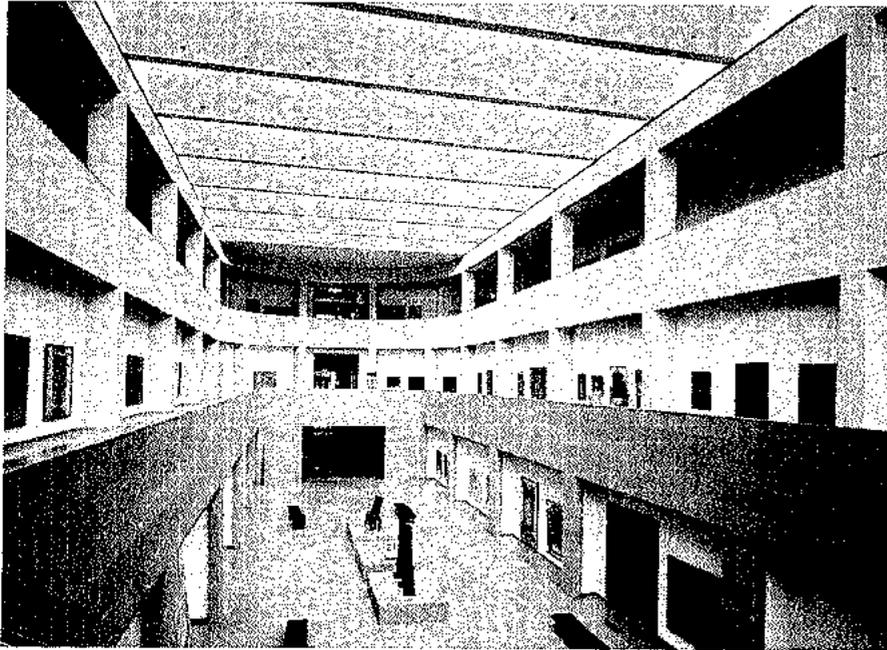
변천해 왔음을 우리는 건축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전통건축을 보는 눈도 어떤 한 시대의 고정된 형태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으로 변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향성을 지니고 아어져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서 생생하게 이어가며 또한 변천해가는 전통을 의식해야 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건축의 진입과정이나 공간구성이 서구의 형식이든 또는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든 어느것이 더 좋고 그러나 하는 것은 쉽게 단정할 일은 아니며 또한 단정될 수도 없다. 또한 건물의 위치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양식을 반드시 중요시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통을 중요시 하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전통에 대한 바른 이해만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될 뿐이다.

4. 對照的인 두개의 展示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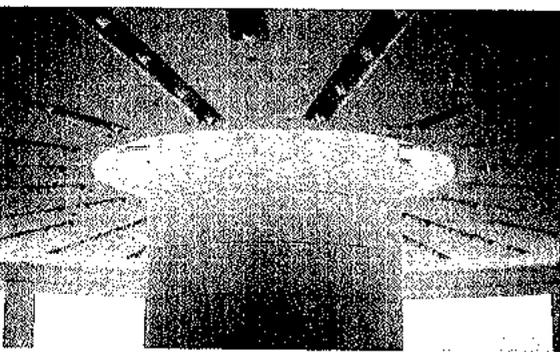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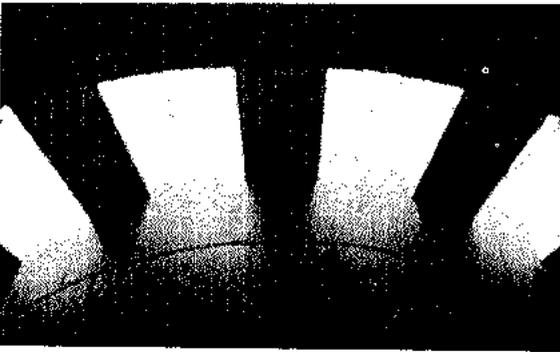
무슨 건물이든 그 건물이 지녀야 할 중요한 기능이 있다. 미술관은 일반 건물에 비하여 기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능적 측면이 소홀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미술관의 여러가지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관람자의 동선과

적절한 전시공간, 채광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본 미술관은 동선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위해 원통코어를 중심으로 좌우에 조각 전시장과 회화 전시장을 배치하였다. 중앙의 원통코어는 상부에 톨라이트가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며 이것이 모든 전시장의 동선을 정리하기 위한 중앙홀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벽면 안쪽으로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곳을 돌면서 올라가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기가 쉽다. 또한 원통 주변에는 작품들을 전시하기에는 애매한 공간들이 둘러 쌓여 있어 이 주변을 둘러보면 미로를 걷어가는 인상을 받는다. 앞으로 이 중앙홀 공간에는 하나의 큰 조각물을 설치하든가 하여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 원통코어 동쪽으로는 회화 전시실이 있으며 규모도 커서 본 미술관에서는 가장 큰 메이저 스페이스 라고 볼 수 있다. 삼층까지 보이드된 이 공간에는 양옆에 늘어선 주열과 상부를 가로지른 질서있는 보들에 의해 신 고전주의적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일층부분을 회염처리된 화강석판으로 마감한 것은 삼층과 구분되어 공간의 안정성을 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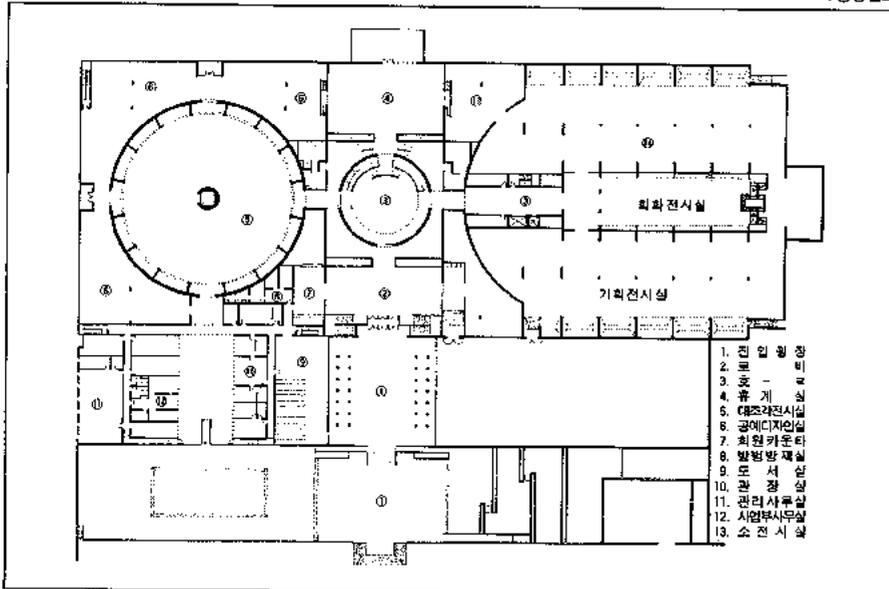
개구부 속의 전시벽면은 회화 작품들을 돋보이게 하는 데 효과가 크다. 중앙홀 주변의 전시실에는 외부의 매스가 스텝다운 되면서 생기는 지붕면으로 부터의 톨라이트가 삼층부터 일층까지 계속되면서 밝게 비추어 주고 있다. 내부의 중앙홀에는 이층과 삼층으로 올라가면서 전시벽면이 후퇴되어 중앙 상부의 톨라이트가 잘 미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삼층 건물에 까지 적절한 자연채광을 도입한 점은 전시장의 채광방식에 새로운 수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의문시 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삼층 전시실을 위해 만여평이나 되는 넓은 대지에서 채광방식에 불리한 삼층 구조로 계획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노출된 천정이나 동쪽의 넓은 유리창으로 부터 시간에 따라서 직사 광선이 투입되어 현회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벽면에 명암의 차를 심하게 하여 작품 감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램프코어 좌측에는 상하층으로 구분된 두 개의 대조적인 원형 조각 전시실이 있다. 상층은 도너스 모양의 円環狀의 전시실로써 중점에 면한 개구부가 많아서 개방적인 공간이요, 하층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부와는 단혀진 폐쇄적 이라고는 하나 직경이 40m나



▲ 신교전주위의 화화전시장



▼ 1층평면도



되는 넓은 공간이어서 답답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넓은 중앙홀에 있는 원통형의 에레베이터 샤프트와 천정의 방사선형의 전등 배치는 나무 형상을 하고 있어서 거목이 서 있는, 외부 공간을 연상케 한다.

원형의 큰 벽면 내부에 면해서 원형으로 열주를 이룬 주열이 원형 공간의 인식을 높여 주고 있으며 벽면사이에 있는 상부의 톱라이트가 벽면과 전시된 조각 작품들을 적절하게 비추어 주고 있다. 천정면은 조명등이 우산살 모양의 방사선으로 배치되어 있고 바닥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들이 자유스럽게 전시되어 있는 것이 낭만적 분위기를 이루게 하여 동쪽의 회화 전시장의 고전적 분위기와는 매우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원형벽 밖의 전시장은 직교를 이룬 벽면과 원형의 벽면에 의해 특색있는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외부로 면한 유리창의 개구부가 공간의 방향 감각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중앙홀에 산발적으로 배치된 조각품들을 빠짐없이 고루 볼 수 있도록 동선이 잘 정리되지 않은 문제점 만은 피할길이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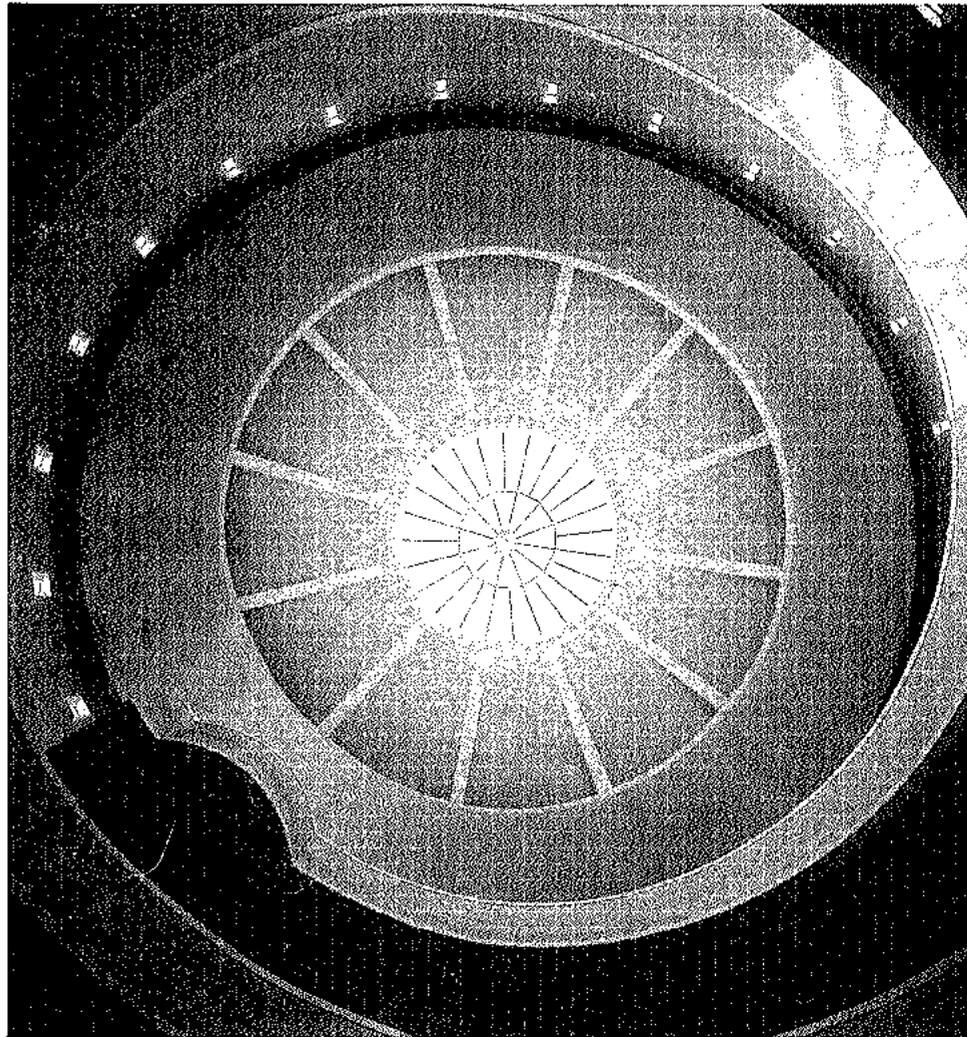
상층의 조각전시실에는 원형을 이룬 외부 중점에 노출된 조각전시실이 있어서 조각품들을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조각 전시실에는 의례히 이러한 외부 중점의 전시장이 있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원형 중점의 옥외 전시장은 너무 규모가 작은 것 같다. 원형벽 외부에도 넓은 옥상이 있어서 여기에 전시될 수 있다고도 하겠으나 이 공간은 넓게 개방되어 있어서 버려진 공간처럼 되어 있으며 작품들을 전시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못하다. 옥외에서 바람도 쏘이며 휴식하면서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중점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본 미술관에는 이 두 개의 주요 전시실 이외에도 또 하나의 큰 전시실이 있다. 주 출입구 로비에서 바로 옆으로 돌아 내려갈 수 있는 특별 전시실이다. 이 전시실은 전체 윤곽이 장방형 상자속에 적절히 파티션에 의해 구분되어 있으며 상부로 부터는 균일하게 톱라이트가 도입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성격하고 무미한 건축공간

이라고도 보겠으나 미술품을 전시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다. 때마침 「프랑스 20세기 미술전」이 열리고 있어 대담하고 화려한 색채들이 공간에 활력을 주고 있었다. 미술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시 공간이다. 명성이 있는 건축가들에 의한 미술관들이 건축 작품으로는 성공하였을 는지는 모르나 미술관 건축으로는 실패하였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개성적인 공간구성이 연속될 경우는 관람자가 지루함을 면하기가 힘들며 위치감각을 상실하기가 쉽다. 본 미술관의 특별 전시장이 그 크기의 한도로서 적절하게 보인다.

이 전시실은 진입 광장에서 넓은 유리창을 통해 그 일부가 보이도록 한 점이 좋았다.

이 전시실에서도 톨라이트에 의한 채광방식은 좋았으나 톨날 모양의 노출된 유리창에서 투입되는 광선을 부드럽게 확산시키는 장치가 없으며 3.8m의 천장 높이는 화면이 균일한 밝기를 줄 수 있는 충분한 높이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상부의 광선을 확산시키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나선형 원형들의 천장

5. 結言

본 미술관을 보고 느껴진 점이 대단히 많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모두 나열하지는 않았다. 하나의 건물을 보는 시각은 모두 같을 수는 없으며 사람에 따라서 얼마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싶다.

본 미술관에 대한 설계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계자인 김 태수씨는 우리나라 건축의 전통성을 구현하려는 의도가 크게 나타나 있다. 수원 산성이나 부석사의 塼들이 눈 앞에 때 올랐다고 하는 점이라든가 진입 개념이나 조경에 대한 설명에서 전통성을 추구하려는 그의 의도와 노력이 뚜렷하게 엿볼 수 있었다. 전통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흔히 시도 해온 형태의 기호화나 변형 (Modification)이 아니라 공간 구성적 측면에서 시도했다고 하는 점이 나의 관심을 높이게 하였다.

본 노고에서는 설계자가 이러한 의도를 건물에 어떻게 표현하였는가에

주목해서 살펴보았고 한편으로는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 건축과 비교해 볼 때는 어떠한 점이 잘 부합되거나 상반되고 있는가를 주로 진입과정과 건물의 형태와 조망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것이다. 여기에 곁들여 기념 건축물이 지니기 쉬운 문제점을 아울러 제기해 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에 관심을 갖고 산지 사찰들을 자주 답사해 온 나는 현대건축을 보는 시각도 전통 건축에서의 개념과 비슷한 견지에서 비교해 보게 되는 습성이 생기게 되었다.

본 미술관을 보는 이러한 시각이 건축 작업을 오랜 동안을 미국에서만 해온 김 태수씨와는 크게 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즉 전통건축에 대한 그의 동경과 의도와는 달리 나에게서는 그의 작품이 대단히 서구적으로 보여진 것이다.

현대 건축에 있어서 지역적인 전통성이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전통성이 요구되거나 전통성을 표방하는 건축이라고 한다면 전통 건축과의 비교 분석에 입각한 논의는 앞으로 지주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 건축에 있어서 西歐의인 개념이나 동양적인 개념은 그 내용에 따라서 얼마라도 혼용할 수도 있다. 국제 시대를 표방하는 현 시대에서 새로운 전통을 창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역적인 종래의 전통성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전통성이란 때로는 실상으로서, 때로는 일반인에게는 실상이라고 보여지는 하나의 허상으로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것이 우리에게 보다 아름답고 보다 적합한가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본 미술관과 같이 건축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좋은 작품들이 속출되어 건축계에 활력을 일으켰으면 한다.

하회. 안동마을을 찾아서

■
Travel Description
Visiting of
Hahoe Andong Village
by Kim, Suk-Chul



안동 臨淸閣

□ 하회마을을 찾아

장호원, 수인보를 지나 조령으로 들어선다. 여기가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다. 높은 산들로 쌓인 분지가 나타난다. 맑게 길을 따라 잔잔히 흐르던 강이 서서히 휘둘기 시작한다. 산 그림자가 돌에 잠기고 구름사이를 산들이 스치어 간다.

문경으로 나온다.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정갈한 도시다. 최근의 번두리스러운 새 건물들만 없었으면 더 맑은 느낌이 들. 산 사이의 도시다. 산 빛깔이 푸른 산림사이로 시커맷다. 흑연, 석탄 빛깔이다. 하회 마을은 풍산면에서 멀리 들어간다. 풍산면 에서도 느끼는 일이지만 국도가 읍 한 가운데를 기로질러 가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공공적 장소들의 자연스러운 배치로 이를 잘 극복해야 할 것이다.

지나는 차들이 마을을 다치게 해서는 곤란하지만 다른 세계들과의 커넥션이 뒤로 밀린 것도 바람직 한 것만은 아니다. 하회마을은 풍산읍 못미쳐서 들판으로 길게 개천을 따라 난 길로 멀리 들어간다. 서울서 부터 계속되던 아스팔트가 흙길로 바뀐다. 약간 덜커덕 거리기는 하지만 길가의 코스모스는 더 청량하고 먼지길 위로 하늘은 높고 푸르다. 어둠이 깔린다. 밤은 이렇게 하늘로 부터가 아니라 땅으로 부터 시작한다. 별판 멀리서 부터 뿌연 안개사이로 어둠이 밀리어 온다. 하회마을에 당도하였을 때는 많이 어두웠다. 가는 길에 이 마을 두 유지가 동승하여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 이미 많이 어두워진 옛 마을을 서둘러 한바퀴 돌아보았다. 민박을 하는 집이 여럿있다. 배가고파 재촉해 저녁을 부탁한다. 반찬이 짜다. 막걸리를 전식으로 두병이나 비우고 평소 반공기만 먹다가 큰 한그릇을 다

먹고나니 배가 불러 숨이 차다. 산책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으나 전기가 없는 마을이라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저 밤이면 자는 수 밖에 없겠다. 방에 돌아와 두 부부가 할 일 없이 막걸리를 마신다. 어둠자 마자 이렇게 방에 들어와 먹고 마시니 편하고 좋기보다 오히려 아쉬운 첫밤이 되었다.

새벽 잠이 깨었다. 이렇게 멀리 시골에 오면 잠이 빨리 깨인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다. 세수를 한다. 물에 체온이 스민다. 오래 양치질을 하고 오랫동안 우물 물맛을 본다. 간단히 아침을 마치고 옛마을 한가운데를 간다. 우리가 머문집도 지은지가 백년이 넘는 집이다. 기와에 청동 받침이 고색스롭다.

마을 한 복판으로 들어선다. 길따라 이리저리 밀리어가는 담들, 청동 빛갈을 한 기와들, 퇴락한 짙은 갈색의 백여년씩 된 목조이 가구들, 감나무들, 마당 이곳저곳의 발들이 아침 안개속에 차츰 모습을 들어낸다. 수백년전 당시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더러 빈집이 있기는 하나 일부 사람이 살고있다. 솥을대문 사이를 지나면 사랑채는 대개 비어있으나 안채 한 구석에 플라스틱 상이 보이고 유치한 빛갈의 가전제품이 눈에 들어온다. 여자들의 파마한 얼굴은 지쳐있다. 남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양반 타령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 나라를 빼앗겼으면 서도 아직 뿌리깊이 남아있는 계급의식의 잔해를 보는 착잡함이 있다. 사진지식이 없어 빙 한번 둘러보고 그 중 제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서너 큰집을 다시보기로 한다. 마을구조는 마을 자체의 기본구조가 몇 대가집 중심의 씨족마을이어서 볼 것이 없다. 사육신 마을인 태고정 같이 한 마을을 이루는 집단형식 대신 족보가 형상원리가 되었다. 이 중 하나의

큰집인 양진당을 먼저 보았다. 고적을 답사하듯 하던 느낌이 문득 가신다. 집이 땅에 깊이 매어 있으면서 주위로 떠 오른다. 긴 행랑채 뒤로 좌측의 안채와 우측의 사랑채가 솥을 대문과 담들과 어울려 한 완전한 형상을 이룬다. 행랑채 솥을 대문을 지나 사랑채에 들어서자 석자쯤 돌기단 위에 사랑채가 우뚝하다. 일자인 행랑채와 미음자의 안채는 서로 이어져 하나가 되고 안채에 붙어 사랑채가 후원측으로 연결되었다. 일자 행랑채가 미음자의 아래가 되어있다. 미음자 우측에 안방과 대청이 있고 좌측은 아마 주로 고방인 듯하고 우측은 부엌이다. 사랑채 뒤 후원의 흰 모밀꽃과 안채 옆 채원의 배추와 무밭은 미소로운 대조를 이룬다. 기와지붕이 많이 갈렸으나 기본 결구는 다 살아있다. 사랑채는 그저 배운데로의 것인데 안채 증정은 놀랍다. 필요한데로 하고 싶은데로 만든것 같기도 하고 엄격한 격식이 있어도 보인다. 책에서 보던 것보다 많이 자유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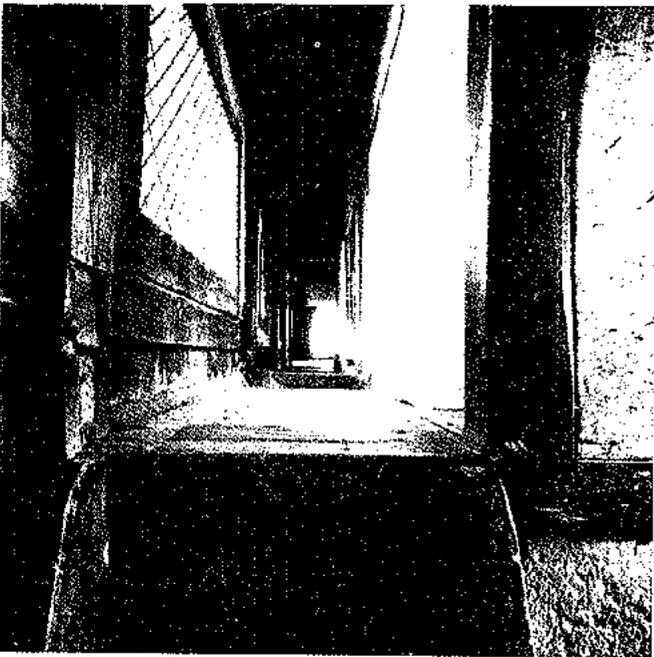
어떤 양식의 세부적 전개보다 자유분방한 부분의 펼침이 눈에 뜨인다.

양진당 건너편의 충효당은 바로 이 풍산류씨의 종가 집인데 충효당은 바로 그 사랑채의 당호다. 여러번 사진에서 본 집이다. 건축형식은 양진당과 비슷하나 입지의 방식이나 외부 공간과의 연계형식이 많이 다르다. 사랑채에 해당하는 충효당은 양진당의 사랑채 보다는 간결하나 좀 더 깊이있는 격식을 갖고 있다. 양진당 사랑채가 전통형식의 반복이라면 이 충효당은 한국 건축특유의 스케일 조작과 시퀀스 변조의 깨달음 있는 펼침이 있다. 다섯단 높이의 대청뒤로 후원으로 열리는 문도 그렇지만 좌측의 두 사랑방의 기묘한 안온함이나 우측 대청이 빗기어 난간이 되면서 생김 방과 마루의 회안한 엇갈림과 열림은 명장의 자유자재한 품격을 느끼게 한다. 안채는 문을 닫아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 사랑채와 안채가 행랑채로 받쳐있는 기본 결구는 비슷하나 무엇이 많이 다르다. 중국인들은 많은 여러가지 격식들을 시도하였으나 우리는 주어진 몇 형식속에 이렇게 많은 가짓수의 새로움을 만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얇은 고답의 경지를 통해 서로 알려지는 것이어서 우리의 전통문화가 그 깊이와 다양성에 비해 덜 평가 받을 수 밖에 없는 연유가 아닌가 느껴진다. 우리는 자금성이나 북경의 주택에 감동하기 보다 여기 이 하회의 집들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야 한다.

또 하나의 대가집인 북촌택을 가본다. 이 집은 형식이 많이 다르다. 행랑채가 담을 겸하고 있고 사랑채와 안채가 미음자 하나로 되어 있다. 바깥 부분인 사랑채는 미음자 아래 가운데의 증문 오른쪽 두 방과 마루로 이루어진 집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증정에 사랑채가 바로 면해 있다. 증문을 지나면 바로 정면 안채다. 안채가 더 높고 당당하다. 목가구의 결구도 사랑채에 비해 장려하다. 섬 돌위의 안채와 다소곳한 사랑채와 좌우의 이어짐에는 파격과 해학이 있다. 안채 안방뒤의 부엌은 사랑채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집을 지었던 당시 이 류씨의 집안의 권력구조가 아마 마님 책임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다.

안동 臨淸閣





안동 森城金氏宗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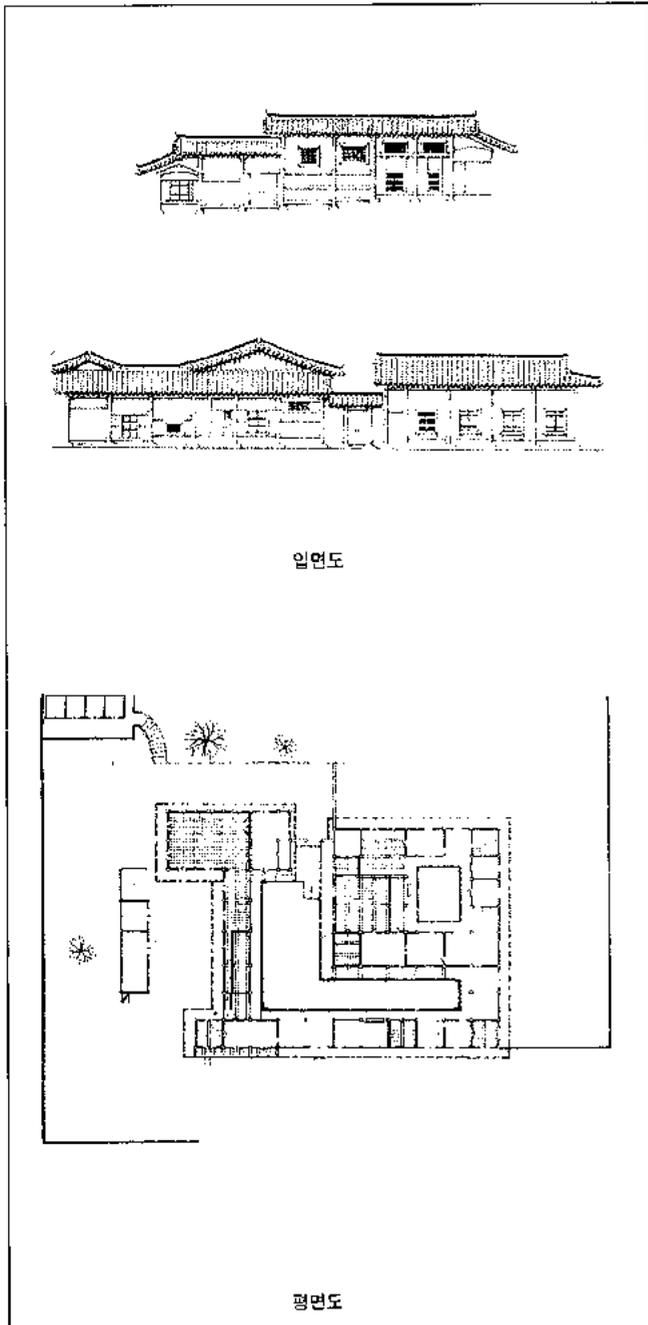
그러나 하긴 미움자 본체인 이 집 우측에 한옥으로는 화려한 별당이 있는 것을 보면 오히려 실세는 남자에 있었던 듯도하다. 백교수 집을 설계할 때 집안의 권력구조가 반영되어야 한다던 수사를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립사는 일은 매양 이렇듯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다. 한나절 집들만 보다보니 감동스럽기는 하지만 지친다. 인상이 겹쳐 어지럽기도 하다. 하회마을이 된 그 하회로 간다. 마을을 태극무늬로 감싸고 도는 강가로 나간다. 강 건너 절벽이 보이고 강앞 모래사장 이편으로 붉으스레 잘 큰 솔밭이 있다. 물이 흐른다. 물살의 센 흐름이 보인다. 하늘이 비치고 앞산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사이를 모래벌 강자갈 뒤로 희다가 푸르다가 퍼렇게 드리우는 녹색빛깔을 하고 물살이 소리하며 돌아 흐른다. 깊이마다 다른 소리를 한다. 휘감긴 저 편을 큰 모래벌이 멀리 이어간다. 바람과 세월에 빗바랜 암벽이 물소리 위로 입렵한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만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이 마을을 이루었나 보다. 탈방에 가서 본 하회의 탈들은 인사동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다. 탈을 만드는 사람의 현학스러운 설명도 들을만한 사설 이었다. 그러나 저러나 이 유서깊은 양반마을이 유학과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탈춤의 본 고장이 된 일은 시경 첫 머리의 공자 말씀과는 어떤 연관일까. 역시 그것도 아름다운 산하에 그 이유가 있는 듯 하다.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말은 끝없는 변환의 자연을 말한다. 아침과 저녁, 낮과 밤, 가을과 겨울, 봄과 여름이 모두 각기의 얼굴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에게 자연의 신비를 알게 한다. 자연의 소리를 깊이 듣는 그 일이 바로 문화일 것이다. 더 마을을 둘러보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다. 안동으로 가서 수물지구의 옛 고가를 복원해 놓은 민속촌에도 가고 싶고 천전마을의 의성김씨 종가도 봐야할 것 같다.

풍산읍에서 안동으로 가는 길은 잠시 머물고 싶도록 환하다. 안동댐 근처에 수물지구의 집들을 옮겨 복원한 민속촌으로 간다. 가는 길목들도 좋지만 안동댐과 그 주위의 경관도 눈부시다. 우선 경치에 반한다. 댐 북측 기슭에 수물지구의 집들을 본래 위치 비슷한 자리에 이전 재현하였다. 그대로 뜯어다 옮긴 것이다. 하회에서 본 고가들은 마을의 많은 부분이 훼손된 채 서로 뒤엉키었는데 여기서 마을은 없어지고 박물관에 진열된 골동품들처럼 큰 관련의 느낌은 없으나 건축 그 자체만으로는 오히려 더 자세한 본래의 느낌을 볼 수 있다. 두 큰 기와집 들도 볼만 하였으나 두단 호박돌 기단위의 화전민 주택과 긴 토담위에서 서너채로 구성된 초가집은 땅과 하늘 사이의 인간의 삶 그것같은 토지적 건축의 질음을 보인다. 초가집 들인데도 담위로 지붕이 가늘게 부유하고 추녀는 빈벽 기둥축에 와서 문득 퇴어있다. 초가의 추녀가 이렇게 또한 변조를 보일 줄은 몰랐다. 모두 여덟 정도의 가옥들인데 그 중 들은 민속 음식점으로 쓰이고 있다. 유명한 안동음식인 헛재식밥을 준비시키고 담 옆 평상에 앉아 메밀, 모밀, 도토리인 세 종류의 묵과 파전, 고추전, 빈대떡등을 안주로 막걸리를 마신다. 내려다 보이는 안동댐 안측 호수도 볼만하지만 주위의 산과 들이 바라보이는 풍광이 아름답다.

양반들이 유학과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탈춤의 본 고장이 된 일은 시경 첫머리의 공자 말씀과는 어떤 연관일까. 역시 그것도 아름다운 산하에 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말은 끝없는 변환의 자연을 말한다.

로비하우스는 이 집에 비하면 진부하기까지 하다.
 이런 천재들이 말도 없이 살다 갔다.
 간혹 민화나 이조의 목기들을 보다가
 문득 숙연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었지만
 이 경우는 느낌의 크기가 더 크다.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잊혀졌다.
 늦었지만 자세히 보고 공부해야겠다.

인동 義城金氏宗邸



입면도

평면도

목도 달고 전들도 맛있다. 차를 몰아야 될 정 이사도 잘도 마신다. 햇제삿밥은 밀양서 살던 어린시절의 자세한 구석들을 회상시킨다. 많이 마시고 먹었다. 이대로 주저앉아 이런데서 퍼질고 잠시 살았으면 싶다.

김진균 교수가 꼭 보아야 한다던 의성김씨 종가를 찾는다. 가는 도중이 그렇게 좋다. 책에서만 보았던 안동전람이 보인다. 오른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좌측 산기슭이 문득 넓어지는 곳마다 옛 마을이 나타난다. 의성김씨 종가가 있는 곳은 이런 장소다. 아마 강 앞이라서 인지 천전이라는 이름의 마을이다. 멀리서 차츰 다가서다가 저절로 아! 하는 소리를 낸다. 아름다운 집이다. 위태스러울 정도의 파조속에 대단한 그래비티를 가진 집이다. 바라보이는 우측에 청동색 지붕이 부유하듯 엉키어 선 다른 또 한집이 보인다. 두 집이 비상한 조우를 이루고 있다. 의성김씨 종가를 들어선다. 길게 바깥채가 있고 바깥채의 좌측은 한칸 높고 우측은 낮은데 낮은 우측에 솟을 대문이 아닌 그냥 대문이 있고 우측으로는 담이 앞으로 이어지면서 거기에 대문이 있다. 대문안으로는 중정이 있고 대문축에 약간 좌측으로 비껴서서 사랑채와 안채를 잇는 후원으로 통하는 문과 담이 있다. 좌측 공간은 이층높이로 아랫층은 공간이고 위는 옆계단으로 오르게 되어 좌측의 사랑채로 연결된다. 사랑채는 세 방향이 문이고 우측에 사랑방이 있다.

반층 이상 높이에 사랑채가 있어 안채와의 분절이 자연스럽다. 사랑채에 앉으면 세 방향의 정원이 비껴져 지듯 연속한다. 바깥채 쪽으로 튀이면서 안채의 중정으로 연속하는데 담합과 열림의 변조에는 가히 선적인 경지가 있다. 더구나 작은 스케일의 안채 중정과 대청의 기구가 연결되어 마당과 마투가 한 공간으로 일으며 지는 것은 가히 절정이라 할 만하다. 이것은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보아야 할 그런 집이다. 로비하우스는 이집에 비하면 진부하기 까지 하다. 이런 천재들이 말도 없이 살다 갔다. 간혹 민화나 이조의 목기들을 보다가 문득 숙연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었지만 이 경우는 느낌의 크기가 더 크다. 많은 우리들이 이렇게 잊혀졌다. 늦었지만 자세히 보고 또 공부해야 했다. 자유분방함 속의 격식과 엄격한 형식속의 파격들이 한 실재로서 우리앞에 나타나고 있다. 서로다른 것이 하나가 되었다. 건축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가능성을 잊고 어디를 그동안 다녔던 것일까?

이 자연스런운 천재는 내가 화이트를 당도하였을 때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느낌은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안타까움 보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예감케 한다. 어렵겠지만 남들에의 관심 대신 자신의 대지속에서 자신의 역사속에서 솟는 새로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벌써 어둡기 시작한다.

서울에 가면 한 밤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풍요롭다. 오는 길에 수안보에 둘러 뜨거운 물을 가득받고 목욕을 하였다. 귀로의 밤길이 이렇게 가볍고 흥분스럽다. 집에오니 밤 열두시 한 시간이나 넘었다. 그리고 보니 일박 삼일의 여행이 되었다. 내일은 종일 자야겠다.

전시공간연출

한국전기통신공사
상설전시장을 중심으로

■
REPORT
Production of
Display Space
by Han, Do-Ryong



주출입구 환영아치 안내데스크와 상담실 입구가 보이며 뒷쪽으로 널보드가 보인다.

○전시장 개요

전시장 실내면적 : 209.6평

천장높이 : 5.4m 및 2.7m(2원화)

전시장·영상실·상담실의 분리

전시장내 출입은 정면 및 측면 2개

출입구 이용

‘전기통신전시장, 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일반 대중에게 전시의 주제를 전하고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를 대비, 통신의 역할과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현재·미래의 통신기기를 한 곳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통신의 다양한 기능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공간형성의 미적내용 즉 기능문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3차원적 이면서 회화나 조각과는 달리 그 내부공간의 존재가치를 찾아내는 조형예술을 추구했다.

1. 전시공간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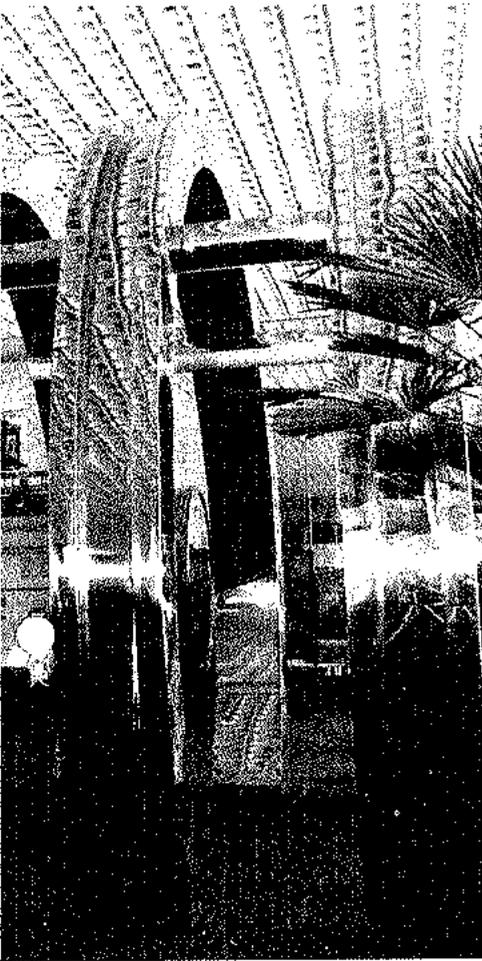
전시장은 본다, 걷는다, 조작한다는 3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본다는 것은 시각의 범위와 설치물의 위치를 설정하고, 걷는다는 것은 동선의 범위를 결정하며 조작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형태와 크기가 한정된다.

디스플레이 그 자체의 독창성은 내적인 매스에 있다. 속이 빈 공간에 명확한 형태를 줌으로써 그 자체의 영역을 창조하고, 그 공간은 단순히 실질적인 형태와 크기를 갖는다는 의미 외에 활동의 질서를 유지하는 물리적인 규범이 되고 또한 감각을 통하여 전시장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따라서 단순한 형태와 균형의 실제적인 적용, 일정한 패턴의 반복, 전시품의 선별을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고, 장식적인 취향에서 벗어나 정교한 형태적 구성을 추구하였다.

전시장 내부 계획으로는 쇼-룸(Show Room) 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트랙션 존(Attraction Zone)으로서, 출입구 환영 아치 3개와 무빙 스크린(Moving Screen)인, 널보드(Nap Board) 상담실을 설치했다. 전시 구조물의 형태를 원형으로 하여



반경에 의해 결정된 공간의 대부분은 인간의 몸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의 접촉 인터페이스(interface)이다.

직교형태와는 대조적으로 단순하게 처리된 전시장 평면의 민곡된 형태는 관람객에게 부드러움을 느끼도록 하고 경직된 전물전체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내부의 공간은 상담실과 전시실, 영사실로 분리되고 전시실은 다시 보행로와 전시구조물로 분리됐다. 입구 좌우측에는 어트랙션 심볼로서 전화 수화기를 배치했다.

또한 어트랙션 존(Attraction Zone)을 중심으로 좌·우·후면에 기본 3개 구역으로 그룹(Group) 배치를 하고, 동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룹사이가 연결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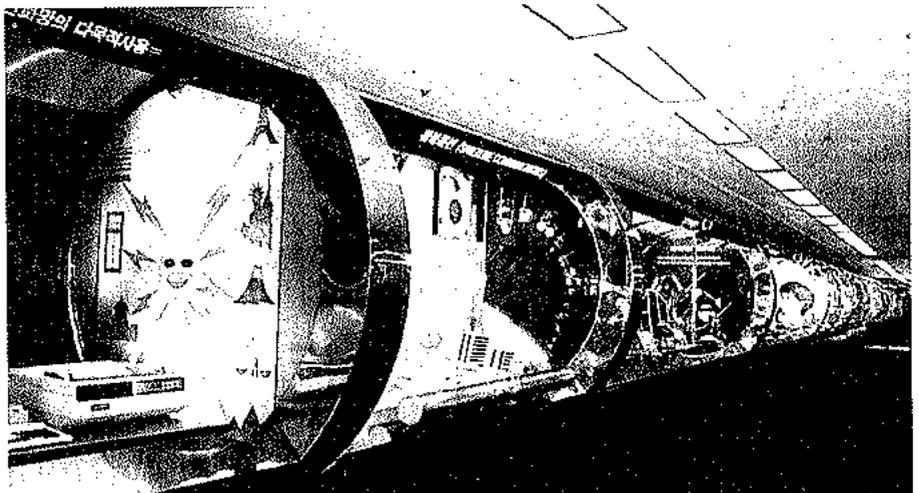
구조물도 선적인 체계로서 동선을 유도하고, 내부 4개의 기존기능을 감싸는 형태로 전시장으로서의 불리한 조건을 보완했다.

3. 동선계획

전시장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다. 전시장 내에는 항상 움직임, 이동, 변화가 있다.

각 코너, 각각의 전시공간은 연속적으로 동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단순함과 공간절약의 의미에서 잊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많은 코너를 순서별로 통과 해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관람객의 유체적, 심리적 피로를 고려하여 최장거리를 300m 미만으로 했고 중간에 휴식공간을 두었다.

뒷면: 선적인 형태요소로서 반복시켜가며 통일감을 준다.



너무 긴거리는 관람객에게 지루한 감을 유발하고 전시장 주제에 대해 혼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출입구에서 관람객을 자연스럽게 유도, 관람자가 가벼운 기분으로 전시통로를 순회 하도록 하며, 영상실을 마지막 코스로 하여 휴식시간과 더불어 전시품으로 부족한 내용을 전달토록 했다.

전시실의 주동선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의 통신자료를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 동선의 교차와 역순을 피했고, 혼잡함을 줄이도록 했다.

4. DISPLAY 계획

● 입면계획

입면은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시선을 가장 많이 받는 요소이므로 전시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재료와 색채는 일반적이며 눈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했다.

설계요소로서 벽면은 바닥층이나 천정면과 합쳐질 수 있으며 독립되기도 한다. 그것은 공간 안에 다른 요소의 중립적인 배경일 수 있으며, 또는 그 안의 시각적 활동요소이기도 하다.

도로와 인접한 입구쪽 면은 전면 유리로 되어 있어 전시장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중앙의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어트랙션 심볼을 설치, 곡선과 직선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을 수용하면서 기능과 상징성의 요구에 적절히 다르도록 했다.

주출입구에서 환영아취를 통해 진입 하면서 출입구의 시각형을 내부의 곡면과 조화시키도록 하였으며, 전면부에는 어트랙션으로 네보드(Nap

케이블선을 연상시키고 사각형인 건물형태와 대비 효과를 기대했다. 또한 전시공간 극대화도 전시품목을 최대화 했으며, 전시품은 과거·현재·미래로 구분하여, 현재 이용되는 품목을 위주로 하여 실연가능(가시, 가청 등 동작)토록 했다. 다만 실연불가능 품목은 모형, 와이드 칼라, V. T. R등을 이용했고, 설치 품목별로 다이어그램 등을 이용해서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구조물 또한 전시품의 수정, 보완, 수리가 가능하도록 단순화 유니트화하여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면이 유리로 되어있음을 감안하여 쇼우 윈도우를 설치, 통행인에게 관람을 유도하도록 계획했다.

2. 평면계획

시각적 구조를 형상화하는데 평면은 볼륨의 제한이나 영역을 확정하고 공간의 질을 결정한다. 구조물의

Board) 라는 무빙스크린을 설치하여 환영 메세지, 다양한 통신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람객들의 흥미를 유발 시키고자 하였다.

입구에서 우측면은 벽면전체를 책 형태로서 통신의 발자취를 역사책을 바라보듯 대형구조물을 설치했다. 구 전신기, 교환기, 전화기의 모형과 연대별로 구성된 사진들은 과거의 장을 설명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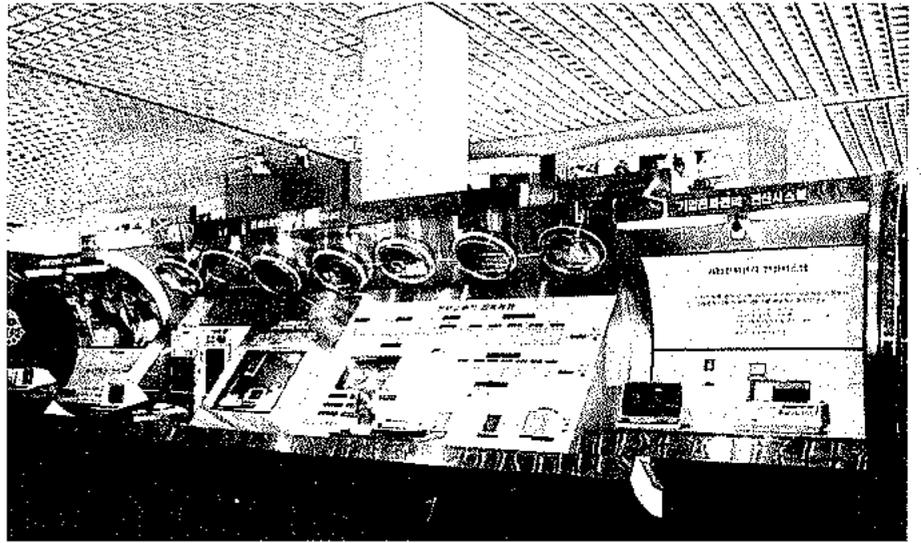
입구에서 좌측면은 직사각형의 입방체를 들출시켜 단조로운 벽면을 보완하면서 공간의 협소함을 보완하기 위해 한변 45cm 모듈 온경을 부착하여 관람객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자 했다.

중 2층 영상실로 연결되는 계단과 미래 마지막 부분에 전화제어주택 코너를 설치하여 동선의 분리를 꾀했다.

전화제어주택은 실제로 작동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유발 시켰다. 구조도 원형으로 통일시켰으며, 전시공간내의 또다른 작은 공간으로서의 형식을 이루었다.

배면은 천정고의 이원화로 상부벽은 동일한 온경을 사용하여 천정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듯한 무한대의 인상을 주고 하부벽은 전시구조물로 벽의 직접적인 노출을 삼갔다.

좌우측 벽면은 같은 모듈의 온경을 부착하여 전시구조물이 계속되어



기둥들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전시장의 공간감을 확대시키고 케이블 선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천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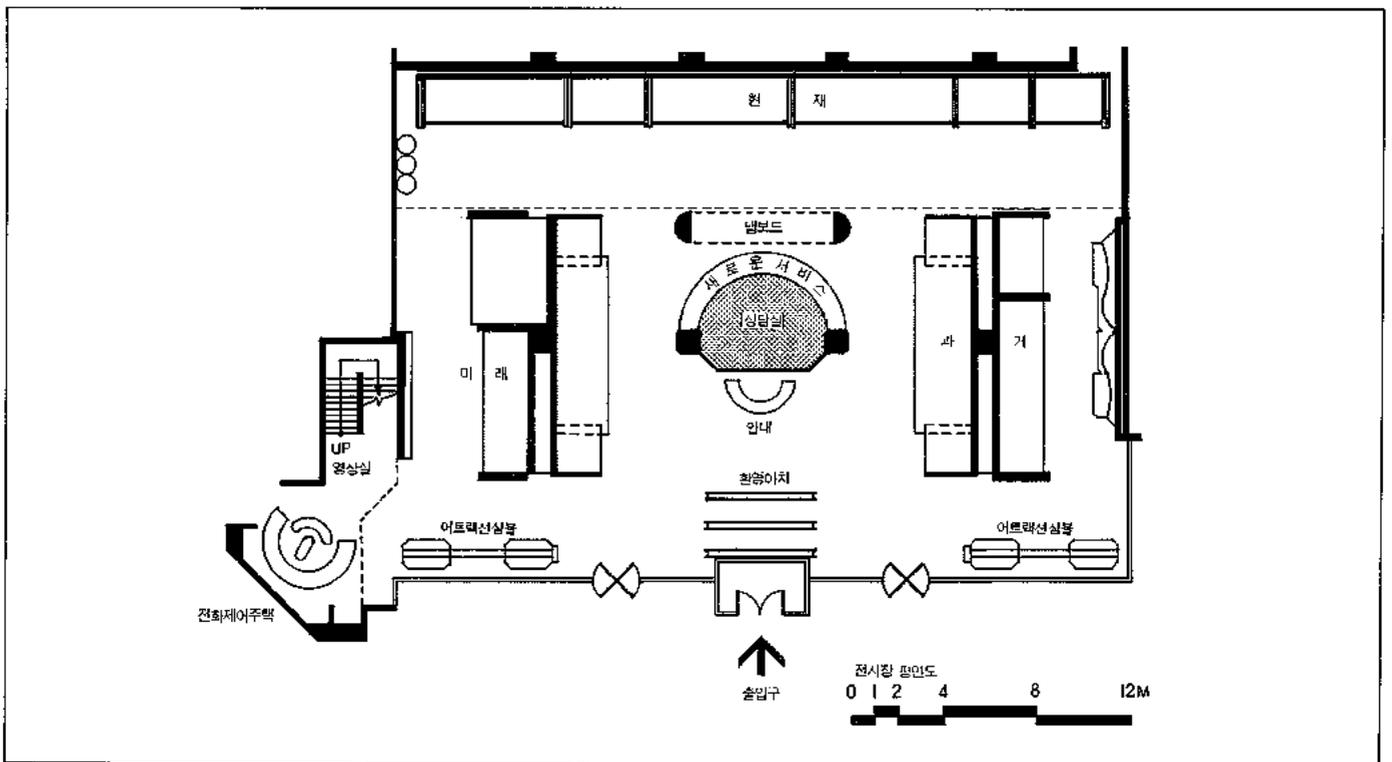
천정은 실내에서 가장 소홀하기 쉬운 곳이지만 가장 중요한 곳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크게 혹은 작게 또는 어떤 느낌을 주게 하느냐에 따라 전시장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데 5.4m의 높은 천정은 딱딱함과 넓은 느낌을 준다. 전시장은 기존 천정마감재인 하드 셀링(Hard Ceiling) 알루미늄 텍스를 사용하였고 베이지색 계통의 밝은색 페인트로 마감하였다.

밝은 색상은 경쾌한 느낌을 주고, 요철은 소음을 흡수하도록 되어 있다.

●전시구조물 계획

기존 쇼-룸의 각형구조를 탈피하여 미래적인 원형구조의 모듈을 이용하여 그 환경속에서 '이상적' 형상을 표현하며 자유롭게 설 수 있고, 그 영역안에서 기능적인 요소와 직교체제를 3차원적인 관계속으로 통합시키고자 하였다.

원형구조의 특징으로는 2개의 원 중심을 뚫는 축을 중심으로 이 축을 따라 쉽게 확장되고 길이의 연장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다른



형태를 덧붙이거나 제외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이상적 입체의 다양한 변화를 갖는다는 것이다.

길이변화로 선적인 형태요소가 되었고, 볼륨의 한 부분을 잘라내어 원래형태는 보존하면서 원통의 내면을 이용하여 전시대로 사용하고, 하부에 육면체를 덧붙임으로서 안정감을 주었다. 통신공사전시장의 구조물은 제품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치지 않고, 동선을 유도하는 벽면의 역할도 겸 하도록 했다.

따라서 견고하고 표면처리를 단순하게 하며 동선 유도에 무리가 없도록 했다. 높이는 2.6m로 관람자 시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원통 측면(길이)의 1/4~1/3을 깎타하여 내부 공간에 실물과 모형을 설치하고, 내부벽면에는 사진, 와이드칼라나 설명문안으로 통신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조작버튼도 원형구조의 모듈을 이용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상당실 계획

중앙의 기존 기둥을 이용하여 수직적인 요소에 반원의 평면을 구성, 직선과 곡선의 공존을 꾀했다. 벽면은 칼라 유리를 사용하여 반개방시키고, 내부에서는 외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칼라유리의 외벽에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리면에는 주제관련 다이어그램 및 설명문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통신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구조물이나 공간을 크게 파손하지 않고도 빠른 정보를 관람자에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내부에서는 전시장내 공간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윗면을 개방시켜 특별한 조명없이도 상당실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실 계획

영상실은 전시장 마지막 코스로 중 2층에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영상실은 평면이 불규칙적인 형태이고, 많은 관람객을 수용토록 하기 위해서 시청 공간을 뒤로 하고 대신 영상실을 앞쪽에 배치하여 영상은 리어 스크린(Rear Screen)을 사용하였다. 리어 스크린 방법은 반사율이 작기 때문에 전시공간 조도의 자유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음향의 울림이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방음벽으로 마감하였다.

●재료마감계획

상설전시장이란 것을 고려하여, 견고하고 내구성, 내마모성, 내수성 등에 강한 재질로서 마감상 보기에 좋도록 했다. 모든 구조물은 스테인레스스틸, 은경, 유리 등을 주로 사용하여 금속의 청결함을 강조하고 규모로 인한 무거움을 배제했다.

바닥은 카펫로 마감하여 주변환경과의 구분 및 소음흡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전시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색상계획

전반적으로 구조물의 금속과 천정의 베이지 색으로 밝은 느낌을 주었으며, 전시장 내부 전시물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구조물이나 마감재에는 재질 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시 보조구조물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 깔끔한 맛을 주었다.

바닥 카펫트는 밝은 청색으로 전시장을 산뜻하고 명쾌하게 보이도록 했다.

●조명계획

전시실의 조명은 공간구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한 공간조형을 정리하고 빛의 계획이 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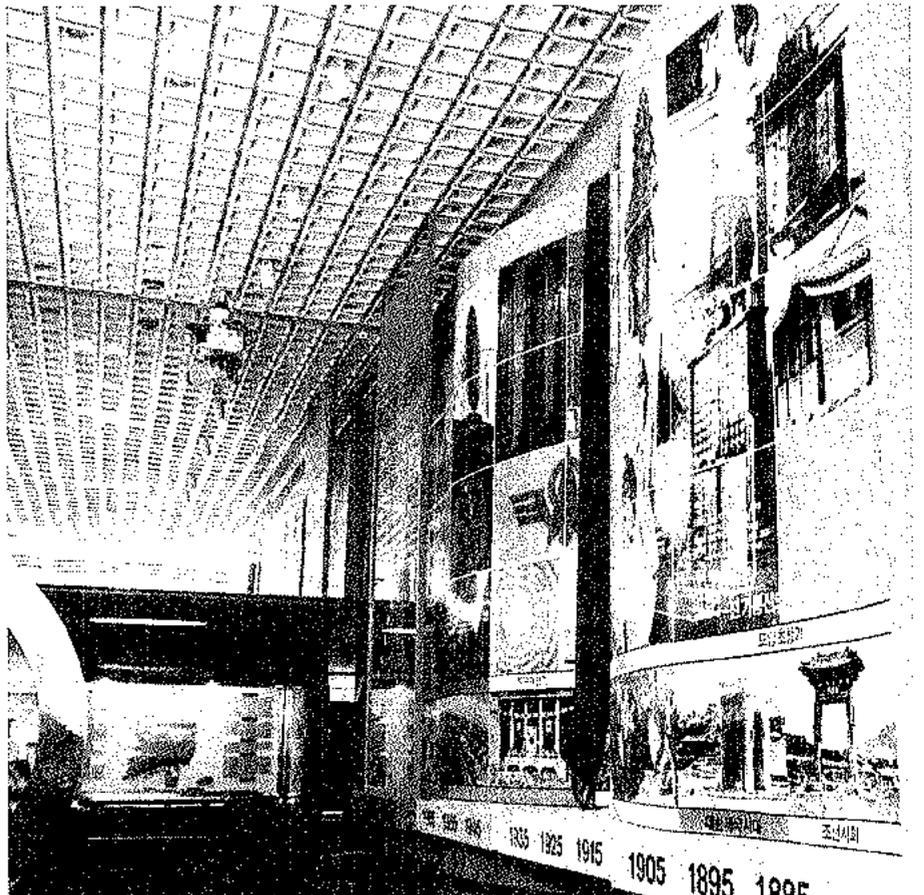
전체적으로는 천정의 기존조명을

기본으로 하여 높은 천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빛은 전시품을 하나 하나 강조하지는 못하지만 전시장 분위기를 은은하게 연출시켰으며 전시구조물 내에는 별도조명을 삽입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빛을 제공토록 했다. 또한 동적인 분위기연출을 위하여 네온 점멸조명을 사용하였다.

●디스플레이는 사람, 물체, 환경을 서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따라서 그것은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 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디자인 되는 것이다.

'전기통신 전시장'은 내부의 원형 구조와 입방체의 다양한 면구성으로 벽면의 이차원적인 수법에서 3차원의 유동적인 관계 속에서 전개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개념은 내부공간과 볼륨 사이의 상호관계로서 특징지워졌다. 따라서 이번 전시장은 기존 쇼-룸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미래적이고 첨단적인 원형구조물을 이용한 독창적인 쇼-룸으로 부각시키며, 관람객에게 전기통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도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했다.

우측 벽면의 대형 책구조물(전기통신의 발달사 코너)



건축과 조경 (VIII)

건축에 있어서의 원론적 조경

■
Report
Architecture and Landscape
by Oh, Sang-P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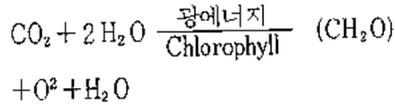
제 2 장 건축에 있어서의 원론적 조경

1. 자연과 인간과 조경

(1) 삼림, 강, 호수, 그리고 바다
18세기경에 싹트기 시작한 과학적 사고방식이 산업혁명을 유발하였으며 기계력에 의한 대량생산과 이에따른 소비는 인간의 생활을 매우 편리하며 윤택하게 하였고 급속한 자원의 개발과 경제의 발달을 가져와 풍부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여 전후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급성장은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계획이 뒤따르지 못하는 도시팽창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로 인해 국민생활 환경의 악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교통, 생활용수 에너지, 주거, 각종 생활용품의 공급 및 도시 폐기물 처리 등 가장 기초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대기과 수질의 오염, 도시의 진동 소음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무방비가 巨大都市에서 인간의 생존 그 자체를 위기로 몰아 가기에 이르렀다.
최근 수년에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한강 퇴삼리기 사업 등으로 수질을 다소 정화시키고 대기 오염의 완화를 위하여 연료 정책을 전환했으며 지하철 건설 등으로 교통 문제를 완화시켰고 공원 면적의 증가 등 눈에 띄이게 도시 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환경개선 사업은 계속되어 나갈 것으로 믿어진다.
대도시에서 인간의 생활이 편리하고 인락할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자연에 대한 갈구를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숲 속의 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되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게 있는 것이었기 때문일

식물의 연소 등으로 발생한 탄산가스)가 결합하여 Chlorophyll이라는 녹색 식물 잎 속의 화학공장에서 복잡한 공정을 거치는 동안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당당류(CH₂O)를 생산하고 산소(O₂) 한 분자와 물(H₂O) 한분자를 공기중으로 방출한다.



이때 식물이 소비하는 CO₂와 동물이 필요로 하는 O₂의 균형이 맞아 자연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광합성작용(photosynthesis)에 의하여 생성된 CH₂O는 토양 속에서 물과 함께 흡수된 각종 무기영양소와 반죽이 되어 식물체의 각 부분을 형성시켜 자라고 꽃피고 열매가 되기도 하며, 잎과 줄기, 뿌리가 되어 인간이 이용하는 식량, 약재 또는 목재와 연료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 등 수 없이 많은 형태의 자원이 되어지고 숲 속 나뭇가지 잎새 덩굴 속에 사는 산새와 곤충 등 수없이 많은 야생 동물의 보금자리이고 먹이이기도 하며 이들과 어우러져 한바탕 베푸는 자연의 대 코러스이기도 한 것이다. 낙엽되어 떨어진 잎새와 가지 쓰러진 나무 등결은 다시 땅 속으로 돌아가고 땅 속의 땅강아지, 지렁이, 톱토이, 큰벌레, 작은벌레, 미생물들이 차례로 먹고 분해하여 액체와 기체와 고체로 다시 무기질 상태로 분해 환원된다. 이것을 소위 생태계내에서의 에너지 순환 또는 먹이의 체인이라 하여 녹색

식물을 생산지라 하고 녹색식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과 동물을 먹이로 하는 동물을 소비자, 이것을 다시 부패시켜 분해하여 자연으로 되돌리는 미생물을 분해자라고 한다.

이와같이 우리 자연의 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분해자가 질서있게 상호 작용함으로써 평온이 유지되며 오염되지 않고 스스로를 정화해 나가는 자연 생태계의 自淨能力이 있는 것이다. 잔잔한 호수, 굽이쳐 흐르는 맑은 강, 물고기, 수많은 물벌레, 폭포, 벼랑 끝에 겨우 뿌리를 내려 아슬아슬하게 수백년을 버티어 온 벼랑위의 소나무, 성난 노도에 씻겨 만들어진 해안의 기기묘묘한 바윗돌, 절벽, 온갖 바닷새와 물고기들...

대지진, 화산폭발, 폭풍우에 의한 홍수, 산사태등 수없는 자연의 재해 변화현상 이런 것들은 나고 죽고 터지고 복구되고 저절로 정화를 거듭하면서 수십억년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안정되고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이 자연이고 자연의 섭리이며 자연의 자기 회복과 정화 능력이고 자연의 질서인 것이다. 여기는 일반통행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2)인간의 수공적인 경관 변화와 기계적 대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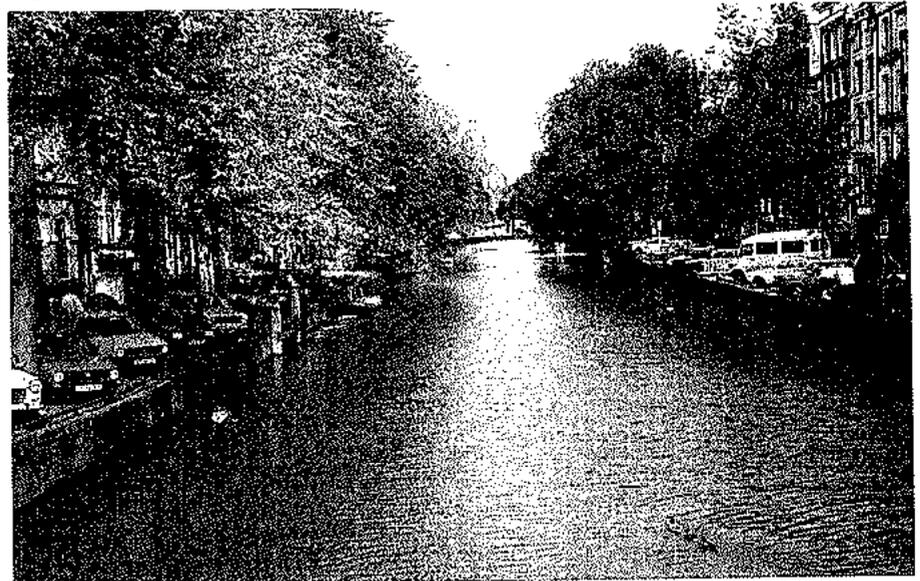
태초의 인간이 자연속에서 태어나 그 자연의 품속에서 계속되어 오는 동안 인간 역시 자연 한부분이었으며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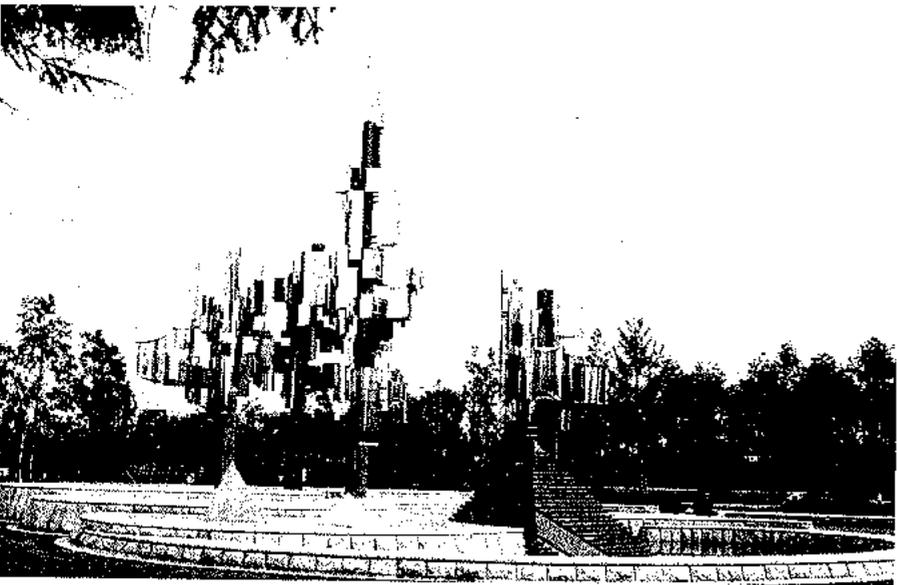
것이다. 계절의 변화, 맑은 공기, 맑은 강물, 울창한 삼림, 넓고 넓은 시원한 바다, 그 속에 각종 동식물, 무생물 하나 하나, 눈, 비, 바람 이런것들을 우리는 자연이라 일컬어 왔다.

인간이 생활하는 바다를 제외한 육지의 대부분은 삼림과 경작지로 둘러 싸여 있다. 우리 생활 자원의 대부분은 삼림과 경작지로 부터 공급을 받으며 우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기(산소)가 삼림의 녹색 식물로부터 생산되고 식량 에너지 등등 가장 기본적인 자원들이 삼림과 경작지에서 생산되며 도시생활의 시달림도 자연의 품속에서 풀어 휴식을 취한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덮혀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싱그러운 햇빛을 받아 땅 속에 스며있던 물(H₂O) 두 분자와 공기중의 탄산가스(CO₂) 한 분자(동물의 호흡,

도시에서의 자연의 도입(암스텔담)





수공예적 경관의 변화(로마의 포룸)
도시경관의 인공적 조화(잠실 아세안공원)

그러던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의 힘을 빌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농경과 목축으로 물질을 축적하고 자연을 이용하는 정착 문명이 생겨 물질과 영토, 종족 보존에 대한 욕구가 커져 감으로써 인간의 문화는 급속히 발전하여 1만여년 전부터 인류 문화는 역사의 흔적을 지구상 도처에 남겨오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인류 역사의 흔적과 변화를 고고학적으로 규명해 오고 있는데 분야에 따라서는 종교사, 전쟁사, 미술사, 건축사등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이용과 인간이 자연에 가한 변화와 흔적을 찾아보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연에 가한 경관의 변천사를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나일강 유역의 거석문화(피라미트스핑크스) 그리스 신전, 로마의 유적, 황하 유역의 만리장성, 인도 캐시미르 지방의 천불동석굴 등등 이런것들은 그것을 건설한 목적이나 동기는 여하간에 결과로는 거대한 자연의 경관 변화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자연은 순수성을 상실하고 인간에 의한 경관 변화를 크든 적든 역사가 계속되는한 끊임없이 당하여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와 같이 1만여년간 이어 오면서 변화된 경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세사 약200년간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발전한 기계력에 의해 경관의

변화 즉 자연의 대량 파괴력에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인류 역사중 약 1만여년간은 경관변화의 에너지로서 인간의 근육과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동물의 근육 또는 자연의 힘을 이용 하였으므로 나일강 유역, 거석문화나 로마의 유적, 만리장성 등등 인간의 수공예적 도구에 의한 자연경관 변화는 자연이 자기 정화 능력을 벗어나지 않아 자연과 인간과의 상호관계가 적절히 유지 되므로써 새련되지 않았을 망정 예술적 미와 멋이 풍기는 값진 문화 유산으로 그 보존을 극진히 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Garrett Eckho 교수의 지적과 같이 개발이라는 미로하에서 최근세사 200년간에 거대한 기계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관의 대량 파괴는 자연에 부존하는 자원을 수탈하며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부의 창출이라는 현대 경제 논리에 따라 각종 오염물질을 방출하고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킴으로써 그 자연생태계의 자기 정화 능력을 상실시켜 돌이킬수 없는 환경 파괴를 유발하였고 결국에는 인간의 생존마저도 위태로와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그뿐인가?

현존하는 초강대국들과 제 3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핵 병기의 잠재 파괴력은 지구를 풀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40번이나 파괴할 수 있다고 하니 현기증이 날 뿐이다.

(3) 인간성의 회복

이처럼 인간의 그릇된 지혜에 의한 자연 환경의 파괴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가장 고귀한 본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말것이다.

인간은 자연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자연 또한 인간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애국가 귀절에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듯, 바람 서리 불번함은 우리 기상」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선인들은 소나무를 우리의 기상이라고 했거늘 소나무 만큼 우리나라의 자연을 잘 대표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가장 나쁜 기상조건 가장 척박한 토양 가장 나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소나무이다.

해방이후 불법 남벌로 인해 산림의 급속한 황폐를 지금 40대 이상은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말이 있었으나 그 당시 6.25를 전후하여 대부분 우리 국토는 온통 벌거숭이인 삼천리 황토강산이었다. 그때도 제일 끈질기게 살아 붙어 남은 수종이 소나무 이었다. 우리의 소나무는 백설이 만जन콘할 때 독야청청 하기도 했고 철갑을 두른 남산위의 소나무는 어떠한 주위의 침해나 악조건 하에서도 곳곳이 버티어 온 우리의 기상이며 동해물과 백두산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자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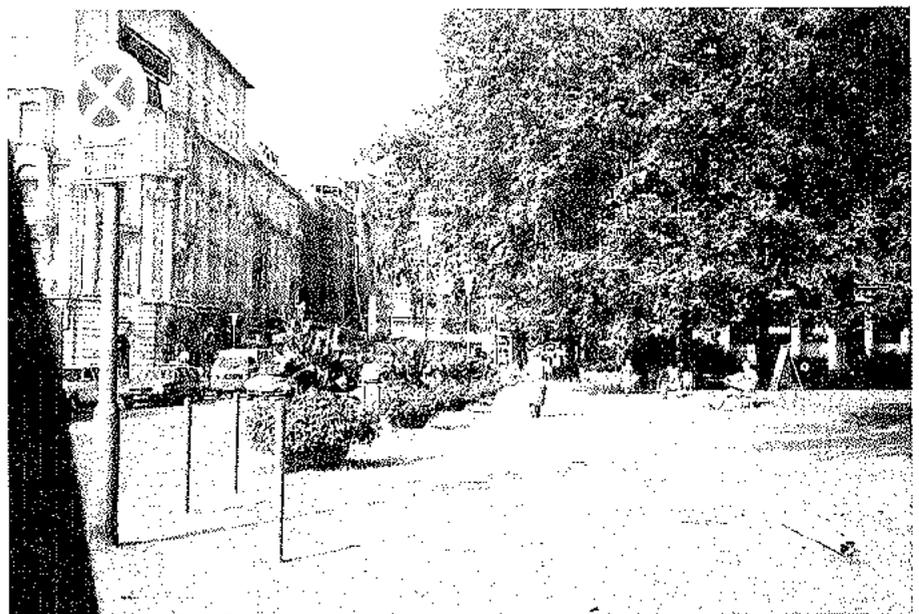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 남산위의 철갑을 두른 저 소나무를 보라!

60년대 이전 까지만 해도 남산의 임상은 70%가 소나무였고 잡목이 30%를 못 미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그 비율이 역전되었다고 한다. 누군가가 소나무를 미워서 일부러 잘라 없애버린것은 아닐것이고 소나무보다 더 예쁜 수종으로 남산을 더 잘 가꾸다보니 저절로 소나무가 밀려 났을지도 하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는 그동안 급속히 오염된 서울의 대기와 각종 환경 악화가 그 원인중의 하나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남산의 소나무가 병들어 가듯이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이상 비대해진 도시와 늘어나는 고층 빌딩, 건축물 이속에 자연이 고갈되어 인간성마저 잃어 버린지 오래다.

삭막한 도시 환경속에서 한채의 건축물을 세울때 마다 우리는 한줌의 흙을 생각하고 한포기의 풀과 꽃과 나무 한줄기의 물을 생각하고 우리는 신축하고 개축하는 건축물에 결들여 자연을 함께 숨쉬는 조경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철갑을 두른 저 남산위의 소나무가 동해물과 백두산과 함께 영원할 것을 다시금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는 개발과 자연의 보존을 함께 유지 시킴으로써 환경의 악화를 막고 생활속에 자연을 최대한 공급하여 도시 생태계에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이것이 곧 상실되어가는 현대 도시 사회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가장 확실한 한 방법일 것으로 믿는다.



스위스의 자연과 인공(인타라켄)



인공과 자연의 조화(스위스 베른)

건축법 및 동시행령 개정 내용해설

■ Feature
Commentary of Architecture Law and Enforcement Regulations Revised Contents by Kang, Kil-Boo

머리에

1962. 1. 20 법률 제984호로 제정된 건축법은 건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터전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공간의 형성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간 산업의 발달과 국민생활의 변천에 따라 최근 86. 12. 31 건축법 개정까지 13번(동법시행령은 22번)을 헤아리는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돌이켜 보면 건축법령의 개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질서확보의 측면과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의 상반되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우리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건축물이 날로 대형화되고, 그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건축질서를 마련하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면서 복잡한 건축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지역실정에 적합한 건축행정을 실시하고자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이다. 개정 건축법은 86. 12. 31 법률 제3899호로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은 이보다 며칠 앞서 86. 12. 29 대통령령 제12022호로 개정령이 공포되었다. 따라서 법개정에 따른 용적율의 범위, 도로의 구성 및 폭등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뒤따라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총 칙

1. 지하층·도로등 불합리한 용어의 정의 조정(법§ 2)
종전에는 지하층의 정의를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2/3이상(다세대 주택 및 단독주택은 1/2이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시공과정 또는 준공후에 천정을 높일 경우 등 천정에 설치하는 반자의 위치에 따라 천정 높이가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층고는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으로의 결정 여부에 가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지하층의 높이를 천정 높이가 아닌 층고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다. (법§ 2제 5호)

또한 종전에는 도로의 정의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으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이와 같은 도로에 2개이상 접하도록 하던 것을 이번에 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 대하여는 그 구조 및 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폭을 4m 이상으로 했던 이유는 화재등 비상시에 출입을 원활하게 하고, 소화작업을 위한 소방차의 진입등을 감안하여 정하였으나 부산 등 대도시의 경사지에 집단 이주된 건물 또는 양성화된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재개발 사업등을 통해 정비하지 않는 한 집을 다시 짓고자 할 때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더우기 지난 '81년 12월31일 공포되었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85. 6.30폐지)」에 의해 많은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 되었으나 이러한 도로 기준에 부적합하여 집을 헐고 다시 지을 수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경사지역과 도서지역 등 특수한 곳에 대해서는 소화 작업등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도로 기준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그 폭을 정하도록 개정할 것이다.

2.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확대(법§ 3②)
대지안의 공지조항(법§ 41의2)은 도시 계획구역 및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취락지역과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에서만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기타의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공해공장 숙박시설·판매시설·관람집회 시설·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등 주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 경계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함으로써 공해배출, 위험물 취급, 일조권, 프라이버시 등 상린계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단독 주택이나 소규모

점포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도로 및 건축선 등 적용대상 축소 (영 § 3①)

건축법 제3장 도로 및 건축선 제4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제한, 제5장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의 규정을 도시계획 구역,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취락지역과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인구 500인 이하의 섬은 제외)에만 적용토록 개정하여 종전의 이들 규정의 적용 대상이었던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공원구역과 고속국도의 중심선 및 철도의 중심선으로 부터 각각 양측 500m 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 국도의 중심선으로 부터 양측 200m 이내의 구역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4. 건축허가 대상구역의 일부 제외 (영 § 3②)

도시계획 구역과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읍의 구역 및 공원구역·고속도로 및 철도 중심선 양측 500m 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 국도의 중심선으로 부터 양측 200m 이내의 구역에서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인구 500인 이하의 섬의 공원구역은 허가대상 구역에서 제외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다.

5.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건축대상의 확대(法 § 5②)

건축허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할 때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 하던 것은 종전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내인 경우에 한하던 것을 그 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50㎡ 이내인 경우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미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설계 변경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 변경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내 또는 연면적의 1/10이내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경우에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하던 것을 이번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내인 경우로 개정하였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건물(연면적 500㎡ 이하)에서는 허가가 신고로서 완화되지만, 연면적이 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고제가 허가제로 강화되게 되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설계변경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이유는 설계변경의 내용이 건축물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거나 바닥면적의 큰 증감으로 인하여 구조 또는 소방상 안전 여부를 건축허가 관청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 건축기준의 적합여부 검토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30㎡에서 50㎡로 조정한 것이다. 특히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는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용도 변경은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아 허가 대상으로 하던 것을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를 크게 달리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 변경은 신고로서 허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건설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것은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었던 것을 건축법에 직접 규정 하여 그 근거를 분명히 한 것이다.

6.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중지 (법 § 6⑤)

바닥면적 2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건축공사의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에만 건축공사를 할 수 없게 하던 종전의 규정 이외에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당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때에도 당해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추가하여 위법 건축물 또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관리자의 기능과 책임을 보강하였다.

7. 위법건축물 사전 시공예방 (법 § 7①)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종전에 착공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착공후 3일 이내에 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였다(완료한 날로 부터는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착공후에 신고 기간이 길어 그 기간중에 진행된 공사가 건축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허다하여 이를 시정보완 하기 위한 것이다.

8.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승인확대 (영 § 7제 4호)

시장 또는 군수가 3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 및 공장 제외)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이번에 독립기념관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 문화유산 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도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개정하였다.

9.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중간검사 폐지(법 § 7의 2, 영 § 11 ① 제11호)

종전에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중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은 중간 검사를 받지 않고 준공검사만 받도록 완화하였다. 이는 중간검사가 기초 철근 배근을 완료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건축 허가 기관에서 건축물의 위치 또는 철근의 배근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인데,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그 규모가 330㎡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중간 검사를 면제하여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건축중에는 공사감리자가 계속적으로 감리를 하게 되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 공정은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또는 철물 철근 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건축 공사의 공정이 기초 공사에 있어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인데, 이번에 에너지 절약 시공상태 확인을 위하여 단열

시공이 50%에 상당하는 공정에 달하였을 때를 중간검사를 하도록 신설 추가하였다.

10. 대형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강화 (법 § 7의 3)

대형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이상으로서 5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11층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건축물로서 국가안전보장상 보안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 시설과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고의무 제도는 지난 81년까지 시행했던 제도였으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대형건물의 숫자가 오늘날 처럼 많지 않았고 또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여 이 제도에 대한 장점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제 5공화국에 들어와 82년 4월 3일 제10차 건축법개정시 이 제도를 폐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올림픽이 서울에 유치되고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재개발사업등에 의한 대형 건축물이 다수 건축되면서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의 유지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이 건축법상 제규정에 적합하여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또는 방화시설 등의 관리 상태를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건축주의 자발적인 관리 의식을 높이고 잘못된 관리실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유지관리 보고서의 작성방법, 보고기간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11. 도시설계 구역내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 특례(법 § 8의 2④)
도시설계란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변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및 토지이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건축물의 위치, 규모, 용도, 층수, 형태, 색채등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범위내에서만 건축허가를 하는 제도로서 도시의 기능과 미관의 증진을 위한 장기 종합적인 계획이라 하겠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이에 반하여 공공시설 용지의 제공등이 도시설계가 수립되지 않은 지역보다 추가적으로 부담되어 건축주로서는 재산권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건축주의 재산상 제한에 따른 보상을 기함으로써 도시설계 제도의 원활한 집행과 건축주의 욕구를 상호 조화 시켜나가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내에서는 대지안의 조정면적, 견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12. 대지안의 조경의무 면적의 완화 (영 § 15)

종전에 면적 165㎡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생산농지 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植樹)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 면적의 5%~1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농어촌 지역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 면적의 5~15%의 조경을 하여야 하던 것을, 인구 10만 이하의 시지역과 군 지역중 시장, 군수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등을 하는 주택, 축사, 또는 창고에 한하여 조경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상업지역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대지 면적의 5~15% 조경을 하여야 하던 것을, 시장, 군수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면적 200㎡ 이하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은 조경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정하여 이를 완화하였다.

II. 대지, 구조, 건축설비 등

1. 구조 기술사의 구조계산 범위확대 (영 § 1)

내진대책 등 대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21층 이상이거나 경간이 30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국가기술 자격법에서 정하는 구조 기술사의 구조계산에 의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21층 이상이던 것을, 16층 이상으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2. 방화에 장애가 되는 복합용도의 제한완화(영 § 35①②)

같은 건축물 내에서는 주택, 기숙사,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 중 하나 이상과 숙박시설, 위탁시설, 공연장,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할 수 없던 것을, 이번에 주택중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이를 숙박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동일건물내에서는 노유자 시설(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에 한한다)과 판매시설(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한다)을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직통계단의 이격거리 기준강화 (영 § 38①)

화재 및 비상시에 계단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 거리를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이번에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내화구조라 하더라도 40m 이하로 개정하여 고층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4. 특별 피난계단 설치 대상 기준 강화 (영 § 39 ①)

종전에는 11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층(바닥면적 400㎡ 미만은 제외)은 특별피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되, 공동주택은 제외하였던 것을 고층 주택에서의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편복도식(片複道式 (Side Corridor Type) : 한편에만 방이 배치되고 다른 편은 외부에 면한 복도)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일 경우에 특별피난 계단을 설치하도록 개정하였다.

5. 특별 피난계단 출입구 폭의 기준 강화(영 § 41 ① 제 6 호, ③ 제 11 호)
 옥내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는 옥내로 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폭을 0.9m 이상, 특별피난 계단의 구조에 있어서도 출입구의 유효폭을 0.9m 이상 유지하도록 신설 규정하였다.

6. 신체 장애자용 편익시설(영 § 43 ⑤, § 53 ②, § 55 ④)
 공공업무시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 부터 외부에 이르는 통로는 적합한 기준에 의한 구조의 경사로 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근린공공시설과 판매시설(연면적 5,000㎡ 이상에 한함)도 이 대상에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영 § 43 ⑤)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4대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 1대 이상을 지체 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종전에 의료시설, 공공업무 시설, 관광호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이었는데 여기에, 근린공공시설,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시설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 하였으며(영 § 53 ②) 또한 지체 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10개 이상의 대변기 설치대상 건축물을 종전의 공공 업무시설, 관광호텔 외에 근린공공시설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까지 추가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영 § 55 ④)

7. 옥상광장의 난간설치 일부면제 (영 § 40 ①)
 종전에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이 있는 노대의 주위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데,

이번에 1층인 단독 주택으로서 옥상으로의 통로가 없는 경우에는 난간 설치의 의무를 면제하였다.

8. 지하층 설치면적의 합리적 조정 (영 § 47)
 토지의 이용도의 증가로 전시에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한 도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인구 20만 이상의 시지역의 경우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수도권은 85㎡ 이상)인 때에는 10층 이하는 지상층 면적의 1/10이상, 11층 이상 15층 이하는 평균 1개층의 면적, 16층 이상은 평균 1개층 면적의 2배의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용도와 지역(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지하층의 사용인원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면적을 차등화 하였다.
 ①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집회장, 종교시설 및 교육 연구시설(연구소 제외) : 수도권 지역은 지상층 면적의 1/10 이상, 수도권외 지역은 1/12 이상으로 하되, 각 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그 2배 상당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종합병원, 전염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 수도권 지역은 지상층 면적의 1/12 수도권 외의 지역은 1/15 이상으로 하되, 수도권 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인 공동 주택으로서 지하층의 면적이 평균 바닥면적을 넘을 때에는 평균 바닥면적으로 하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타 건축물로서 지하층의 면적이 평균 바닥면적의 2배를 넘을 때에는 평균 바닥면적의 2배로 할 수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하층의 면적이 평균 바닥면적의 2배를 넘을 때에는 평균 바닥면적의 2배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건축물 : 수도권 지역은 지상층 면적의 1/15 이상 수도권외 지역은 1/20 이상으로 하되,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하층 면적이 각 층 평균 바닥면적의 2배를 넘는 경우는 그 2배 상당면적으로 할

수 있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각 층 평균 바닥면적의 1.5배를 넘는 경우는 그 1.5배 상당면적으로 할 수 있다.

9. 지하층의 구조 대피기능 강화 (영 § 48 ②)
 종전에는 지하층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 조로하여야 하며 벽두께는 20cm 이상, 반자높이는 2.1c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던 것을 개정하여 지하층의 대피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층별로 벽두께를 세분하여 5층 이하는 20cm 이상, 6층 이상 20층 이하는 30cm 이상, 21층 이상은 40cm 이상 이어야 하도록 이를 바꾸었고 지하층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10.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영 § 50)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종전에는 관광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람 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객실, 조리장, 관람석, 집회실로 하였던 것을 고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대중 음식점도 추가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11. 승용승강기의 비상용점용 명문화 (영 § 54)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승용 승강기로 점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12. 배관등의 설치 의무화 (영 § 58의 2 신설)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전기수용 설비를 지중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수전실까지 전력선의 인입이 용이하도록 배관 및 맨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13. 법 제25조와 관련한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 및 K, S 의무화

대상의 조정(영 별표10)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의 품질은 공업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공업 규격 표시품으로 하되 한국공업 규격 표시품이 없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공업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공업 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법 § 25, 영 § 25)

이와 같이 한국공업 규격 표시품이어야 하는 건축재료는 종전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이던 것을 개정하여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 품목도 포트랜드 시멘트와 99종 이던 것을 청동밸브의 통폐합으로 4종을 삭제하고 일반구조용 탄소강의 18종을 추가하여 제113종으로 K, S자재 의무화 대상을 지정 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I 과 같다.

III. 도로 및 건축선

1. 막다른 도로의 폭의 일부 완화 (영 § 62)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여야 하는 막다른 도로는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구조로 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길이 35m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그 폭은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10m 미만은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 35m 이상은 6m 이상이어야 하던 것을,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이 4m 이상이면 되도록 일부 완화 하였다.

2.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의 일부 완화

(법 § 27, 영 § 63 ① ②)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m 이상을 접하거나 4m 이상을 2곳 이상 접하도록 하던 것을 이번엔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 한하여 폭 4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을 접하면 되도록 일부 완화하였다. 또한 대지둘레 길이의 1/5 이상을 접해야 하는 대상 건물에는 판매시설, 관람집회 시설외에 위락시설

및 헬스클럽을 추가하였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IV.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범위조정

1 주거전용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축소(영 별표1)

주거전용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표 1) 건축재료의 품질구분표 (건축법시행령 제25조관련)

1. 한국공업규격품이어야하는 건축재료(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 (중전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번호	종 전 품 명	개 정 품 명
68	청동 5kg/cm ² 나사식 글로우브 밸브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판
69	청동 10kg/cm ² 나사식 글로우브 밸브	스위치 박스
70	청동 10kg/cm ² 나사식 앵글 밸브	암면단열재 제품
71	청동 10kg/cm ² 나사식 게이트 밸브	유리면 보온재
72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판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73	스위치 박스	누전 차단기
74	암면단열재 제품	배선용 차단기
75	유리면 보온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7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77	누전 차단기	이음매 없는 동 및 합금판
78	배선용 차단기	주력용 분전반
79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프리쉬 플레이트
80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노오말밴드(경질비닐 전선관용)
81	이음매 없는 동 및 합금판	박스(경질 비닐전선관용)
82	주력용 분전반	카바나이프 스위치
83	프리쉬 플레이트	옥와용 비닐절연전선
84	노오말밴드(경질비닐전선관용)	비닐 코오드
85	박스(경질비닐전선관용)	10kg/cm ² 보울밸브
86	카바나이프 스위치	수도용 제수밸브
87	옥와용 비닐절연전선	주철 10kg/cm ² 플랜지형 글로우브밸브
88	비닐코오드	주철 10kg/cm ² 플랜지형 앵글밸브
89	10kg/cm ² 보울밸브	주철 10kg/cm ² 플랜지형 안나시 게이트밸브
90	수도용 제수밸브	주철 10kg/cm ² 플랜지형 바깥나시게이트 밸브
91	주철10kg/cm ² 플랜지형 글로우브 밸브	주강 10kg/cm ² 플랜지형 글로우브 밸브
92	주철 10kg/cm ² 플랜지형 앵글밸브	주강 10kg/cm ² 플랜지형 바깥나시게이트 밸브
93	주철10kg/cm ² 플랜지형 안나시 게이트 밸브	주강 20kg/cm ² 플랜지형 글로우브 밸브
94	주철10kg/cm ² 플랜지형 바깥나시게이트밸브	주강 20kg/cm ² 플랜지형 바깥나시 게이트 밸브
95	주강 10kg/cm ² 플랜지형 글로우브 밸브	파이프 행거
96	주강10kg/cm ² 플랜지형 바깥나시게이트 밸브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97	주강 20kg/cm ² 플랜지형 글로우브 밸브	일반구조용 탄소강판
98	주강20kg/cm ² 플랜지형 바깥나시게이트 밸브	일반구조용 각형강판
99	파이프행거	타르에폭사수지도로
100	(이 하 신 설)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101		플러팅 밸브
10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판
103		가교화폴리에틸렌관
104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105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106		하이탱크용 볼탑
107		로우탱크 볼탑
108		로우탱크용 사이폰
109		시멘트벽돌(6층 이상인 건축물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110		동 및 합금의 관이음쇠
111		강관 삼입용접 플랜지
112		위생도기
113		플로어 린지

건축물은 단독주택, 3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1,000㎡ 이하), 근린공공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국민학교이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사술소·헬스클럽은 주거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들중에서 제외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조정(영 별표3)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레미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추가 하였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관련 또는 자동차계 강습소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개정하여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고와 자동차계 강습소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동물관련시설중 도살장은 그 면적을 제한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정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로서 녹지지역내 도살장은 소규모인 것만 허용하여 녹지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현재 도살장이 허용되는 지역은 이밖에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간이도살장)이 있다.

3.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조정(영 별표5)

(가) 각종 시설강습소 : 종전에 주거지역 안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하이고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건축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되, 대학입시계 시설 강습소인 경우, 폭 18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이를 바꾸어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① 폭 4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하인 시설강습소와 ② 폭 25m 이상인 도로에 6m 이상 접하고 당해 대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하인 대학입시계 시설강습소 및 ③ 폭 35m 이하인 도로에 10m 이상 접하고 당해 대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500㎡ 이하인 대학 입시계 시설강습소는 이를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완화하였다.

(나) 공장 : 주거지역안에서는 공업배치법 시행령 별표 2 업종중 인쇄, 봉제·필름현상, 두부제조업 공장만 건축할 수 있던 것을 이번에 자동차차료처리장비 제조업·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제조업을 허용 범위에 가하여 이들 공장도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4.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조정(별표7)

공장은 상업지역 안에서 자동차정비공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의 업종중 인쇄·봉제·필름현상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만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이밖에 자동차차료처리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을 허용범위에 추가하여 금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 업종의 공장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5. 적용특례의 일부조정(영 §82)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그 범위를 축소 조정하여 도시계획 시설중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한정하도록 이를 개정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표 2〉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길이와 폭

구 분	도로와 접하는 길이	접하는 도로의 폭
① 연면적의 합계 1,0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	2m이상, 1개소 이상	●통과도로 : 4m 이상 ●막다른 도로 - 길이 10m 미만인 도로 : 2m 이상 - 길이 35m 미만인 도로 : 3m 이상 - 길이 35m 이상인 도로 : 6m 이상
② 연면적이 합계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	● 6m이상, 1개소 이상 ● 4m이상, 2개소 이상	● 6m 이상 *광장에 접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폭 4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신설)
③ 판매시설, 위탁시설(신설) 관람집회시설, 헬스클럽(신설)로 쓰이는바닥면적의 합계1,000㎡ 이상 2,000㎡ 미만인 건축물의 대지	●대지둘레 길이의 6분의 1 이상	● 8m 이상
④ 판매시설, 위탁시설(신설) 관람집회시설, 헬스클럽(신설)로 쓰이는바닥면적의 합계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	●대지둘레 길이의 6분의 1 이상	● 10m 이상

질서는 사람속에
사람은 질서속에

건축공사의 감리와 그 책임한계

AIA의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중심으로

■
Feature
Responsibilities in
Building Construction
by Lee, Jea-Ok

V. 지방서등 계약서류의 작성과 이에따른 책임한계

미국에서는 건축사가 작성하는 것이 판례가 되어있는 시설공사의 계약서류의 범위를 입찰초대장, 입찰설명서, 입찰서, 보증서, 계약서, 시설공사계약일반 및 보완조건, 지방서 그리고 도면과 추록까지로 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계약서류들 중에서도 도면만을 제외한 여타의 계약서류를 통칭해서 Project Manual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계약서류는 크게 Project Manual과 도면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1. 입찰초대장의 작성

입찰초대장의 작성목적은 우선 당해 공사의 범위를 입찰자들에게 신속하면서도 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이 입찰초대장을 보고 입찰자들은 그 공사가 자기회사의 능력이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수행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수행가능한 공사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된다. 입찰초대장에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개요와 연면적 및 주된설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입찰서를 받는 날짜와 시간 및 장소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고 도면과 지방서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류의 구입장소와 가격을 명시하여 주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모든 계약서류 즉 도면과 지방서는 물론 계약일반조건등 건축사가 미리 작성해 놓은 일체의 계약서류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짜에 구입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어 입찰자가 이들의 모든 서류를 자기의 사무실에 구입 비치하여 전적이나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개찰후에 파손없이 돌려주는 계약서류에 대해서는 구입시 지불했던 금액을 반환까지 해주고 있다.

2. 입찰설명서의 작성

입찰설명서는 입찰서의 작성요령을 주로 명기하기 위한 서류이다. 따라서 입찰설명서는, 입찰금액을 결정하기 이전에 도면과 지방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답사하여 입찰한 금액으로 모든 계약을 완전히

수행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명기하는 서류이다.

AIA의 입찰설명서는 보통 입찰한 사람이 자기의 입찰서를 철회하기를 원할때는 개찰일 전까지는 서면요청에 의해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단 개찰일이 지난 다음에는 60일 이내에는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자는 입찰을 함에 있어서 건축사가 작성한 계약서류의 일부분에 대해 의문점이 있거나 계약서류 상호간에 모순점이 발견된다든지 또는 누락사항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건축사에게 이에대한 서면통보를 할 책임이 있는데 이와같은 통보는 적어도 개찰일의 7일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사가 이에대한 통보를 받게되면 즉시 검토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추록(Addenda)을 만들어 계약서류를 구입해간 모든 입찰자에게 건축사는 이를 통보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된다.

3. 입찰서의 작성

미국의 건설공사 지방위원회에서 발간한 Construction Specification Handbook에는 건축사가 지방서등의 계약서류를 작성할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충고하고 있다. 첫째로, 법적인 용어를 구사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건축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구사할 경우에는 소송이 벌어졌을 때에 법률가에 의해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인 낱새가 나는 용어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 위원회는 권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서 등을 작성 할 때는 법관이 지금 어깨넘어로 당신이 작성하는 지방서를 읽고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특히 건물의 시공책임이나 하자책임등에 대해 재판이 비밀비재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로, 가급적 글을 간단히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래도 말이 많다보면 책잡히기 쉬운 이유 때문도 있겠으나 시방서 등이 장황해질 경우 그에 따른 실수가 비례되어 발생 할 것을 염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입찰서의 작성은 미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안입찰에 의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으며 턴키(Turn Key Base)에 의하여 입찰하는 것은 특별한 Know-How나 경험의 축적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거의 한정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왕왕 턴키에 의해서 발주하는 것이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기술의 개발이나 경제적인 공법의 개발에 의해서 저렴한 설계와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대안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지 플랜트나 원자력 발전소등과 같이 특정한 Know-How나 기술의 축적이 전제되는 공사에 한해서 턴키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서는 보통 개찰을 한 날로부터 2개월 정도 검토 되는데 이 검토 기간 내에는 입찰서의 철회는 불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검토기간이 이보다도 훨씬 긴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2개월 정도를 검토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사가 많은 입찰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만큼의 기간은 필요한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안입찰이나 턴키등에 의한 입찰시에는 건축사나 발주자가 제출된 입찰서를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와 같이 대안입찰에 의해서 최저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입찰자로 부터 여러개의 대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찰서의 검토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개찰 그 자체가 바로 낙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찰은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의 시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와는 상이한 점이 되고 있다.

4.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Agreement)는 보통 AIA Document A 101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양식을 거의 모든 건축공사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의 제 1조에는 계약서류의 범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계약서류에는 건축사가 작성해서 배포한 추록(Addenda)에 의해 변경된 내용까지도 분명히 계약서류에 속함을 명시하여 놓고 있다.

특히 계약서상에 명시해 놓고 있는 기성고의 지불방법을 보면 우선 기성고는 매달의 같은날에 당해공사에 소요된 인건비와 자재비 및 기계경비에 상응할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하되 그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은 계약총액에 대한 일정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매달마다 정해진 날짜가 오면 총체 계약금액중 계약자 쌍방간에 약정한 일정비율의 기성금액을 지불할 준비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시공자는 정해진 공정표에 의해서 약정한 공정을 이행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게되는 것이며 이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발주자는 또한 매달의 정해진 날에 계약쌍방간에 약정한 장소나 공사현장에 보관하고 있는 공사용의 자재나 장비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의해 기성고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지불할 기성고의 계약 금액에 대한 비율은 계약당시에 쌍방간의 약정에 의해서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매월 지불하여야 할 기성고의 합계는 전달까지 지불한 기성고의 총계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공상태에 다달으면 발주자는 그 때에는 이제까지 지불한 기성고와 그 달에 지불 할 기성고의 합계가 거의 계약금액의 총액에 다달을 수 있는 만큼의 기성고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 마지막달의 기성고의 금액은, 건축사가 아직 미해결된 클레임의 해결을 위해서 또는 불완전한 공사의 제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여 지불을 유보하고 있는 금액보다는 적은 범위가 되도록 하고 있다.

즉 이와같이 마지막달의 기성고를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이 되게 함으로써 공사가 완공이 되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사의 대금도 거의 지불이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보증서의 작성

보증서는 입찰보증서와 이행보증서 그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불보증서로 구분이 되어 작성되고 있는데 AIA에서는 보통 입찰보증금은 전체 공사비의 10% 정도를 책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행보증금과 인건비 및 자재비 지불보증금으로서는 각각 100%씩을 책정토록 하고 있다.

6. 계약일반 조건의 작성

AIA의 시설공사 계약일반 조건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상의 시설공사의 집행에 따르는 제 규정과 거의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공사의 집행에 따르는 모든 분쟁이나 소송등은 바로 이 계약 일반조건에 의해서 판정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하나의 권위있고 규범적인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으면 건축사가 이를 수정하지 않고 자기가 작성하는 계약서류에 그대로 전문을 인용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상법이나 경제법등에 전문가가 아닌 건축사가 계약일반 조건을 잘못 편집하거나 작성하여 법원에서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과거의 경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A의 시설공사 계약일반 조건은 미국은 물론 유럽 및 중동과 중남미등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가장 전통있고 규범적인 계약조건 중의 하나이다.

7. 계약보완 조건의 작성

계약보완 조건은, 본래 계약일반조건이 규범적인 것의 하나를 수정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 건축사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계약 일반조건과 상치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이다. 계약보완 조건역시 계약일반조건과 마찬가지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의 작성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보통계약 일반조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정도로 밖에 수정을 가하지 않으므로써 계약조건의 잘못보완에 따라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발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8. 시방서의 작성

시방서는 도면에 명기하기에 어려운 공법이나 재료의 품질 또는 규격과 품질의 관리방법등을 명시하여 줌으로써 도면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계약 서류이다.

따라서 시방서의 작성은 도면의 작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종의 하나이다. 실제로 미국에 있어서는 시방서의 작성방법이 건축공학과의 교과목의 하나로 들어있어 이에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지않고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시방서의 작성은 도면작성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여 온 관행으로 인해 우리의 기술자들이 해외공사에서 많은 클레임에 시달려 왔던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도 많은공사에 있어서 시방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부분 몇십페이지 짜리의 특기 시방서만을 작성해 놓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의 해당공종에 대한 시방서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막연히 원용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표준시방서의 관련부분을 인용할것"이라는 규정은 너무 넓고 일반적인 것이어서 실제로 이에 따라서 적정히 공사가 수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에는 대단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기술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사의 적정성여부가 가름되어온 공사도 왕왕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사가 대형화되고 또한 전문화됨에 따라 모든 공사에 대하여 우리도 표준시방서를 모태로 하여 자기가 설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작성하는 시방서 한편만을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 Project Specification을 작성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건축사의 설계의 의지가 시방서에서 더욱 보완되어 질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스스로 의도했던 대로 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9. 추록의 작성

추록(Addenda)은 건축사가 작성하여 배포한 각종 계약서류간에 서로 상치되는 경우나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 입찰자의 문의에 의해서 또는 건축사가 자발적으로 이 같은 오류로 인해 입찰시에나 또는 공사중에 입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입찰할 날짜의 7일전까지 모든 입찰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주는 계약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건축사에 의해서 통보된 추록은 최종적인 통보의 의미가 있는 것이며 입찰자의 과실로 인해서 추록을 통보 받지 못한채로 입찰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입찰자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일전에 혹시 자기가 받지 못한 추록이 건축사에 의해서 발부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하도록 AIA에서는 조언하고 있다.

VI. 결어

건축공사는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이동성이 높고 또한 원자재를 현장에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면서도 각각의 건물의 형태나 용도마다에 이질성이 높은 공사이기때문에 정지된 공간내에서 기계적인 순서에 따라 특정제품을 계속 반복생산하는 제조업에 비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또는 감리자간의 책임의 한계가 훨씬 모호할 경우가 많고 계약의 적정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의 견해차가 현저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제까지 건축공사의 감리와 그 책임한계에 대해서 미국AIA의 사례를 예로 들어 나름대로 정리해보았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론에 지나지 않을것으로 생각이되며 보다 확실한 책임의 한계는 각각의 공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현장성을 일일히 감안하고 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특수성까지도 때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아직 발주자와 건축사 그리고 시공자간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세부적

지침으로 확립되어있지 않으면서도 건축공사 관계자간의 책임한계에 대한 소송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에서 이제까지 대부분 관행에 의해 책임을 지도록 하여온 결과,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자연히 성립하여 힘이 약한 을이 더 많은 책임을 불공평하게 지은 악순환이 계속되어온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계약자체는 뒷전으로 밀린채 많은 시공자와 하도급자 그리고 설계자들이 을이라는 미명아래 발주자의 책임을 도맡아야하는 경우도 많았고 부당한 재시공이나 재설계의 악순환을 겪어왔으며 시공자나 설계자의 기술개발 의욕은 발주자의 경제성 추구에 꺾여버린 경우도 많이 있었다. 최근들어 건물이 대형화되고 고층화 되면서 우리는 선진국의 각종 건설기술을 수용하고 변용하면서 우리의 건축기술은 놀랄만한 진전을 이루어 왔지만 건축공사 현장에서의 갑의 횡포와 을의 굴종 관계개선에 는 그다지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계자의 진정한 창작의지가 구현되고 나아가 발주자에게 쾌적한 건축환경을 제공하면서 시공자에게는 응분의 댓가를 받게하려면 공사현장에서 우선 계약이 관행보다 우선하는 풍토를 하루빨리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주자와 설계자 및 시공자등 관계자 모두의 의식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아래와 같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현행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8 1986.7.14) 31조(분쟁)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현재 사문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법률을 조속히 정비하고 중재판단을 위한 세부기준과 운영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관계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약정된 바에 의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공사의 진행과 완성을 위해서는 계약서류 자체가 막연히 다른 자료를 원용하거나 전문을 통째로 인용하는 것은 지양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정하고 있는 각종 표준시방서를 Guide Spec체계로 개편하여 모든 공사의 설계자가 계약문서가 되는 당해 공사의 시방서를 다른 자료의 전문원용없이 당해 공사만에 필요한 Project Spec을 작성토록 하여야 하고 정부제정 Guide Spec은 안내의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시공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시설공사 계약일반 조건상의 기성부분의 대가 지급에 대한 지불기간을 단축하여 현재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30일마다 총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째로, 설계자의 설계의지의 파악과 투입될 공사비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시행령상의 입찰방법 개선과 Addenda (추록) 발부제도의 도입 및 시설공사 계약서류의 구입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축공사의 현장설명을 적어도 개찰일의 15일 이전에 행하도록 하고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30일 이전에 행하도록하여 시공자가 현장의

여건이나 관련자료를 충분히 수집 분석하여 입찰가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찰서의 열람후에 입찰자들로 부터 해명을 요구 받게되는 계약서류상의 모든 오기나 모순 및 불확실점 등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적어도 입찰일의 7일 이전에 모든 입찰자가 공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문서의 하나인 Addenda(추록)의 발부제도를 도입하여야 관계자간의 책임관계에 대한 많은 분쟁의 소재를 없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공자가 손쉽게 입찰에 붙인 공사의 설계서와 시방서등의 가능한한 모든 계약문서를 충분히 검토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서와 시방서등을 현장설명일이나 또는 그 이전이라도 편리한 장소에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시설공사 입찰유의서의 관련조항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무자와 현장내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 지불에 대한 민원방지를 위하여 현행의 계약사무처리 규칙상의 보증금 납부 항목에 노무비 및 자재비 지불보증금의 납부제도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현행의 준공검사가 주로 도면 위주의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도면과 시방서가 동등하게 증시되어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목살당하지 않고 클레임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건설기술의 개발노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현행의 VE 제도 등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이 조속히 수립시행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대형공사 계약에 대한 예산회계법 시행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에 의해 대형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인입찰을 모든 건축공사에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시설공사에 관한 기술개발 촉진 및 장려시책이 실용화되어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토록 공기관촉이나 공사비의 절감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만의 신설에 그칠것이 아니라 이의 세부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조속히 제정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끝)

건설부공고 제10호

건축사자격(면허)시험시행공고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7년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시행계획(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7년 1월 23일

건설부장관

구분	건축사자격(면허)시험	건축사자격(면허)특별전형시험
1. 시험 일시	○ 1차시험 : 87년 5월 24일(일) 10시~12시 30분 ○ 2차시험 : 87년 6월 중순 시·도계시관에 공고함	○ 필기시험 : 87년 5월 24일(일) 10시~11시 40분 ○ 실기시험 : 87년 6월 중순 시·도계시관에 공고함
2. 시험 장소	○ 1차시험 : 87년 4월 30일 시·도계시관에 공고함 ○ 2차시험 : 87년 6월 중순 시·도계시관에 공고함	○ 필기시험 : 좌·도 ○ 실기시험 : 좌·도
3. 응시 자격	○ 건축사법 제7조 및 동법 제14조에 해당한 자	○ 건축사법 제16조(건축지공무원법 제14조)의 자격이 있는 자
4. 시험과목 및 시험 방법	○ 1차시험(객관식선택형)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 2차시험 : 건축개론(주관식, 동음풀이 및 객관식선택형), 건축설계(실기)	○ 필기시험(객관식 선택형) : 건축구조, 건축개론 ○ 주관식, 주관제회 ○ 실기시험(실기)
5. 시험과목 및 입부 면제	○ 다음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의 과목면제신청란에 해당 시험과목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건축에 관한 자격(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기술사)을 취득한 자 (2) 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법 제14조에 의	○ 다음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의 과목면제신청란에 해당 시험과목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건축에 관한 자격(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기술사)을 취득한 자 (2) 외국에서 건축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법 제14조에 의

6. 응시원서 및 수수료	○ 원서교부기간 : 1987년 4월 1일~4월 10일(10일간) ○ 원서합수 및 수수료 교부기간 : 1987년 4월 6일~4월 10일(5일간) ○ 원서교부 : 점수 및 수험표교부처 :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 1통(첨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 2매(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등인원관의 반형합판 : 3cm X 4cm) ○ 시험과목 및 면제면제관 받고자 하는 자는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응시수수료 : 2,000원(첨수수입인식)
8. 합격자 발표	○ 1차시험 및 필기시험합격자 : 1987년 6월 중순 시·도계시관에 공고함(건축설계실기시험 과제명 포함) ○ 최종합격자 : 1987년 10월 중순 시·도계시관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면허증교부용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
9. 2차시험 및 필기시험	○ 1차시험 및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건설부 건축과에 제출하여야 함. ① 주민등록표 : 1통(납성인 경우에는 별면사할이 반드시 기재된 증명서) ② 최종합격증명서 : 1통(결정 증명서) ③ 실무경력 증명서(단, 건축사사무소의 근무경력에 대한 건축사법 제16조 제1항의 확인을 받은 것) 또는 대학원에서 건축사법 제16조 제1항의 확인을 받은 것) ④ 친원 증명서 : 1통(3cm X 4cm) ⑤ 2매(수험번호 및 성명을 사진이면에 반드시 기재한 것) ⑥ 반신증표 : 2매(최종합격자 통보용이므로 수험인 주소, 성명, 두련번호를 정확히 기재함) ○ 응시자는 시험개시 30분전에 수험표, 주민등록표를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좌석하여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주관식선택형 : 컴퓨터를 사용중인 면제대상자를 하여야 합니다. ○ 주관식답변용 : 흑색 또는 청색의 볼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하여 동등한 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실기(건축설계) : 연필, T형자, 3각자, 스케일자, 전자계산기 이외의 기계적재도구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10. 응시 사항	○ 응시자는 시험개시 30분전에 수험표, 주민등록표를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좌석하여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주관식선택형 : 컴퓨터를 사용중인 면제대상자를 하여야 합니다. ○ 주관식답변용 : 흑색 또는 청색의 볼펜이나 만년필을 사용하여 동등한 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실기(건축설계) : 연필, T형자, 3각자, 스케일자, 전자계산기 이외의 기계적재도구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11. 응시원서 작성 주의 사항	○ 건축사자격시험(일반)과 특별전형시험 구분표시는 본인인정 없이 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결정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여 추후 제출한 정령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건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 503-7365~8, 500-2874-8)

건축표준품셈 개정내용(II)

Feature
Revised Contents of
Standard Estimating
for Building Construction
by An, Hee-Sang

5. '87표준품셈 개정 내용

2) 본 도장 공정

●도장면적의 계산

표준품셈에서 도장의 소요면적 계산은 창호의 경우 안쪽면적에 일정배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비록 문틀과 문선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를 전개하였을때 3~4 배(양판문 양면철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판문의 안쪽면적에 3~4 배의 면적배수를 곱하여 철면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도장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이를 면적으로 보정해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도장부위의 난이도에 따라 도장공품이 각각 다른 것이므로 전개면적에 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를 면적으로 보정한 것이다. 표준품셈에서 면적배수의 기본은 목재나 철재류의 문이나 창호는 안쪽면적 X 도장면적배수, 기와 및 합석면 등의 지붕은 지붕면적 X 면적배수, 철골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계산하되 보통구조(33~50㎡/ton), 큰 부재가 많은 구조(23~26.4㎡/ton), 작은 부재가 많은 구조(55~66㎡/ton)로 규정하고 수치의 하한과 상한의 구분의 그 구조가 간단한 것인가 복잡한 구조인가에 따라 구분 적용 한다.

●도료의 도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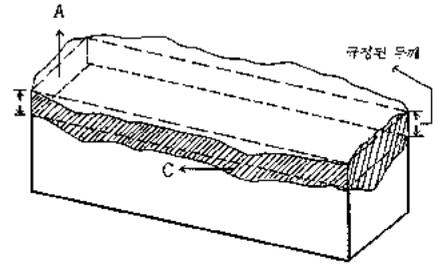
'87표준품셈 개정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소재의 바탕만들기의 정도와 본 도장에서 도료의 도포량이었다. 도료의 사용량과 도막두께와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규정된 도막두께가 유지되도록 도장한다는 것은 도장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실제의 도장 시공에 있어서는 예정사용량 만큼 도포하더라도 규정된 도막두께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때때로 문제가 된다.

본 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료량은 바탕면의 상태나 공법, 그리고 철재류의 손실등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소재의 정리가 잘된 상태하의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표준량이다.

●피도장면의 표면상태

샌드나 슛트 블라스트를 한 소지 표면이나 연마재의 종류에 따라 오히려 표면의 요철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

그림에서 보면 그림C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도료가 여분으로 필요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30~60% 정도의 도료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철저한 바탕만들기가 필요하다.



●규정된 도막두께 이상의 도장 도장의 두께를 정확하게 계량하기는 극히 힘든 일이다. 그림에서 B를 규정한 도막두께라 하면 이론상으로는 B+C의 도막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도장에 있어서는 B층의 표면과 같이 평활하고 균일한 상태로 도장하기는 곤란하고 B의 규정도막 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결국 A부분과 같은 불룩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두께가 칠하는 후막형 도료일수록 불균일성은 크게 나타난다.

●도장방법과 외기의 상태에 따른 손실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장방법은 붓, 로울러, 스프레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스프레이 방법은 외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풍속과 스프레이 노즐에서부터 피도포면까지의 거리에 따라 손실량은 많은 차이가 있다.

재료의 손실량과 작업조건

종류	스프레이 거리		
	30cm이하	30cm이하	50cm이하
0 m / sec	loss 9%15%	loss 9%20%	loss 9%20%
1 m / sec	loss 9%20%	loss 9%27%	loss 9%37%
2 m / sec	loss 9%27%	loss 9%35%	loss 9%45%
3 m / sec	loss 9%35%	loss 9%45%	loss 9%70%

도장방법에 따른 손실량은 신너등 첨가물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붓, 로울러 칠의 경우 10~15%에서 스프레이의 경우 15~30% 정도이다.

●이론 도포량에 대하여

도장작업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도료의 양은 바탕소재의 상태 공법 그리고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실제 도포량 보다는 이론 도포량을 중요시하고 이에 따라 도장공사를 설계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운 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선전율 (spreading rate : 도장면적/도료의 단위량) 보다 낮지않게 철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료는 제조 회사마다 권장하는 도막두께나 제품의 비중이 다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KS규정도 일부 종류의 도료이외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의 제정이 시급하며,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료의 할증량 2%도 앞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은 '87개정된 도장공사의 표준품셈 기준품만을 예시한 것이다.

●상기의 각 표에서 2회 및 3회의 재료량 및 품은 각 횟수별 재료량 및 품을 합산한 수치이다.

●상기 각 표에는 재료의 할증을 및 소운반품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각 표에는 바탕만들기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별도 제상한다.

●기구손료는 품(인건비)의 2%를 별도 가산한다.

●비계를 사용하여 도장을 할 경우에는 높이에 다음 할증율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지하층 및 1~3층	4~6층	7~9층	10~12층	13~15층	16~18층
0	5%	8%	12%	16%	20%

●천정철의 경우에는 상기 각 표의 재료량 및 품을 20%씩 가산한다.

●외벽에서 층의 구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층고를 3.6m로 기준하여 환산하고 내벽의 경우에도 3.6m를 기준하여 환산 적용한다.

●조합페인트철의 경우는 붓으로 칠할 때를 기준한 것이므로 뿔칠을 할 때에는 분무기 1회 뿔기에 도장공 0.003안/㎡을 기준으로 한다.

●녹막이 페인트철의 경우 (㎡당)과 (ton당)으로 비교 설계하던 것을 (㎡당)으로 단일화 하여 계산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나. 잡철물 제작 설치

건설공사의 다양한 시공부품 중에는 현장에서 제작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장에서 제작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외주에 의하는 것이 있다. 이는 건설산업이 점차 분업화되고 다양화되는 현상으로 표준품셈도 이러한 부분을 모두 수렴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천차만별한 각종 잡철물의 제작 설치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거나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원가계산에 의하여 계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각종 잡철물의 제작 설치품은 오래전 부터 불합리함이 불치의 병으로 인지되어 왔으나 보완하지 못해오다가 이번에 어느정도 현실화한 품이다.

개정된 잡철물 제작 설치품의 구성은 우선 각종 잡철물을 간단, 보통, 복잡 구조로 구분하고 간단한 구조의 품을 기본품으로 하여 보통구조나 복잡구조의 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 품셈에서는

잡철물 제작 설치품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천차만별한 잡철물의 종류와 재질 그리고 구조 등을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열거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설계자에게 제한을 가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본 품셈의 적용기준을 개념적으로 보면 일반 철재류의 잡철물 제작 설치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므로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레스 등)이나,

●녹막이 페인트 (㎡당)

구분	단위	1회	2회	3회
녹막이페인트	ℓ	0.077	0.154	0.174
신너	ℓ	0.004	0.008	0.012
연마지	매	0.05	0.05	0.05
도장공	인	0.019	0.03	0.046

●조합페인트 철 (㎡당)

바탕별	구분		철 수 량			도 장 공 (인)		
	재료명	단위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목재면	조합페인트	ℓ	0.090	0.168	0.237	0.02	0.041	0.061
	신너	ℓ	0.004	0.008	0.011			
	피티	kg	-	0.03	0.03			
	연마지	매	-	0.07	0.14			
철재면	조합페인트	ℓ	0.078	0.159	0.235	0.023	0.046	0.065
	신너	ℓ	0.004	0.008	0.012			
	피티	kg	0.08	0.08	0.08			
	연마지	매	0.05	0.10	0.15			
아도금연면	조합페인트	ℓ	0.084	0.171	-	0.013	0.03	
	신너	ℓ	0.004	0.008	-			
콘회크리축트·폴모라스터면	조합페인트	ℓ	0.095	0.190	0.269	0.027	0.055	0.079
	신너	ℓ	0.004	0.008	0.012			
	피티	kg	0.06	0.06	0.06			
	연마지	매	0.25	0.50	0.50			

●에나멜철 (㎡당)

바탕별	구분		철 수 량			도 장 공 (인)		
	재료명	단위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목재면	에나멜	ℓ	0.089	0.168	0.238	0.043	0.078	0.113
	우드프라이머	ℓ	0.006	0.006	0.006			
	신너	ℓ	0.01	0.02	0.024			
	연마지	매	0.125	0.25	0.375			
철재면	에나멜	ℓ	0.079	0.158	0.227	0.052	0.104	0.135
	신너	ℓ	0.008	0.016	0.02			
	연마리	매	0.125	0.25	0.25			

특수철물(특수용도, 특별규격, 특수재료), 철골공사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제조업분야에서 대량 생산되는 것들은 본 품의 적용이 오히려 불합리 할 것이다.

● 구조별(용접개소, 형상, 경량철재, 박판의 사용등) 재료 및 품의 할증 한도.

간단구조	보통구조	복잡구조
기본 품	기본품×1.2	기본품×1.4

● 잡철물의 구조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간단구조 : 자재수나 용접개소가 많지 않고 간단히 제작 설치되는 잡철물류

○ 보통구조 : 자재수나 용접개소가 보통이거나 경량철재 또는 박판으로써 절단, 절곡, 용접 등 제작 설치가 복잡하지 아니한 잡철물류

○ 복잡구조 : 자재수나 용접개소가 많고 형상이 복잡하거나 경량철재 또는 박판으로 절단, 절곡, 용접 등 제작 설치가 복잡한 잡철물류

● 본 품셈의 재료에서 주자재(철관, 앵글, 파이프)는 별도 계상한다.

● 본 품을 적용할 수 있는 잡철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핏트 및 민홀뚜껑류 등

○ 계단 및 난간철물류 등

○ P. D. 문 DC문 환기구철물 등의 간이 창호류

○ Checked Plate, Expanded Metal 류등

○ 기타 철골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한 철제품의 제작 설치

●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구분	단위	소요량			비고	
		철물제작	철물설치	제작설치		
1. 재료	용접봉	kg	15.71	2.77	18.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계상 필요시계상
	산소	ℓ	5.355	945	6.300	
	아세치렌	kg	2.4	0.4	2.8	
	유지	ℓ	(0.17)	-	(0.17)	
	볼트	개	(0.46)	-	(0.46)	
2. 품	철공	인	21.80	5.85	27.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 소재에 따라 철판공 필요시계상
	비계공	인	(4.0)	(0.71)	(4.71)	
	인부	인	0.56	0.10	0.66	
	용접공	인	2.21	0.39	2.60	
	특별인부	인	0.63	0.11	0.74	
3. 기타	용접기손료	시간	17.71	3.12	20.83	
	전기소요량	Kwh	107.1	18.9	126	

다. 목재 거푸집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거푸집의 종류는 목재거푸집, 합판거푸집, 강재거푸집, 제치장거푸집, 유로폼(Euro Form), 갱폼(Gang Form), 터널폼(Tunnel Form) 등이 있다. 목재거푸집의 개정내용은 품이나 재료량을 보완한 것이 아니고 품의 적용방법을 편리하도록 개정한 항목으로 종전의 품셈은 주자재(판재와 각재)에 대한 사용 고재량을 사용 횟수마다 별도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회 사용시를 기준수량으로 하여 사용횟수별로 1회 사용시의 재료비와 노무비에 일정 비율만을 곱하여 단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사용 고재량이 이미 감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 고재비를 빼내지 않아야 한다.

또한 폼타이(Form-Tie)의 사용시 콘크리트 측압에 관계없이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1.07조로 정한 것을 콘크리트의 측압에 따라 규격별로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자의 재량과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 목재거푸집의 사용횟수별 계산방법

• 재료비(A) = A₁ + A₂ + A₃ + A₄ + A₅

판재 : 0.03 × 0.7 × A'₁ = A₁

각재 : 0.038 × 0.7 × A'₂ = A₂

철선 : 0.29 × A'₃ = A₃

못 : 0.25 × A'₄ = A₄

박리제 : 0.19 × A'₅ = A₅

• 노무비(B) = B₁ + B₂

형틀목공 : 0.5 × B'₁ + B₁

인부 : 0.4 × B'₂ = B₂

• 따라서 1회 사용시 재료비는 A이고 노무비는 B이므로

2회 사용시	재료비	1회 사용시 재료비(A) × 57.7%
	노무비	1회 사용시 노무비(B) × 63%
3회 사용시	재료비	1회 사용시 재료비(A) × 46.6%
	노무비	1회 사용시 노무비(B) × 51.6%
4회 사용시	재료비	1회 사용시 재료비(A) × 39.7%
	노무비	1회 사용시 노무비(B) × 45.9%

1회 사용시 판재와 각재에 0.7을 곱한 것은 사용 고재평가가량 30%를 공제하기 위한 것이며, 철선, 못 박리제의 경우는 사용 고재가 없이 완전히 소모되는 소모재로 보아 계산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못의 경우는 약간의 사용고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수량은 전체비용에 비교할 때 아주 미세한 것이므로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생략한 것이며, 2회 이상 사용의 경우는 사용고재를 별도로 감안하지 아니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아파트 등의 공사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유로폼, 갱폼, 터널폼등에 대하여도 재료량에 대한 품셈비가 필요하나 각 제작회사마다 규격과 시방이 다르므로 당분간은 구입단가에 대하여 공기에 대한 손율을 적용하거나, 시중 임대료에 의하여 재료비용을 산출할 수 밖에 없다.

라. 타일공사

타일공사의 품은 '86표준품셈 개정시 전면 개정된 항목이나 그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모르타양을 조정하고, 공구손료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해설등을 보완한 항목이다.

● 압착공법과 밀착공법의 품을 통합하고 밀착공법의 경우 공구손료(노무비의 3%)와 진동기 손료(타일공품의 5%)를 각각 계상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진동기 손료를 포함한 공구손료로써 노무비의 6%(압착공법의 경우는 노무비의 3%)를 계상토록 간소화 하였으며,

● 불임모르타와 줄눈모르타의 수량 및 해설을 보완하였다.

불임모르타는 5mm부터 8mm까지 두께별로 소요 재료량을 계산 포기하였으나 압착공법은 5~7mm, 밀착공법에서는 5~8mm 두께로 시방되어 있으므로 설계에 착오없기 바라며, 특히 줄눈모르타에 포함되는 혼화재나 색소등도 설계자가 취함에

맞게 설계하여 계상토록 하였다.

● 크링커타일 붙이기

크링커타일 품은 바탕정리품을 별도 계상토록 신설하고 붙임재료와 타일붙이기품을 분리 정하였다.

어느 현장에서나 타일공사시 하도급자와 원도답자간에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은 기존의 품에서 바탕정리품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된 품에서는 타일공사의 바탕정리품을 명시하므로써 타일붙이기 전에 반드시 바탕을 정리하도록 하므로써 타일의 결함(백화, 탈락)을 방지하고 품질관리에 기여토록 유도하였다.

● 크링커 타일

가) 붙임재료

구분	108㎡	120㎡	152㎡	180㎡	정면 57~108 안면 40~90	정면 110~227 안면 57~110
시멘트	5.3	5.5	5.8	6.1	5.3	6.1
모래	9.092	9.032	9.063	9.003	9.082	9.043

○재료의 할증량 및 줄눈모르터는 포함되어 있다.

○바탕고르기의 재료 및 품은 타일의 바탕고르기에 따라 가산한다.

○혼화재 및 줄눈용 색소는 별도 계상한다.

나) 타일붙임품

구분	108㎡	120㎡	152㎡	180㎡	정면 57~108 안면 40~90	정면 110~227 안면 57~110
타일	0.18	0.18	0.16	0.16	0.20	0.19
줄눈	0.016	0.016	0.016	0.016	0.024	0.016
안부(줄눈)	0.072	0.072	0.064	0.064	0.08	0.08
안부(착소)	0.024	0.024	0.024	0.024	0.024	0.024

○본 품은 바닥붙임을 기준한 것이다.

○소운반품은 ㎡당 0.06인을 가산한다.

○공구손료는 품의 3%를 별도 가산한다.

○본 표에는 붙임재료의 비빔품이 포함되어 있다.

마. 후로어 하드너바르기

표준품셈에서 정하고 있는 후로어 하드너바르기 품은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시공할 때와 모르터 마감후 시공할 때의 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개정품셈은 모르터 마감후 시공할 때의 경우 미장공 0.18인을 0.09인으로 조정하였다. 이것은 중복 계상할 우려가 있는 미장공 0.09인을 삭제한 것이므로 삭제된 미장공 0.09인은 모르터 시공에 따른 품이므로 미장공사에서 계상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하드너 시공시 미장공의 대기시간 야간작업등은 야간작업등에 다른 할증등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다.

○모르터 마감후 시공할 때

구분	단위	수량	비고
미장공	인	0.09	하드너 시공
인부	인	0.09	0.09인

바. 건축물 현장정리

건축공사 현장에는 공사도중의 청소는 물론 공사후 뒷정리 품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종래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목구조의 품만을 정하고 있던 품을 구조별로 신설(조적구조, 철골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구조)하여 보완하고 목구조 품을 조정함으로써 본 품은 각종 검사 검측시는 물론 준공시 옥내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에 소요되는 품으로 청소시에 소요되는 청소용 소모품(취발유, 텡마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건축물 현장정리

구분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보통인부(인)	0.15	0.07
조적조	0.07	0.07
목구조	0.07	0.15

사. 벽돌쌓기(치장쌓기)

벽돌치장쌓기 품은 단위당(1,000매당) 소요되는 시멘트량 및 모래량을 조정하였다.

야. “제1장 적용기준”의 체계정비 표준품셈 적용의 근간이 되는 “제1장 적용기준”내용의 체계를 정비 보완하여 적용기준과 방법, 재료, 품, 기타항목으로 대별하여 구분정리 하였으며 특히 공사비 산정시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와 건설공사품질 시험령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 계상을 명문화 하였다. 또한 발생재의 처리에 강제 스크랩(Scrap)의 공제율을 발생량의 70%를 사전에 보완하였다.

6. 표준품셈의 개정방향과 절차

● 건축공사 현장의 기술적 관리가 필요하다.

품셈은 단위작업물량당에 소요되는 자재, 인력 및 소요장비등의 량으로서 현장의 여건, 계절, 기후등에 따라 각각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여 똑 같은 조건의 현장여건과 능력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현장의 작업이 끝난 다음에야 그 현장에 맞는 품셈을 알 수 있겠으나 이것도 적절한 조건과 작업환경, 기후여건 등이 맞았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장에 재료를 반입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다양한 생산수단을 선택 이용하는 기술적 관리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생산과정에 관한 기술 즉 생산 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기술과 생산기술의 체계화를 추진하여 노동집약적인 생산방식에서 과학적 합리성이 뒷받침하는 생산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과학적인 품질관리기법의 도입은 물론이고 많은 시공 실적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

이것은 곧 차후 비슷한 조건의 현장에서 가장 적합한 품셈이 될 것이며 이들을 종합관리하고 개선 발전시키므로써 가장 현실적이고 사용에 편리한 품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표준품셈의 개정방향과 방법

표준품셈의 개정방향은

- 현행품셈상에 현실에 맞지 않는 품의 개정
- 인력위주의 품에서 기계화시공 품으로의 개정
- 신자재·신공법 및 신장비의 사용을 위한 품의 제정
- 도입기술 및 국내기술의 축적을 유도할 수 있는 품의 발굴 및 제정이다. 이를 위하여 건설부에서는 매년초 개정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현업기관에 중복 배정하여 실시토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작성 이를 표준품셈심의 위원회(분과심의 및 종합심의)에 상정하여 개정 보완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 실사과정이다. 표준품셈의 현장실사는 우선 실사대상 공사의 선정이다. (끝)



李甲造
1947. 1.29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혜성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석촌동290-7
414-0581



李祥杓
1953. 10. 17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영건축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101-21
544-6272



金在承
1950. 3.12
연세대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재
건축사사무소 건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201-4
540-0408



鄭龍浩
1955. 10. 17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무량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5-3
543-4526



金鍾云
1951. 1.7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미조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1531-8
582-4932



嚴正元
1956. 6. 29
남산공전 건축과
태원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71-5
552-1980



金仁煥
1952. 4. 1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명정건축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320-7
488-7139



姜明煥
1954. 7. 25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시그마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71-2
542-6101



承孝相
1952. 10. 26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219
763-2211



李珉煥
1928. 4. 15
상지공업학교 건축과
상지건축사사무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562-35
66-6040



李永妙
1952. 11. 11
연세대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하건축
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1159
983-3803



鄭鉉榮
1953. 5. 28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선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영동50-2
2-4710



鄭鍾榮
1950. 2.22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219
763-2211



韓乘辰
1950. 7. 18
전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한진건축사사무소
전북 남원시 동충동169-2
32-3422



朴姪聲
1952. 12. 5
전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미문
전주시 서노송동563-7
75-3655



李殷燮
1949. 6. 2
안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민건축사사무소
수원시 교동67-1
42-3455



河成奎
1955- 5. 12
동의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하나
전주시 중앙동13-28
2-5887



李敏虎
1955. 8. 30
부산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미조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266-3
88-8822



朴貞福
1950. 6. 21
한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정인건축사사무소
제주시 2도2동1176-31
53-8233



李弘基
1956. 11. 21
부산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종합건축사사무소 미조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1동266-3
88-8822



李吉昕
1950. 10. 29
한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대원건축사사무소
제주시 2도 2 동1736-13
52-1173



盧豊基
1954. 8. 24
인덕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태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163-24
333-5956



洪昌均
1955. 4. 26
한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해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600-6
678-0418



許光鎬
1953. 1. 2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하건축
서울시 성북구 길음 3동1159
983-3803



安聲燦
1954. 6. 26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예림
대전시 중구 대흥동452-65
526-1991



鄭址玼
1957. 7. 23
철도고등학교 건축과
부흥건축사사무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187-1
813-2662



沈曠燮
1959. 9. 25
인천공업전문대학 건축과
심건축사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764-16
6-1193



權宅富
1949. 7. 20
영남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대보
서울시 도봉구 공릉동833-15
977-2446

제1회 理事會 개최

본협회 87년도 제1회 理事會가 1월2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安箕泰 회장 주재아래 부회장, 이사, 감사등 임원전과 서울특별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제12회 이사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부의사항, 협의사항의 순서로 진행 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업무보고

감리업무 개선방안 대처

월간주요업무 보고사항중 정부가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합리화 대책과 관련되는 건축공사 감리업무 개선방안에 대하여 앞으로의 협회차원에서의 대처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협회에서 경제기획원주관 대책연구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설계와 관련되는 감리업무는 건축사의 고유업무임을 명백히 개념화하도록 함.
- 이 문제는 전임원이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등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협의추진의 편의상 지방임원을 제외한 전임원(서울지부장 포함)으로 대책위원으로 하여 적극대처키로 협의함.

각 위원회 위원장 발표

제12회 이사회(1986. 12. 15)에서 각 위원회 위원은 회장단에 위임하여 선임하기로 하였으나 理事會와 委員長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회장의 희망에 따라 우선 위원장만 결정되었는데

위원회별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 윤리위원회 위원장... 황재호 이사
- 제도위원회 위원장... 윤 옥 이사
- 법규위원회 위원장... 강기세 이사
- 홍보위원회 위원장... 조춘원 이사
- 감정위원회 위원장... 박영익 이사
- 국제위원회 위원장... 송기덕 이사
- 건축위원회 위원장... 이문우 이사
- 편찬위원회 위원장... 안장원 이사
- 연수위원회 위원장... 이영일 이사
- 설계경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한용섭 회원
- 정화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장식 회원

부의사항

제 1 호의안 : 건축행정 상담실 업무이관

건축행정 상담실은 서울지부에서 운영하되 예산은 기존 서울지부 사업비로 운영키로 결의.

제 2 호의안 : 설계도서 신고의 사무취급규정 및 직인규정개정(안) 현행대로 두기로 결의.

제 3 호의안 : 건축사연급 규정개정(안) 운영위원 3인을 5인으로 증속키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승인.

제 4 호의안 : 보수규정개정(안) 종전의 보수체계를 기초로 하후 상박 원칙하에 평균 5%폭 이내에서 인상조정을 한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제 5 호의안 : 신규직원채용 광주직할시지부 신설에 따른 사무국장 신규 채용과 현 전라남도지부 총무과장이



87년도 제 1 회 이사회

광주직할시지부 총무과장으로 전보발령되어 전라남도지부 총무과장이 공석이 됨에 따른 신규채용을 위해 지부에서 추천한 다음 사람을 원안대로 승인.

광주직할시지부 사무국장
성명 공종석
생년 1942. 11. 19
학력 한국외국어대학 무역대학원 수료
경력 71. 6~84. 10 대한무역진흥공사
84. 10~현재 세진공업사 자영

전라남도지부 총무과장
성명 이정수
생년 1954. 4. 10
학력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 73. 6~79. 9 도아실업
80. 3~83. 1 남도건설
83. 1~86. 10 광주시동구청 수도과 및 세무과

제 6 호의안 : 서울특별시지부 강북별관체제
서울특별시지부는 83년 11월 3일부로 강북별관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있으나 지부산하에 8개분소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87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지부 제 2 회 간사회 협의에 따라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87년 2월 1일부로 폐쇄키로 하였다.

제 7 호의안 : 긴급대책협의회 설치.

예기치 못한 협회관련 주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책 협의회의 구성(안)이 제 7 호의안으로 산정되었는바 원안대로 설치키로 결의 하였으며 위원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키로 함

협의사항

제 1 호의안 : 87사업비중 조사연구비, 홍보선전비 사용에 관한 건.
87년도 사업비 예산중 조사연구비 및 홍보선전비가 각 위원회별로 책정되어 있으나 회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에는 특정조사연구 사업용으로 그 예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제 2 호의안 : 공사감리업무 실적회비 징수방안.
공사감리업무는 설계업무와 같이 공적업무에 대한 그 댓가부으로 강북별관을 설치하여도 징수기준이 없어 설계업무 실적회비 징수와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동업무에 대한 실적회비 징수에 대한 방안을 협의코자 상정함바 실적회비 징수방안 등은 소위원회를 구성 위임토록 하여

현의내 내용을 차가 이사회에
부의토록 결정 하였으며
위원선임은 회장에 위임.

제 3 호의안 : 건축사 사무소가
없는 시·군 건축사들에 대한
원거리 감리기피를 방지함으로써
건축사 업무의 불성실성을
예방하고 지역 건축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사
사무소가 없는 시·군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상정함 바 다음과 같은 협의방안을
기초로 계속 연구기로 합의.

- 인접지역 건축사 사무소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
-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타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건축사는 이 구역에 들어와
업무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방안

제 4 호의안 : 검사대행
건축업무에 대한 공사감리
개선(안) 내역.
건축사의 검사대행 건축업무의
지속성여부 및 본협회의
공사감리자 선정에 대하여
감리자의 원거리 감리기피나 또는
불성실 감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의 협의를 상정한 바
다음 검토사항을 토대로 계속
연구를 추진하기로 협의.

- 원칙적으로 설계자가
공사감리업무분할 일괄 수행토록 함.
- 상설점검반 설치를 검토.
- 위반 건축심의 검토위원회 설치
(일본제도)를 검토.

제 5 호의안 : 건축허가
설계 도서검토 강화방안
위반 건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한
(설계도서 지침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현재 주택설계도면
(8종류)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도면의 종류에 대하여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건설부에서는 기본작성 도면을
본협회 설계도서 검토시 및
허가청의 건축허가시 도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으로 있어 그
진행방안을 협의토록 상정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 사항을 토대로 하여
전국적으로 검토조건이 통일되도록
추진키로 협의.

- 설계도서 검토 전담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부심정에 맞도록
결토하는 방안.
- 도서검토 지침서 작성 요령
• 설계도서 모범사례도 작성

제 6 호의안 : 8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본협회 87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을
협의함.

建築士設計作品巡廻展 개막

2월16일, 부산직할시
시민회관에서 제12회 건축사
설계작품 순회전과 제1회
신인학생 설계공모전의 첫 막이
오름으로써 본협회의 회원의
설계작품 지방순회 전시회가 시작
되었다.
민정당의 박종출 의원, 민정당
지구당 위원장 김진재씨, 박규열
부산지방국도국토관리청장, 우상복
부산시 도시국장, 박치권 건설국장
김성일 건축과장, 김중진 주택과장
등 정계의 관계 인사들 비롯
심훈섭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부장
박충근 대한건축학회 부산

경남지부장, 김상호 삼야공업 대표
등 건축계 인사들과 본협회 안기태
회장, 송기덕 이사, 황재호 이사,
임인혁 사무처장, 정환호
부산지부장, 김택진, 허선행,
김규태, 류광택 부산지부 역대회장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전시회
개요설명, 테이프 커팅, 전시작품
향반, 지속소연의 순서로 개막식이
진행 되었다.
이날 전시된 작품은 건축사 작품
45점, 신인·학생작품 42점, 도합
87점에 달했는데 박종출 의원은
건축사설계 작품 전시회는

건축문화 예술의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뜻있는 행사라고
전시회의 의의를 평가 했으며,
부산일보가 2월12일자
문화면으로 전시회 개최소식을
앞면에 이어 2월17일자에는
4면기사와 함께 사진을 실리며
전시회 개최내용을 보도 했다.
KBS-TV도 2월16일 저녁 7시
자방송스 시간에 전시회 일정을
앞했으며 MBC-TV도 저녁 7시
자방송스의 전파에 전시회 일정을
실었다.

개막 당일 작품 관람자는 회원
40명, 일반 30명, 학생 80명 등
1백50명에 이르렀고 축하 화분도
각계에서 담겨 하였다.
부산지역에서의 전시는 2월20일
까지 개최되며 그 뒤의 순회전시
일정은 다음과 같다.
광주 3.18~3.23 광주학생회관
대전 3.26~3.31 대전MBC
문화공간
대구 4.3~4.8 대구시민회관

한편 화분을 보내어 전시회를
축하해 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접수순)
• 박종출 (민정당 국회의원)
• 장석만 (민정당 국회의원)
• 유용수 (민정당 국회의원)

건축사설계작품순회전 개막식(부산시민회관)





안기태회장을 예방한 홍콩주택청건축공무원일행



전시작품을 둘러보는 중화민국건축사공회 회원일동

- 김진재 (민정당 지구당 위원장)
- 윤석순 (민정당 지구당 위원장)
- 이중호 (국립부산개발 대학장)
- 성훈섭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부장)
- 김상연 (대한건설협회)

- 부산지부장
- 경주영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 김성철 (전문건설협회 부산지부장)
- 박규열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장)
- 김신희 (삼이요업대표)

홍콩住宅庁 建築公務員 내방

1월24일 오전 홍콩주택청 선임건축사 스토레이 외 10명이 본협회로 安箕泰 회장을 예방하고 우리나라 건축물과 본협회의 발전상을 중심으로 간담을 하였다.

내빈들은 安箕泰 회장으로 부터

협회의 발전상을 소개받은 다음 선물을 교환하고 본협회 대강당에서 한국건축을 요약 소개하는 멀티비전과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건축사 설계작품을 참관 하였다.

中華民國 建築師公會 會員來訪

2월3일 오전 중화민국 건축사공회 전국연합회 경영이사 켄·충·쑤씨 외 19명이 본협회를 방문하고 한국의 건축과 본협회의 발전상을 소개 받았다.

회장을 대신 金基壽 부회장이 환영사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았으며 선물교환, 간담, 멀티비전 참관, 기념촬영 등을 하였다.

設計作品集 발간

자연형 태양열 주택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 현상설계 공모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을 모아 아담한 작품집을 꾸며냈다.

이 작품집은 곧 전회원에게 배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의 다세대 주택 설계지침도 보급계획에 의거 지침도 5백부를 제작,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지침도도 역시 다시 찍어 회원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 회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自体監査 실시

87년도 제1회 임시총회에 대비한 본부 및 각 시도지부의 업무 전반에 걸친 감사가 柳根洙, 鄭孝煥 감사에 의해 2월2일부터 3.14일 까지 실시되고 있다. 감사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음)

- 제주도지부 ... 2.3~2.4
- 부산지부 ... 2.4~2.5
- 경남지부 ... 2.6~2.7
- 광주지부 ... 2.9~2.10

- 전남지부 ... 2.11~2.12
- 전북지부 ... 2.13~2.14
- 대구지부 ... 2.16~2.17
- 경북지부 ... 2.18~2.19
- 충남지부 ... 2.20~2.21
- 충북지부 ... 2.23~2.24
- 경기지부 ... 2.25~2.26
- 인천지부 ... 2.27~2.28
- 강원지부 ... 3.2~3.3
- 서울지부 ... 3.4~3.6
- 부 부 ... 3.9~3.14

建築士補助員 教育

전라남도 지부(지부장 金(模)는 2월5일 87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지부신하 건축사보조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였다.

사부소당 2인씩 모두 77명이 교육에 응하였는데 정동주 사무국장 김재성 전남도 농촌 주택계장 김봉규 전남도 주택행정계장이 각각 교육을 담당하였다.

건축사보조원 교육





반경

□ 서울지부

- ▲ 김지덕 / 서울환경 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논현동117-3 / 562-7549
- ▲ 오형석 / 건축사사무소 조형 / 성동구 자양동220-149 / 446-5331
- ▲ 서현진 /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미건사 / 영등포구 당산3동387-3 / 634-3261
- ▲ 신국범 · 신무성 · 이규찬 /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논현동204-4 / 546-5381, 5382, 5383
- ▲ 신덕항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화 / 서대문구 홍은동441-3 / 388-2616
- ▲ 한세현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화 / 서대문구 홍은동441-3 / 388-2616
- ▲ 조동호 / 용진건축사사무소 / 성동구 자양동219-5 / 445-4804
- ▲ 박규영 / 건축사사무소 오성 / 서대문구 충정로3가368 / 363-6805
- ▲ 박광진 / 건축사사무소 수복 / 강동구 잠실176-4 / 415-8902
- ▲ 송기성 / 기성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320-15 / 473-4400
- ▲ 오정권 · 박경호 / 건축사사무소 환경계획정인건축 / 강남구 청담동47-3 / 541-3793
- ▲ 송상철 / 건축사사무소 유원 / 강동구 성내319-17 / 478-7012
- ▲ 박기점 / 박기점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 북2동245-8 / 975-0651
- ▲ 노진복 / 청명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319-17 / 477-8823
- ▲ 김배격 / 삼무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삼전동22-4 / 412-4002
- ▲ 이영모 / 건축사사무소 하건축 / 성북구 길음3동1159 / 983-3803
- ▲ 진봉수 / 전우구조건축사사무소 / 종로구 낙원동109-1 / 744-9953
- ▲ 박정원 · 박선길 · 문숙경 · 백정열 · 이복 / 종합건축사사무소 정건축 / 강남구 논현동208-14 / 549-5395
- ▲ 권영세 · 이웅배 · 강영일 · 임동운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익·아진 / 강남구 논현동208-14 / 549-0686, 0687 548-2347, 547-3637
- ▲ 이종영 / 서울건축사사무소 / 은평구 용암동103-12 / 387-2921
- ▲ 정용찬 · 민경진 · 이충열 / 강남구 서초동1318-1 / 568-7079, 7148, 4347

- ▲ 김두호 / 단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668-18 / 553-8248
- ▲ 백남규 / 주공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302 / 482-5606
- ▲ 이명준 / 상건축사사무소 / 강서구 화곡동987-7 / 698-5253
- ▲ 김관중 / 서울삼미건축사사무소 / 강서구 화곡동987-7 / 698-5252
- ▲ 차명수 / 건축사사무소 현대건축 / 강동구 성내동551 / 478-6422
- ▲ 김영창 / 영창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551 / 484-5519
- ▲ 정해덕 / 강남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논현동117-3 / 540-6804
- ▲ 전태중 · 문영길 / 청림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방배동1669-3 / 533-7381~2
- ▲ 김희수 · 김유철 · 이창두 · 한시준 / 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반포동67-1 / 533-2325
- ▲ 박선홍 · 이장백 / 단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668-18 / 554-4852
- 부산지부
- ▲ 김중철 / 동진예건건축사사무소 / 중구 중앙동4가82-3 / 462-8787
- ▲ 박만식 / 신일남일건축사사무소 / 진구 부산동402-6 / 87-7020
- ▲ 안일성 · 엄철현 / 건축사사무소 아키안 · 한울 / 동구 초량동1169-11 / 44-3737
- ▲ 이동배 / 건축사사무소 동서 / 동구 초량동1163-10 / 463-9845
- ▲ 김동희 · 정희선 / 건축사사무소 동하 / 진구 부전동467-7 / 88-4621
- ▲ 이진영 / 건향건축사사무소 / 동구 초량3동1160 / 22-8812
- ▲ 김명필 / 구성, 모양, 성종합건축사사무소 / 중구 중앙동4가81 / 463-1313
- ▲ 황덕연 / 한라건축사사무소 / 동구 초량동1212-22 / 44-3886
- ▲ 백성기 / 백성기건축사사무소 / 남구 남천동6-21 / 622-5218
- 대구지부
- ▲ 이무상 / 건축사사무소 정원 / 수성구 범어동33-16 / 756-2407
- ▲ 민병덕 / 은성건축사사무소 / 동구 신암동20-15 / 955-4966
- ▲ 김인호 · 이성 / 건축사사무소 성건축 / 중구 동인2가113-4 / 422-4909
- ▲ 최창규 / 보성건축사사무소 / 서구 평리4동127-31 / 555-8158

□ 인천지부

- ▲ 김봉섭 / 신화건축사사무소
- ▲ 문귀등 / 예언건축사사무소
- 광주지부
- ▲ 신정채 · 임재식 · 김우석 / 한국·금성 금석종합건축사사무소 / 북구 누문동138 / 34-2492, 34-1750
- ▲ 현준철 / 새광건축사사무소 / 동구 금남로2가7의3 / 22-8850
- ▲ 홍종식 · 조민형 · 정재경 / 종합건축사사무소 미진·한양·신진 / 22-9805, 22-5466, 22-0359
- 경기지부
- ▲ 백종성 / 백종성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인계동592-1 / 36-6208
- ▲ 김세주 / 미도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교동22-3 / 42-5316
- ▲ 서낙규 / 이화건축사사무소 / 부천시 원미동66-4 / 653-4004
- ▲ 유판열 / 유신건축사사무소 / 부천시 원미동90-1 / 62-3553
- ▲ 김재환 / 한성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원천동85-21 / 34-0911
- ▲ 정충조 / 대진건축사사무소 / 부천시 심곡동87-6 / 653-5454
- ▲ 함재철 / 건축사사무소 은성 / 안양시 안양동504-4 / 2-3224
- 강원지부
- ▲ 노병용 / (주)삼한건축사사무소
- 충남지부
- ▲ 조상연 / 조상연건축사사무소 / 대전시 대천동618-56
- 제주**
- 충북지부
- ▲ 이종성 / 대천건축사사무소 / 충주시 역전동643-27 / 43-3340 / 87.1.14
- 전북**
- 서울지부
- ▲ 이인식 / (주)우양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논현동78-7 / 87.1.26 / 경북
- 경기지부
- ▲ 한기화 / 한기화 · 김세주건축사사무소 / 수원시 교동22-3 / 87.1.5 / 서울
- 전남**
- 서울지부
- ▲ 박희중 / 종합건축사사무소 동도건축 / 강남구 역삼동816-3 / 556-2005



1 월호

회원작품

한국은행춘천지점/이영희/8
 서울힐튼호텔/(주)서울건축/11
 신동아쇼핑센터/최병천·강영호/14
 대한생명인천지점/최병천·강영호/18
 고신의료원/방의재/20

회원PLAZA

회장 신년사/오용석/6
 건설부장관 신년사/건설부/23
 협회소식/26
 새로 개편된 위원회조직 및 명단/28
 각 위원회위원장 신년설계/31
 새해를 맞으며
 삼위일체로 세계의 작품을/이강식/34
 좋은 건축물이 쏟아져 나오길.../김인철/36
 건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며/정구은/37
 군살빼기 작전/김자호/35
 좌담회·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해도 좋은가/38
 일하며 생각하며·부질없는 생각을 하면서/민경진/43
 지부순례·경상남도지부/44
 54층건물 구조계산을 하면서/이창남/46
 감상기행 [4]/김석철/52

연구논문

건축칼럼·건물에너지절약과 주요시책과 내용/이필원/58
 건축조명 ②·에너지절약을 위한 인공건축조명계획/김정태/62
 건축설비기초 ③·공기조화방식의 여러가지/김신도/66
 고건축연구 ①·은해사 백용암/서정남/69
 조경사례조사연구 (1)/도시환경분과위원회/75

자료·기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건설부/91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개정안)/건설부/92
 전기설비기술기준개정(안)/동력자원부/93
 도시공원법시행규칙(안)/건설부/95
 회원동정/96
 신입회원/97



2 월호

회원작품

코오롱스프렉스/조동영/6
 박시우치과의원/김중업/10
 보평동 K 교수택/박연심/14
 대해빌딩/전찬진/17

회원 PLAZA

논단·노력한 자에게 그 댓가를/이영희/4
 이규효건설부장관 취임사/20
 협회소식/22
 전국복지회장간담회 “복지사회통일화와 연금제도 연구를”/32
 북경기행 [1]/최창규/44
 54층건물 구조계산을 하면서/이창남/48
 감상기행 [5]/김석철/52
 대화의 광장·우리에게 전문건축가 시대가 올 것인가?/
 김선소/55
 정화칼럼·우리와 사회/조정호/63
 일하며 생각하며·출발/김무연/71

연구논문

도시환경분과위원회연구보고 [2]/조경사례조사연구/56
 고건축연구 [2] 추사고택/이용목/64
 건축조명 [3] 자연채광을 이용한 조명에너지절약/김정태/72
 건축예술논고 (II)/최준환/78
 건축설비기초 4 공기조화부하계산법/김신도/82
 설비분과위원회연구·병원건축의 공기조화조닝계획/손장렬/85

자료·기타

에너지절약에 관한 심포지움 개최/70
 건축개정법령/88
 회원동정/91
 신입회원/93
 건축사회관 임대안내/96



3 월호

회원작품 (도서관 특집)

- 동국대학교 도서관(경주)/김인석/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안장원/8
- 육군사관학교 우당도서관/(주)서울건축·김중성/10
- 연세대학교 도서관/김봉훈/12
-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수원)/윤승중·변 용/14

회원 PLAZA

- 논단·중용소고/안기태/4
- 좌담회/협회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18
- 정화칼럼·진기있는 전문직업을 위하여/최승원/29
- 북경기행(Ⅱ)/최창규/30
- Alvar Aalto 심포지움에 다녀와서/서동규/35
- 일하녀 생각하며·나의 건강/유춘수/43
- 54층건물 구조계산을 하면서/이창남/44

특집/건국대학 교상허기념관계획설계지명현상공모전

- 아도무건축계획(안)/장석용/56
- 정림건축계획(안)/김정철/58
- 연희건축계획(안)/위형복/60
- 정주건축계획(안)/하학수/62
- 신신건축계획(안)/김봉훈/64
- 서울건축계획(안)/노병우/66
- 장일엔지니어링계획(안)/송기덕/68
- 종합건축계획(안)/이승우/70

연구논문·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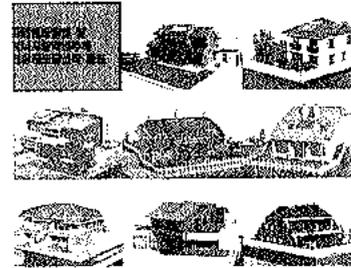
- 기존대학도서관의 건축계획적 문제점/조현군/38
- 공기조화부조화계산법(Ⅱ)/김신도/76
- 건설업법 시행규칙 개정령/81
- 산림법시행규칙중 개정령/85
- 에너지관리진단 및 진단비용기준/86

협회소식

- 회원건축설계작품순회전시회 성황/88
- 시도지부순회간담회 개최/88
- 위원회 활동 소식/90

建築士

1986. 4



4 월호

회원작품 (태양열이용건축)

-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송기덕/8
- 충무체육관 실내수영장/이정균/10
- 관양농 우체국사/임병태·안홍동/14
- 이현동 0 씨덕/임병태·안홍동/14 12
- 청주 Y 씨택/윤영재/16

회원 PLAZA

- '86년도 임시총회 개최사/오응석/6
- 이규효건설부장관 치사/이규효/7 호
- 김형대국회건설위원 축사/김형태/32

협회소식

- '86년도 임시총회 소식/18, 92

특집좌담

- 대한건축사협회 연합회제도실시의 문제점과 대책/20
- 지진·방재심포지움을 마치고/김창서/30

특집기획

- 지연형태양열 및 에너지절약형주택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33

정화칼럼

- 정/이세훈/62
- 영광원자력전시관 기본설계 현상공모작품 발표/63
- 태양열이용계획 작품 / 태양열 수영장/김기석/76

논문

- 태양의 집 원리와 설계(Ⅰ)/이종호·오정무/70
- 생활오수정화(1)/김종환/78

자료

- '86주요공사계약업무처리기준/84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85
- 환경기술감리대상시설 및 신청절차/90

신입회원/100



5 월호

회원작품 (주택작품특집)

- 평창동주택/김자호/8
- S 씨택/김기석/10
- S 씨택/이강식/12
- K 씨택/표상권/14
- 안씨택/최승원/16
- 박씨일기주택/이종상/18
- J 씨주택/김영수/20
- K 씨주택/공일곤/22
- K 씨주택/송광섭/24
- 이씨주택/정구은/26
- K 씨주택/강철구/28

논단

낙진(落塵)/송민구/6

회원 PLAZA

- 도건축과 인간/김희춘/34
- 북경기행(Ⅲ)/최창규/39
- 54층건물 구조계산을 하면서/이창남/44

특집/ 부산상공회의소 현상설계용모작 발표/49

논문

- 주택문제와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
에너지노모그래프/김정태/68 이주형/30
- 태양의 집 원리와 설계/이정호·오정무/74
- 병원의 급배수 위생설비(Ⅱ)/박용한/79

자료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건설부/83
- 도시계획법규칙중 개정령/건설부/84
- 도시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건설부/85

- 건축계뉴스/86
- 신입회원/88
- 협회소식/90



6 월호

회원작품/호텔작품특집

- 드래곤 벨리호텔/김관욱/13
- 인천송도관광호텔/송기덕/16
- 부곡로알호텔/김춘용/18
- 서해호텔/한종언/20
- 제주프린스호텔/안병의/22
- 영랑호 동방레저콘도/서천식/24
- 성심여자대학 소피바라관/강석원/26

자연형태양열주택 및 에너지절약형주택 현상설계
입상자 시상식

- 회장 개식사/7
- 건설부장관치사/8
- 아카시아(ARCASIA) 회장 축하/9
- 시상식 상보(詳報) /10
- 수상자 소감/43

좌담

건축관계법에 관한 좌담/30

특집·호텔

- 호텔/안병의/45
- 의전행사와 호텔시설/임병효/48
- 호텔의 인테리어디자인/조성렬/60
- 우리나라호텔 건축의 개선점/현영조/55

논문

- 건축과 조정 ①/오상평/73
- 판소리계 소설을 통해 본 조선후기의 주택사상/한동수/77

회원광장

- 유럽기행/오재영/67
- 벽면회화건축/유경철/70
- 감리업무에 대한 소고/강기태/80
- 미국콘크리트연구원 총회 참관기/안선구/82
- 신입회원 소개/85
- 협회소식/86



7 월호

회원작품 (상업시설 특집)

- 삼익쇼핑센터/정원영/6
- 유니버스백화점/윤홍갑/8
- 영등포 신세계백화점/김장수·박승/10
- 그랜드 백화점/윤태웅·송교섭/12
- 크리스탈 백화점/석덕재/14
- 안양 본 백화점/임용택/16
- 수정궁 (음식점)/이강식/18

이달의 시

대청마루에 앉은 여인/황금찬/3

논단

연합회제도에 대한 소고/유경철/21

추모특집 · 고 김수근 선생

- 김수근선생의 인생과 예술/강병국/22
- 김수근선생의 작품세계/조구현/28
- 삶이 빛나는 한 때/김석철/30

연구보고

- 장애자올림픽 서울대회와 시설계획 방향/박용한/32
- 건축과 조경 ②/오상평/38
- 조명기구와 조명방식/김정태/44
- 생활오수정화(Ⅱ)/김종흡/50
- 미국건축사협회 총회 참관기/김지덕/58
- 일본(株)大林組 기술연구소의 에너지절약 기법/태춘섭/68

언중언(言中言)

점수, 석차— 좌절의 원인/정희경/56

여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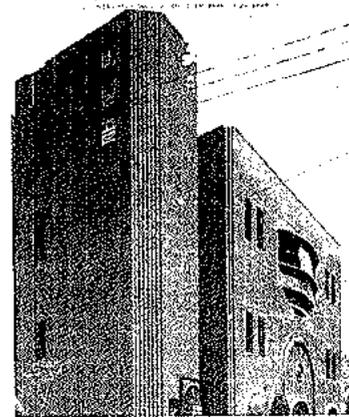
북경기행(Ⅳ)/최창규/62

일하며 생각하며

소묘/김인철/72

자료

- 아시아건축사회의 안내/송기덕/74
- 민주주의와 자율/송이호/76



8 월호

회원작품

- 두손 갤러리 (영등)/김석철/8
- 서울대 체육관/윤승중·변 용/10
- 성균관대 체육관/윤승중·변 용/12
- 파이롯트 체육관/최관영/14
- 상무체육관/김정철·김창일/16
- 통도사칸트리클럽하우스/김종규/18
- 상경빌딩/김영수/20
- 바탕골/오기수·표상권/22

논단

건축설계는 조형창작예술이며, 가격입찰로 설계자가 선정 될 수는 없다/오용석/6

이달의 시

햇살은 숲에 와서/유경환/25

회원광장

- 공정거래관계업무추진위 및 향후계획/26
- 좌담·자연형 태양열 및 에너지 절약형 주택의 발전방향은/32
- 기고·건축사는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준비해야 하는가?/김희춘/41
- 좌담·다세대주택의 발전책은/46
- 기고·문화예술의 장소에 대해서 생각한다/김석철 / 60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물을 되돌아 보며/장동찬/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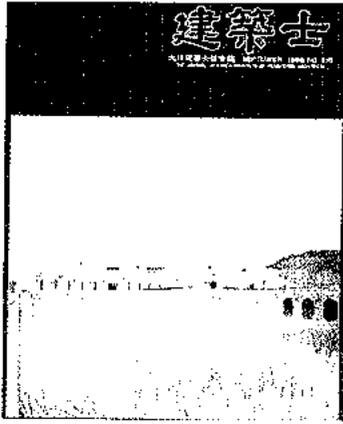
정화칼럼

독립기념관 본관 화재의 교훈/조철원/94

연구보고

- 도시지하공간개발/여홍구·정유희/54
- 체육관의 실내음향 계획/손장열/63
- 체육관 건축의 시설과 계획/윤도근/68
- 건축과 조경(Ⅲ) 동양의 역사와 조경/오상평/74
- 건축작품과 해석학/최부득/80
- 일본(주)대립조 기술연구소 본관건물의 에너지 절약기법(Ⅱ)/태춘섭/82
- 생활오수정화(Ⅲ)/김종흡/86

9월호



10월호



회원작품

- 이대유치원/김정식/6
- 찬혜유치원/노형래/8
- 울산문화방송/전찬진/10
- 서울우유협동조합/김춘용/12
- 국립현대미술관/김태수·김인석
- 국립중앙박물관/이승우/18

논단

이 나라 건축문화에 검은 리본이 매어질 것인가/김기수/3

이달의 시

땅에 글을 쓰다./정공재/21

좌담회

공사감리 업무의 한계/22

언중언

땅이 필요없는 건축/장윤우/37

정화칼럼

우리 수준에 대한 이해와 반성/김낙중/53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과 나와 사무실/최영집/71

기념관 유감/송수구/72

수상

내 생애에 가장 큰 대어물/백운학/65

리포트

국립현대미술관 설계에 관하여/김태수/38

파리의 건축계획/김진일/42

도심속의 조형물/한도룡/50

건물의 에너지절약기법(4)/태춘섭/66

건축과 조경(4)/오상평/54

기고

54층건물 구조계산을 하면서(6)/이창남/60

에너지 소비절약 및 자재규격화/이필원/74

자료

정보자료실소장 도서목록 소개/80

협회소식/90

회원작품

- 국립강릉대학 예술회관/안장원/6
- 대구파크호텔/김성환/8
- 상업은행 동래지점/김기웅/12
- 대구은행/김정철·홍성린/14

논단

공정거래와 건축인의 자세/김기태/13

이달의 시

슬픈가을/박재삼/17

좌담회 3세대 가족형 공동주택 시범개발을 위한 토론회

3세대가족을 위한 주택개발의 의의와 과제/이화영/20

3세대주택의 개발 방향/지순/22

노인동거 가족의 주택문제와 그 해결방안의 모색/박재간/26

일하며 생각하며

설계감리자와 공사 시공자/김영석/36

연구보고

수공간의 연출/한도룡/31

창경궁의 복원개요와 경춘전/장순용/38

건축구조 기능과 창조적 구조설계/이수근/44

건축과 도시계획 이론/김영하/48

사진으로 보는 싱가포르 도시경관/이필원/54

건축과 조경(V)/오상평/61

기고

외산자재 꼭 써야만 하는가/성낙준/68

회원작품특집

여주시청사 현상설계 당선작 발표/70

자료

정보자료실 소장 도서목록소재(II)/84

협회소식/97



11 월호



12 월호

'86회원건축설계작품전 수상작 발표

- 대상: 성균관대학교 체육관/윤승중·변 용/10
- 최우수상: 성심여자대학 소피바라관/강석원/12
- 우수상: 아시안게임 선수촌/조성룡·문정일/14
- 우수상: 반포 로우하우스/우남용/15
- 장려상: 신원빌딩/박영호/16
- 장려상: 대구 파크호텔/김성환/17
- 장려상: 대구은행 본점/김정철/18
- 장려상: 패션스토아 옥동/김준용/19
- 장려상: 3 세대를 위한 집/손병문/20
- 장려상: 연화동 Y 씨택/송광섭/21

제 16대 회장 취임사

제도약을 기약하며/안기태/6

이달의 시

공간의 천재들/조병화/8

제 21 회 정기총회

- 개회사/오용석/23
- 건설부장관 치사/이규호/25
- 일본건축사회연합회장 축사/太田和夫/27
- 대한건축학회회장 축사/이광노/28
- 대한건축가협회장 축사/유희준/29
- 국회건설위원 축사/김현수/30
- '86회원건축설계작품심사를 마치고/53
- 일본건축사 전국대회 참관기/김기수/40
- 제 2 회 아시아 건축사 회의/김지덕/42
- 제 2 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 다녀와서/전봉수/49
- 신인·학생건축설계작품전 수상작 발표/57
- 신인·학생건축설계 작품전 심사를 마치고/72 57

연구보고

풍기식 집열창 시스템/박상동·서보광/78

리포트

사건으로 보는 싱가포르(2) 공동주택과 단지설계/이필원/86

논단

병인년을 보내며/안기태/5

이달의 시

찬미의 강물/김남조/8

회원작품

- 부천상공회의소/김지태/9
-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조성룡·장기성/12
- 충북대학교 중앙도서관/이상현·안화인/14
- 화곡동 S 씨택/홍철수/16
- 온천수영장/이의구/18
- 동양나일론 연수원/공일곤·문병국/20

신임·유임지부장 취임인사

병인년을 보내며

강순일·구윤희·김기석·김원석·장성진·조구현/28

정화칼럼

자율과 타율/박영호/79

3 세대가족(동거형) 공동주택현상공모수상작발표

3 세대가족(동거형) 공동주택현상공모 심사결과/34

법률상식

행정심판법 해설과 그 재결례/강길부/58

기고

건축공사의 감리자와 그 책임한계/이재욱/62

연구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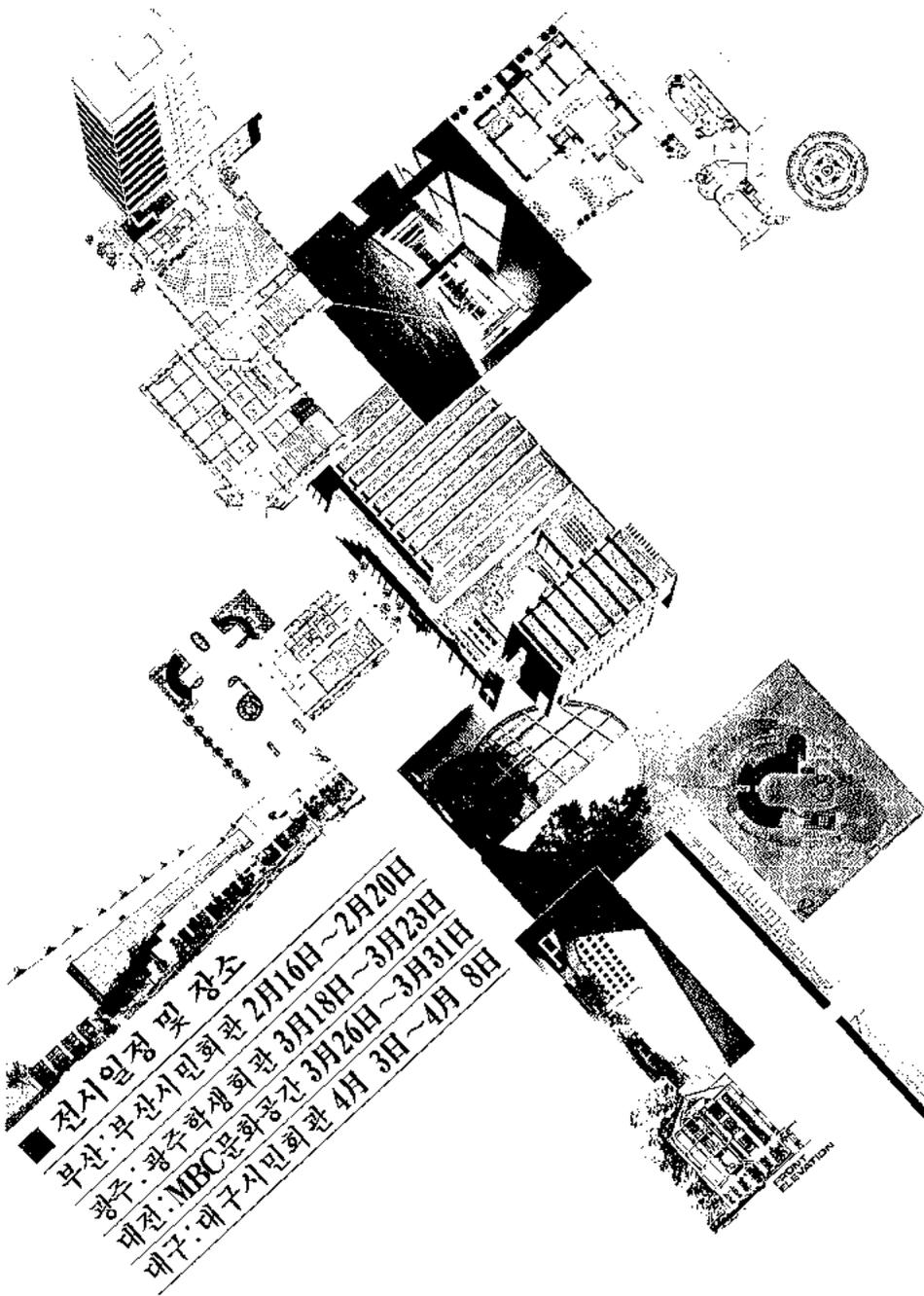
- 전시공간의 연출/한도룡/66
- 사무소 건물의 에너지성능기준 시행에 관한 연구/박상동 외/72
- 건축과 조경/오상평/80

올림픽광장

아시안게임 소고/한 영/101

圖 第12回

제1회
신인학생설계공모전
建築士設計作品巡廻展



■ 전시일정 및 장소
부산·부산시민회관 2월16H~2월20H
H02H2~H02H7
H02H8~H02H13
H02H14~H02H19
H02H20~H02H25
H02H26~H02H31
H02H32~H02H37
H02H38~H02H43
H02H44~H02H49
H02H50~H02H55
H02H56~H02H61
H02H62~H02H67
H02H68~H02H73
H02H74~H02H79
H02H80~H02H85
H02H86~H02H91
H02H92~H02H97
H02H98~H02H103
H02H104~H02H109
H02H110~H02H115
H02H116~H02H121
H02H122~H02H127
H02H128~H02H133
H02H134~H02H139
H02H140~H02H145
H02H146~H02H151
H02H152~H02H157
H02H158~H02H163
H02H164~H02H169
H02H170~H02H175
H02H176~H02H181
H02H182~H02H187
H02H188~H02H193
H02H194~H02H199
H02H200~H02H205
H02H206~H02H211
H02H212~H02H217
H02H218~H02H223
H02H224~H02H229
H02H230~H02H235
H02H236~H02H241
H02H242~H02H247
H02H248~H02H253
H02H254~H02H259
H02H260~H02H265
H02H266~H02H271
H02H272~H02H277
H02H278~H02H283
H02H284~H02H289
H02H290~H02H295
H02H296~H02H301
H02H302~H02H307
H02H308~H02H313
H02H314~H02H319
H02H320~H02H325
H02H326~H02H331
H02H332~H02H337
H02H338~H02H343
H02H344~H02H349
H02H350~H02H355
H02H356~H02H361
H02H362~H02H367
H02H368~H02H373
H02H374~H02H379
H02H380~H02H385
H02H386~H02H391
H02H392~H02H397
H02H398~H02H403
H02H404~H02H409
H02H410~H02H415
H02H416~H02H421
H02H422~H02H427
H02H428~H02H433
H02H434~H02H439
H02H440~H02H445
H02H446~H02H451
H02H452~H02H457
H02H458~H02H463
H02H464~H02H469
H02H470~H02H475
H02H476~H02H481
H02H482~H02H487
H02H488~H02H493
H02H494~H02H499
H02H500~H02H505
H02H506~H02H511
H02H512~H02H517
H02H518~H02H523
H02H524~H02H529
H02H530~H02H535
H02H536~H02H541
H02H542~H02H547
H02H548~H02H553
H02H554~H02H559
H02H560~H02H565
H02H566~H02H571
H02H572~H02H577
H02H578~H02H583
H02H584~H02H589
H02H590~H02H595
H02H596~H02H601
H02H602~H02H607
H02H608~H02H613
H02H614~H02H619
H02H620~H02H625
H02H626~H02H631
H02H632~H02H637
H02H638~H02H643
H02H644~H02H649
H02H650~H02H655
H02H656~H02H661
H02H662~H02H667
H02H668~H02H673
H02H674~H02H679
H02H680~H02H685
H02H686~H02H691
H02H692~H02H697
H02H698~H02H703
H02H704~H02H709
H02H710~H02H715
H02H716~H02H721
H02H722~H02H727
H02H728~H02H733
H02H734~H02H739
H02H740~H02H745
H02H746~H02H751
H02H752~H02H757
H02H758~H02H763
H02H764~H02H769
H02H770~H02H775
H02H776~H02H781
H02H782~H02H787
H02H788~H02H793
H02H794~H02H799
H02H800~H02H805
H02H806~H02H811
H02H812~H02H817
H02H818~H02H823
H02H824~H02H829
H02H830~H02H835
H02H836~H02H841
H02H842~H02H847
H02H848~H02H853
H02H854~H02H859
H02H860~H02H865
H02H866~H02H871
H02H872~H02H877
H02H878~H02H883
H02H884~H02H889
H02H890~H02H895
H02H896~H02H901
H02H902~H02H907
H02H908~H02H913
H02H914~H02H919
H02H920~H02H925
H02H926~H02H931
H02H932~H02H937
H02H938~H02H943
H02H944~H02H949
H02H950~H02H955
H02H956~H02H961
H02H962~H02H967
H02H968~H02H973
H02H974~H02H979
H02H980~H02H985
H02H986~H02H991
H02H992~H02H997
H02H998~H02H1003
H02H1004~H02H1009
H02H1010~H02H1015
H02H1016~H02H1021
H02H1022~H02H1027
H02H1028~H02H1033
H02H1034~H02H1039
H02H1040~H02H1045
H02H1046~H02H1051
H02H1052~H02H1057
H02H1058~H02H1063
H02H1064~H02H1069
H02H1070~H02H1075
H02H1076~H02H1081
H02H1082~H02H1087
H02H1088~H02H1093
H02H1094~H02H1099
H02H1100~H02H1105
H02H1106~H02H1111
H02H1112~H02H1117
H02H1118~H02H1123
H02H1124~H02H1129
H02H1130~H02H1135
H02H1136~H02H1141
H02H1142~H02H1147
H02H1148~H02H1153
H02H1154~H02H1159
H02H1160~H02H1165
H02H1166~H02H1171
H02H1172~H02H1177
H02H1178~H02H1183
H02H1184~H02H1189
H02H1190~H02H1195
H02H1196~H02H1201
H02H1202~H02H1207
H02H1208~H02H1213
H02H1214~H02H1219
H02H1220~H02H1225
H02H1226~H02H1231
H02H1232~H02H1237
H02H1238~H02H1243
H02H1244~H02H1249
H02H1250~H02H1255
H02H1256~H02H1261
H02H1262~H02H1267
H02H1268~H02H1273
H02H1274~H02H1279
H02H1280~H02H1285
H02H1286~H02H1291
H02H1292~H02H1297
H02H1298~H02H1303
H02H1304~H02H1309
H02H1310~H02H1315
H02H1316~H02H1321
H02H1322~H02H1327
H02H1328~H02H1333
H02H1334~H02H1339
H02H1340~H02H1345
H02H1346~H02H1351
H02H1352~H02H1357
H02H1358~H02H1363
H02H1364~H02H1369
H02H1370~H02H1375
H02H1376~H02H1381
H02H1382~H02H1387
H02H1388~H02H1393
H02H1394~H02H1399
H02H1400~H02H1405
H02H1406~H02H1411
H02H1412~H02H1417
H02H1418~H02H1423
H02H1424~H02H1429
H02H1430~H02H1435
H02H1436~H02H1441
H02H1442~H02H1447
H02H1448~H02H1453
H02H1454~H02H1459
H02H1460~H02H1465
H02H1466~H02H1471
H02H1472~H02H1477
H02H1478~H02H1483
H02H1484~H02H1489
H02H1490~H02H1495
H02H1496~H02H1501
H02H1502~H02H1507
H02H1508~H02H1513
H02H1514~H02H1519
H02H1520~H02H1525
H02H1526~H02H1531
H02H1532~H02H1537
H02H1538~H02H1543
H02H1544~H02H1549
H02H1550~H02H1555
H02H1556~H02H1561
H02H1562~H02H1567
H02H1568~H02H1573
H02H1574~H02H1579
H02H1580~H02H1585
H02H1586~H02H1591
H02H1592~H02H1597
H02H1598~H02H1603
H02H1604~H02H1609
H02H1610~H02H1615
H02H1616~H02H1621
H02H1622~H02H1627
H02H1628~H02H1633
H02H1634~H02H1639
H02H1640~H02H1645
H02H1646~H02H1651
H02H1652~H02H1657
H02H1658~H02H1663
H02H1664~H02H1669
H02H1670~H02H1675
H02H1676~H02H1681
H02H1682~H02H1687
H02H1688~H02H1693
H02H1694~H02H1699
H02H1700~H02H1705
H02H1706~H02H1711
H02H1712~H02H1717
H02H1718~H02H1723
H02H1724~H02H1729
H02H1730~H02H1735
H02H1736~H02H1741
H02H1742~H02H1747
H02H1748~H02H1753
H02H1754~H02H1759
H02H1760~H02H1765
H02H1766~H02H1771
H02H1772~H02H1777
H02H1778~H02H1783
H02H1784~H02H1789
H02H1790~H02H1795
H02H1796~H02H1801
H02H1802~H02H1807
H02H1808~H02H1813
H02H1814~H02H1819
H02H1820~H02H1825
H02H1826~H02H1831
H02H1832~H02H1837
H02H1838~H02H1843
H02H1844~H02H1849
H02H1850~H02H1855
H02H1856~H02H1861
H02H1862~H02H1867
H02H1868~H02H1873
H02H1874~H02H1879
H02H1880~H02H1885
H02H1886~H02H1891
H02H1892~H02H1897
H02H1898~H02H1903
H02H1904~H02H1909
H02H1910~H02H1915
H02H1916~H02H1921
H02H1922~H02H1927
H02H1928~H02H1933
H02H1934~H02H1939
H02H1940~H02H1945
H02H1946~H02H1951
H02H1952~H02H1957
H02H1958~H02H1963
H02H1964~H02H1969
H02H1970~H02H1975
H02H1976~H02H1981
H02H1982~H02H1987
H02H1988~H02H1993
H02H1994~H02H1999
H02H2000~H02H2005
H02H2006~H02H2011
H02H2012~H02H2017
H02H2018~H02H2023
H02H2024~H02H2029
H02H2030~H02H2035
H02H2036~H02H2041
H02H2042~H02H2047
H02H2048~H02H2053
H02H2054~H02H2059
H02H2060~H02H2065
H02H2066~H02H2071
H02H2072~H02H2077
H02H2078~H02H2083
H02H2084~H02H2089
H02H2090~H02H2095
H02H2096~H02H2101
H02H2102~H02H2107
H02H2108~H02H2113
H02H2114~H02H2119
H02H2120~H02H2125
H02H2126~H02H2131
H02H2132~H02H2137
H02H2138~H02H2143
H02H2144~H02H2149
H02H2150~H02H2155
H02H2156~H02H2161
H02H2162~H02H2167
H02H2168~H02H2173
H02H2174~H02H2179
H02H2180~H02H2185
H02H2186~H02H2191
H02H2192~H02H2197
H02H2198~H02H2203
H02H2204~H02H2209
H02H2210~H02H2215
H02H2216~H02H2221
H02H2222~H02H2227
H02H2228~H02H2233
H02H2234~H02H2239
H02H2240~H02H2245
H02H2246~H02H2251
H02H2252~H02H2257
H02H2258~H02H2263
H02H2264~H02H2269
H02H2270~H02H2275
H02H2276~H02H2281
H02H2282~H02H2287
H02H2288~H02H2293
H02H2294~H02H2299
H02H2300~H02H2305
H02H2306~H02H2311
H02H2312~H02H2317
H02H2318~H02H2323
H02H2324~H02H2329
H02H2330~H02H2335
H02H2336~H02H2341
H02H2342~H02H2347
H02H2348~H02H2353
H02H2354~H02H2359
H02H2360~H02H2365
H02H2366~H02H2371
H02H2372~H02H2377
H02H2378~H02H2383
H02H2384~H02H2389
H02H2390~H02H2395
H02H2396~H02H2401
H02H2402~H02H2407
H02H2408~H02H2413
H02H2414~H02H2419
H02H2420~H02H2425
H02H2426~H02H2431
H02H2432~H02H2437
H02H2438~H02H2443
H02H2444~H02H2449
H02H2450~H02H2455
H02H2456~H02H2461
H02H2462~H02H2467
H02H2468~H02H2473
H02H2474~H02H2479
H02H2480~H02H2485
H02H2486~H02H2491
H02H2492~H02H2497
H02H2498~H02H2503
H02H2504~H02H2509
H02H2510~H02H2515
H02H2516~H02H2521
H02H2522~H02H2527
H02H2528~H02H2533
H02H2534~H02H2539
H02H2540~H02H2545
H02H2546~H02H2551
H02H2552~H02H2557
H02H2558~H02H2563
H02H2564~H02H2569
H02H2570~H02H2575
H02H2576~H02H2581
H02H2582~H02H2587
H02H2588~H02H2593
H02H2594~H02H2599
H02H2600~H02H2605
H02H2606~H02H2611
H02H2612~H02H2617
H02H2618~H02H2623
H02H2624~H02H2629
H02H2630~H02H2635
H02H2636~H02H2641
H02H2642~H02H2647
H02H2648~H02H2653
H02H2654~H02H2659
H02H2660~H02H2665
H02H2666~H02H2671
H02H2672~H02H2677
H02H2678~H02H2683
H02H2684~H02H2689
H02H2690~H02H2695
H02H2696~H02H2701
H02H2702~H02H2707
H02H2708~H02H2713
H02H2714~H02H2719
H02H2720~H02H2725
H02H2726~H02H2731
H02H2732~H02H2737
H02H2738~H02H2743
H02H2744~H02H2749
H02H2750~H02H2755
H02H2756~H02H2761
H02H2762~H02H2767
H02H2768~H02H2773
H02H2774~H02H2779
H02H2780~H02H2785
H02H2786~H02H2791
H02H2792~H02H2797
H02H2798~H02H2803
H02H2804~H02H2809
H02H2810~H02H2815
H02H2816~H02H2821
H02H2822~H02H2827
H02H2828~H02H2833
H02H2834~H02H2839
H02H2840~H02H2845
H02H2846~H02H2851
H02H2852~H02H2857
H02H2858~H02H2863
H02H2864~H02H2869
H02H2870~H02H2875
H02H2876~H02H2881
H02H2882~H02H2887
H02H2888~H02H2893
H02H2894~H02H2899
H02H2900~H02H2905
H02H2906~H02H2911
H02H2912~H02H2917
H02H2918~H02H2923
H02H2924~H02H2929
H02H2930~H02H2935
H02H2936~H02H2941
H02H2942~H02H2947
H02H2948~H02H2953
H02H2954~H02H2959
H02H2960~H02H2965
H02H2966~H02H2971
H02H2972~H02H2977
H02H2978~H02H2983
H02H2984~H02H2989
H02H2990~H02H2995
H02H2996~H02H3001
H02H3002~H02H3007
H02H3008~H02H3013
H02H3014~H02H3019
H02H3020~H02H3025
H02H3026~H02H3031
H02H3032~H02H3037
H02H3038~H02H3043
H02H3044~H02H3049
H02H3050~H02H3055
H02H3056~H02H3061
H02H3062~H02H3067
H02H3068~H02H3073
H02H3074~H02H3079
H02H3080~H02H3085
H02H3086~H02H3091
H02H3092~H02H3097
H02H3098~H02H3103
H02H3104~H02H3109
H02H3110~H02H3115
H02H3116~H02H3121
H02H3122~H02H3127
H02H3128~H02H3133
H02H3134~H02H3139
H02H3140~H02H3145
H02H3146~H02H3151
H02H3152~H02H3157
H02H3158~H02H3163
H02H3164~H02H3169
H02H3170~H02H3175
H02H3176~H02H3181
H02H3182~H02H3187
H02H3188~H02H3193
H02H3194~H02H3199
H02H3200~H02H3205
H02H3206~H02H3211
H02H3212~H02H3217
H02H3218~H02H3223
H02H3224~H02H3229
H02H3230~H02H3235
H02H3236~H02H3241
H02H3242~H02H3247
H02H3248~H02H3253
H02H3254~H02H3259
H02H3260~H02H3265
H02H3266~H02H3271
H02H3272~H02H3277
H02H3278~H02H3283
H02H3284~H02H3289
H02H3290~H02H3295
H02H3296~H02H3301
H02H3302~H02H3307
H02H3308~H02H3313
H02H3314~H02H3319
H02H3320~H02H3325
H02H3326~H02H3331
H02H3332~H02H3337
H02H3338~H02H3343
H02H3344~H02H3349
H02H3350~H02H3355
H02H3356~H02H3361
H02H3362~H02H3367
H02H3368~H02H3373
H02H3374~H02H3379
H02H3380~H02H3385
H02H3386~H02H3391
H02H3392~H02H3397
H02H3398~H02H3403
H02H3404~H02H3409
H02H3410~H02H3415
H02H3416~H02H3421
H02H3422~H02H3427
H02H3428~H02H3433
H02H3434~H02H3439
H02H3440~H02H3445
H02H3446~H02H3451
H02H3452~H02H3457
H02H3458~H02H3463
H02H3464~H02H3469
H02H3470~H02H3475
H02H3476~H02H3481
H02H3482~H02H3487
H02H3488~H02H3493
H02H3494~H02H3499
H02H3500~H02H3505
H02H3506~H02H3511
H02H3512~H02H3517
H02H3518~H02H3523
H02H3524~H02H3529
H02H3530~H02H3535
H02H3536~H02H3541
H02H3542~H02H3547
H02H3548~H02H3553
H02H3554~H02H3559
H02H3560~H02H3565
H02H3566~H02H3571
H02H3572~H02H3577
H02H3578~H02H3583
H02H3584~H02H3589
H02H3590~H02H3595
H02H3596~H02H3601
H02H3602~H02H3607
H02H3608~H02H3613
H02H3614~H02H3619
H02H3620~H02H3625
H02H3626~H02H3631
H02H3632~H02H3637
H02H3638~H02H3643
H02H3644~H02H3649
H02H3650~H02H3655
H02H3656~H02H3661
H02H3662~H02H3667
H02H3668~H02H3673
H02H3674~H02H3679
H02H3680~H02H3685
H02H3686~H02H3691
H02H3692~H02H3697
H02H3698~H02H3703
H02H3704~H02H3709
H02H3710~H02H3715
H02H3716~H02H3721
H02H3722~H02H3727
H02H3728~H02H3733
H02H3734~H02H3739
H02H3740~H02H3745
H02H3746~H02H3751
H02H3752~H02H3757
H02H3758~H02H3763
H02H3764~H02H3769
H02H3770~H02H3775
H02H3776~H02H3781
H02H3782~H02H3787
H02H3788~H02H3793
H02H3794~H02H3799
H02H3800~H02H3805
H02H3806~H02H3811
H02H3812~H02H3817
H02H3818~H02H3823
H02H3824~H02H3829
H02H3830~H02H3835
H02H3836~H02H3841
H02H3842~H02H3847
H02H3848~H02H3853
H02H3854~H02H3859
H02H3860~H02H3865
H02H3866~H02H3871
H02H3872~H02H3877
H02H3878~H02H3883
H02H3884~H02H3889
H02H3890~H02H3895
H02H3896~H02H3901
H02H3902~H02H3907
H02H3908~H02H3913
H02H3914~H02H3919
H02H3920~H02H3925
H02H3926~H02H3931
H02H3932~H02H3937
H02H3938~H02H3943
H02H3944~H02H3949
H02H3950~H02H3955
H02H3